

제429회 국회
(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9월10일(수)

장 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서류제출요구의 건
-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33)
- 장애인평생교육법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64)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48)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05)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59)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07)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55)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29)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71)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02)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67)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02)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96)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69)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72)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60)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78)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 2208364)
26.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11)
 27.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16)
 28.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57)
 29.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65)
 30.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79)
 31.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65)
 3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33. 문신사법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34.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3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3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3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3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39.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4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4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4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43)
 43. 윤석열의 검찰총장 및 대통령 재직시 검찰권 오남용에 관한 진상조사 및 피해자 피해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서왕진 의원·민형배 의원·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23)
 44.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88)
 4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36)
 4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51)
 4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29)
 4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46)
 4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85)
 5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64)
 5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21)
 5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44)
 5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89)
 5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04)

5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11)
5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35)
5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93)
5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34)
5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82)
6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24)
61.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33)
62.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92)
63.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72)
64.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21)
65.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38)
66.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78)
67.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25)
68.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02)
6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12)
7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11)
7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36)
7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24)
7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05)
7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39)

상정된 안건

1.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11
2.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서류제출요구의 건	11
3.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11
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33)	39
5. 장애인평생교육법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64)	39
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48)	39
7.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05)	39
8.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59)	39
9.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07)	39
10.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55)	39

1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39
1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39
13.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39
1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39
15.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29)	50
16.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71)	50
17.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02)	50
1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67)	50
19.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02)	50
2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96)	51
21.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69)	51
22.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72)	51
23.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60)	51
24.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78)	51
25.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64)	51
26.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11)	51
27.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16)	51
28.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57)	51
29.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65)	51
30.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79)	51
31.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65)	51
3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51
33. 문신사법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51
34.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51
3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51
3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51
3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51
3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51
39.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51
4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51
4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51
4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443)	72
43. 윤석열의 검찰총장 및 대통령 재직시 검찰권 오남용에 관한 진상조사 및 피해자 피해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서왕진 의원·민형배 의원·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23)	72
44.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88)	72
4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36)	73
4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51)	73
4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29)	73
4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46)	73
4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85)	73
5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64)	73
5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21)	73
5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44)	73
5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89)	73
5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04)	73
5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11)	73
5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35)	73
5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93)	73
5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34)	73
5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82)	73
6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24)	73
61.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33)	73
.....	73
62.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92)	73
63.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72)	73
64.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21)	73
65.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38)	73
66.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78)	73
67.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25)	73
68.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02)	73
6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12)	73
7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11)	73

7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36)	73
7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24)	73
7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05)	73
7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39)	73

(14시09분 개의)

○**위원장 추미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틀 전 국민의힘 소속 위원님들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저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특검법은 1소위에서 충분히 논의된 바 있고 9월 4일 전체회의에서도 여야가 번갈아 가며 열띤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는 특검법에 대해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요청하였고 위원장은 국회법 제57조의2제5항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을 정해진 시간 내에 추천해 달라고 정중히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는 위원 추천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회의장을 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요청하고도 정작 안건조정위원회 회의에는 참여하지도 않았습니다. 애초부터 특검법 의결에 참여 의사가 있었는지 매우 의문스러워 보입니다.

국회는 반대하는 경우도 그 의사를 표기하여 각각의 의견을 남김으로써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논의의 장인 곳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신들의 책임은 다하지 않으면서 권리만 주장하는 모순된 행동을 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신동욱 위원**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짓말! 우리가 무슨 열띤 토론을 했어요!

○**전현희 위원** 발언권 얻고 하세요!

○**위원장 추미애**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 소속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경원 위원** 아니, 안건조정위원회 협의를 하지도 않고서는……

○**위원장 추미애** 앞으로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위원 개개인의 책임을 다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나경원 위원**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곽규택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신동욱 위원** 아니, 위원장이 왜 계속 거짓말을 합니까?

○**조배숙 위원** 의견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사실이 아닌 말씀을 위원장님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나경원 위원** 의사진행발언 주십시오. 법사위가 추미애 위원장 나홀로 법사위가 아닙니다.

니다. 의사진행발언 주십시오.

○**송석준 위원**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이 누가 선임됐고 누구에게 참석을 요구했나요?

○**장경태 위원** 아니, 안조위원 추천도 안 하고 안조위를 신청하면 어떻게 합니까? 정말 속상합니다, 속상해.

○**송석준 위원** 이렇게 국민들을 호도하시면 안 되지요.

○**신동욱 위원** 안건조정위원회는 간사와 협의해야지요. 그런데 간사를 안 해 주면 어떻게 협의를 합니까?

○**위원장 추미애** 그러면 양당 위원님들께 각각 두 분씩 의사진행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3분으로 하겠습니다.

○**나경원 위원** 전부 주십시오.

○**송석준 위원** 위원장님, 한 명씩 의사진행발언하기로 합의한 적이 없어요.

○**신동욱 위원** 아니, 도대체 국회법 어디에 한 명씩만 발언 기회를 주라는 조항이 있느냐고요.

○**송석준 위원** 원래 여야 간사 간 합의로 한 명씩 하고 두 명씩 하고 그러는데 위원장님이 일방적으로 누구 말 듣고 그렇게 의사진행발언을 제한합니까?

○**위원장 추미애** 신동욱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신동욱 위원** 그래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진행하시니까.

○**위원장 추미애** 신동욱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송석준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제한하려면 양당 간사 간 합의가 돼야 돼요.

○**위원장 추미애** 신동욱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신동욱 위원** 아니, 발언 횟수를 왜 위원장이 마음대로 지정을 합니까? 그래서 저희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겁니다.

○**위원장 추미애** 그러면 신동욱 위원님께는 발언 기회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세 번이나 발언 기회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의사진행발언하실 분 손 드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나경원 위원** 아니, 왜 신동욱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을 박탈합니까?

○**송석준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충분히 주세요.

○**위원장 추미애** 송석준 위원님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갑자기 주시니까 제가 좀 황당하네요.

우선 먼저 간사 선임 안건을 좀 올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법사위가 중요한 안건이 계속 지금 처리돼야 되고 또 특히 민생 관련 법안들이 각 상임위로부터 많이 올라올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급한 것, 경중도를 가려서 빨리빨리 간사 간에 정리해야 보다 많은 안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간사 선임을 지금 이렇게 기피하는 이유가 뭔지 그것에 대해서 위원장님, 납득이 가게끔 설명 좀 해 주시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오늘 즉시 바로잡아 주셨으면 좋겠고.

또 지난주에 있었던 안건조정회의 관련해서 우리 당에서는 안건조정위 신청을 했는데

뒷얘기가 일방적으로 누구누구 안전조정위원을 정했다고 그래요, 위원장님이 정한 건지 우리 당의 누구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정한 건지. 그래 놓고는 일방적으로 안전조정회의를 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참석 안 했다 그러시고, 이렇게 사실과 다른 말씀을 위원장님이 국민들께 하시면 국민들은 마치 그게 사실인 걸로 아시잖아요. 법사위원장님이 법질서를 준수하시고 또 우리 국회 규정을 준수하시면서 제대로 국민들께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없는 사실을 사실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이것에 대해서도 즉각 말씀을 취소해 주시고 정중하게 사과를 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간사 없는 회의라는 것은 정상적인 상임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간사 안건을 올려 주실 것을 정중히 요구드리고, 그리고 우리 법사위가 그동안 처리된 법들이 많이 있었고 또 오늘 우리 원내대표께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셨는데 거기서도 얼마나 간절히 말씀드립니까? 우리 여야가 정상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이제는 민생 법안 처리하고 제대로 된 민의를 수렴해서 민의의 전당 구실을 해야 되는데……

지금 대통령께서 두 분의 손을 감싸 줘고 마치 화해가 다 된 양 그런 제스처를 보여주면서 마치 여야가 하나 된 듯한 모습을 보여서 연출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다음에 먼저 여당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여당 대표께서 하는 말씀이 이건 무슨 ‘내란 청산’, 한마디로 보다 더 강하고 격한 용어를 써 가면서 이제는 청산하자, 악수도 안 하는 걸 넘어서 이제는 당신들은 청산 대상이라고 선포하는 게 이게 정상입니까? 우리 법사위에서 그런 청산하고자 하는 사람들 청산합시다.

○위원장 추미애 김용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김용민 위원 권한쟁의심판 청구한 것과 관련해서 과정들을 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3특검법에 대한 심사는 이미 법안심사1소위에서 충분히 심사를 했습니다. 충분히 심사하고 처리돼서 전체회의에 올라왔고 전체회의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안전조정위원회에 회부를 했지요. 그런데 저는 이게 국민의힘에서 간사 선임을 하기 위한 의도적인 행위와 그리고 그것을 목표로 간사 선임이 잘 안 될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하겠다라는 일련의 계획하에 움직인 그런 의도된 행동들이었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요 진짜로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이 3특검법에 대한 심사를 진지하게 할 생각이었으면 1소위에 들어오셔서 심사에 참여하셨어야지요. 1소위 논의 때 논의 안 하고 나가셨지 않습니까? 1소위가 국민의힘 위원이 네 분이나 계십니다. 그런데 안전조정위원회 회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국민의힘 위원 두 분만 들어가시게 되지요. 그러니 진짜 충분한 심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1소위 때 국민의힘 위원님들 네 분이서 충분히 발언시간을 확보한 상태에서 토론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 토론 전혀 하지 않았고 그러고 나서 전체회의에서 처리하려고 하니 그제서야 뒤늦게 안전조정위원회에 회부했지요. 그런데 안전조정위에 회부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셨나? 법상 간사랑 협의하도록 돼 있으니 간사를 빨리 선임해 달라라는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안전조정위원회가 충분한 심사를 하기 위해서 회부한 게 아니라 간사 선임을 하기 위한 징검다리로 악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간사가 현재 없으니 여당 간사인 제가 국민의힘 위원님들 전원과 두 번 이상 협의를 거쳤습니다. 간사가 없으니 다른 방식으로 협의를 거친 거지요. 간사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 당의 교섭단체

의원들과 사전에 논의해서 그 의사를 대변해서, 대표해서 얘기하는 그런 자리인데 간사가 없으니 제가 전체 위원님들과 다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았지요. 그렇기 때문에 협의는 거쳤고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장님께서 거기에 따라서 판단해서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 국회법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얘기하시는 국회법 57조의 2 항에 결국에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간사 협의해서 선임하는 것이지 합의해서 선임하라고 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국민의힘 위원님들 전체와 협의를 했기 때문에 간사 간 협의가 있는 것에 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동욱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왜 제 눈을 피하세요, 추미애 위원장님?

○박은정 위원 아까 드렸는데 안 하셨잖아요.

○신동욱 위원 저는 한 번도 발언 못 했습니다, 위원장님 오시고 난 다음에.

○박은정 위원 아까 드렸는데 왜 안 하시고 이제 와서 하세요.

○신동욱 위원 아니, 제가 발언권을 받은 적이 없어요.

○박은정 위원 버스 지나갔습니다.

○신동욱 위원 이게 무슨, 국회가 버스입니까? 그 당이나 잘하세요.

발언권 주세요.

○위원장 추미애 곽규택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곽규택 위원 위원장님하고 지금 김용민 위원님이 굳이 사실관계도 틀리게 말씀하시고 법 조항의 내용까지도 왜곡해서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아마 본인들이 저지른 위법 사항이 ‘아, 이거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심판 들어오면 잘못하면 인용될 가능성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날 상황을 보면요 간사가 분명히 선임이 안 된 상태에서 간사 간의 협의 없이 안전조정위원을 일방적으로 위원장님이 타 당의 위원을 지명했고요. 그 위원 2명의 지명된 사람에 대해서도 일체 통지가 안 됐습니다. 그래 놓고 안전조정위원회를 열었다고 지금 억지 주장은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도 안전조정위원회의 원래 취지를 본다면 90일 정도의 기간 내에서 토론을 하는 게 맞는데 그나마도 안 거치고 우리 국회에서 몇 시간 만에 안전조정위원회를 끝냈던 관행이 있습니다마는 그날 안전조정위원회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16분을 했다고 그립니다. 회의를 안 한 거지요. 그러니까 안전조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다른 당 위원한테는 통보도 하지 않고 열었습니다. 그리고 법에는 분명히 간사 간 협의를 거쳐서 안전조정위원을 선임하게 돼 있어요. 이 모든 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위법한 안전조정위원회를 거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제가 사실관계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법사위의 수석전문위원님, 수석전문위원의 직무가 소속 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그 업무를 처리하고 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돼 있지요? 그날 상황에 대해서 우리 당에서 이 위법한 회의 진행에 대해서 법사위 행정실에 관련 규정을 문의를 했어요. 아직까지도 이것이 위법한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답변도 없습니다.

국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님을 비롯한 전문위원님들, 행정실 직원분들 지금 무슨 위원

장만을 보좌하는 그런 역할들이 아닙니다. 법사위에서 진행되고 있는 회의 전반에 대해서 절차에 맞게, 법에 맞게 진행되도록 모든 위원들을 다 보좌하는 역할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각성을 하시고.

현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뿐만 아니라 가처분신청도 해 놨고요.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 법사위원장뿐만 아니라 전문위원, 행정실 직원분들 다 지금 고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슨 위법한 상황이 이렇게 대명천지에 법사위에서 막 일어나요?

그리고 간사 선임, 기본 중에 기본 아닙니까? 도대체 이걸 가지고 무슨 애를 장난하듯이 그렇게 회의 운영하시면 안 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추미애** 의사진행발언하실 분 없으십니까?

비교섭단체의 최혁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최혁진 위원** 지금 자꾸 국민의힘에서 간사 선임 문제를 이야기하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간사다운 간사를 좀 추천을 하고 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오늘도 또 나경원 위원 추천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경원 위원은 법사위 위원 자격이 없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유체 이탈 화법을 자꾸 하시잖아요. 무슨 민주당이 내란 공범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나, 갑자기 또 손현보 목사 구속 관련해 가지고 종교탄압까지 발언을 하셨어요. 손현보 목사는 불법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구속된 사람입니다. 적어도 이 법사위에서 간사 정도, 위원 정도의 역할을 하려면 법치주의의 원칙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인 법치주의 원칙 지키지 않고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자신들이 불리하면 정치탄압이고 유리하면 법치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분들이 어떻게 법사위의 위원이 되고 간사까지 합니까?

지금 국민들이 내란이 아니라고 이런 얘기 하시는데 온 국민들은 아직까지도 불안해하세요. 내란 잔당들이 언제 다시 수면 위로 고개를 쳐들고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흔들까봐 마음이 졸여서 밤잠을 아직도 못 자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내란 이 얘기를 가지고 부정하는 그런 국민의힘이, 저는 사실은 국민의힘은 해산이 맞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드립니다. 종교의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거 인정합니다. 하지만 종교의자유라고 하는 것도 법치주의 근간 위에서 이루어지는 건데요. 종교의자유라고 하는 것이 법을 위반해도 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추미애 위원장님 그리고 김용민 간사님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의 위원님들 또 박은정 조국혁신당 위원님께 정말 간곡히 부탁드린는데요. 나경원 위원 같은 사람은 절대 간사가 되지 못하도록 철저히 끝까지 막아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법적 질서, 법치주의에 대해서 사법개혁, 검찰개혁, 헌정질서 회복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가진 분이 우리 법사위의 위원이 되도록 하고, 특히 간사 추천은 그에 대한 분명한 자기 입장, 내란에 대한 반성, 계엄에 대한 반성을 반드시 사전에 한 사람이 우리 법사위의 간사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위원님들께 아까 요청드렸지만 김용민 간사님, 절대로 안 됩니다. 한 말씀 주시지요.

○**김용민 위원** 예.

○**최혁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만입니다.

○위원장 추미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국회법에 정확하게 57조의2 제5항에 명시돼 있습니다. 위원장이 소속 위원 중에서 간사와 협의하여 선임하도록 되어 있지요. 거기에 따라서 위원장으로서는 안건조정위원 추천 요구를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당, 비교섭단체에 각각 3명, 2명, 1명씩 추천 요구를 한 것을 속기록을 찾아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간사는 국민의힘당의 간사가 부재하는 관계로 인하여 국민의힘 위원 전체를 대상으로 위원 추천에 대한 협의를 진행한 바 있고 이것은 위원장이 또 직접 확인한 바 있습니다. 또 정해진 시간에 협의하기 위해 세 차례에 걸쳐 추천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것에 대해서 실상을 얘기해 봐요.

위원장님 자꾸 거짓말하세요!

○위원장 추미애 위원장 발언 중에 위원장 발언과 진행을 방해하는 송석준 위원님은……

○송석준 위원 경고 주세요. 제가 퇴장까지 각오하겠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행정실에서 명기를 해 주시고요. 1차 경고합니다. 경고 두 번을 넘어 가면 퇴장을 명하도록 사전에 경고합니다.

그러면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욱 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있다고요. 제 눈 피하지 마시라니까요, 위원장님. 왜 자꾸 제 눈을 피합니까?

○박은정 위원 아까 드렸는데 안 하셨잖아요.

○신동욱 위원 언제 내가 의사진행발언을 받았어요? 발언권을 주시라니까요.

○위원장 추미애 오늘 회의에서는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관련 안건들을 먼저 의결하고 타 상임위 법안을 심사한 후 고유법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갑니다.

-
1.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2.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서류제출요구의 건
 3.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14시28분)

○위원장 추미애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관련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은 검찰개혁 입법청문회를 9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최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문회 실시계획서(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각 당 한 분씩의 의견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나경원 위원 저는 지금 법사위에 와서 법사위 운영을 하시는 걸 보면, 이게 추미애 위원장 훌로의 나홀로 법사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의견을 듣고 또 간사와 협의하고 이런 절차를 진행해서 회의를 진행해 주셔야 되는데 일방 통보입니다. 일방 통보라는 말씀, 이것은 불법적인 회의 운영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간사 선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간사 선임안 상정해 주실 것을 촉구하고요.

지금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실시계획서에 관한 의견을 말씀하라고 그러시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지난번 소위의 일방적인 청문회에 대해서 상당한 이의를 표시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수사 중인 사건,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 청문회라는 이름을 빌려서 실질적으로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하지 말자 그랬는데, 오늘도 저희가 보니까 결국은 또다시 민주당이 내놓은 것은 관봉권 떠지 사건이에요.

지금 의사일정 제3항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은 모두 채택해 주시는 겁니까? 이것 채택 안 해 주시고 지금 토론하자 그러면 결국은 다 빼고 또 관봉권 떠지를 하실 생각인 것 같은데 이것은 검찰개혁 입법청문회라는 것을 빙자해서 실질적으로 수사에 개입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런 일정, 진행을 보면 지금 법사위가 원래 해야 될 고유의 권한을 넘어가고 있다. 국정감사 증인 및 증언에 관한 법률에 보면 분명히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법사위 회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이 준용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하는 게 뻔히 다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또 관봉권 사건 하자고 하는데, 저희는 사실 갑자기 증인 내라 그래서 오늘 부지런히 냈습니다. 저희 당 45명 냈으니까 이것 하실 거면 저희 45명 다 채택해 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민주당이 요구하는 대로 관봉권 떠지만 하는 청문회에 대해서는 저희는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의 안건조정위원회는 이렇습니다. 사실 안건조정위원회는 소위 국회선진화법 이후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안건조정위원회를 왜 하느냐? 상호 간의 논의가 충돌할 경우에는 충분히 논의하라는 것이고 거기의 90일이라는 시간은 숙려기간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법사위에서부터 숙려기간은커녕 90일 이내에 논의하라는 것을 16분, 1시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안건조정위원회를 그 취지에 맞게 운영하는 것이 아니지요. 국회는 절대로 다수당 마음대로 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단지 5% 더 받았는데 의석수는 171 대 108석이 됐다고 이렇게 폭주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추미애 위원장께서 한번 잘 보십시오. 상임위의 안건을, 이렇게 안건조정위원회를 16분 만에 끝내고, 이것이 안건조정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한 것입니까?

그래서 저는 일단 첫 번째, 간사 선임해 달라는 것, 두 번째, 회의 운영을 민주적으로 해 달라는 것. 민주적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국회법의 취지에 맞도록 해 달라. 특히 안건조정위원회는 90일의 숙려기간을 두었을 뿐만 아니라 그 뒤의 단서에 보면 양당이 협의해서 90일 내의 특별한 기간을 정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보면 거꾸로 읽으면 90일은 충분히 보장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잘못된 관행, 제동을 반드시 걸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검찰개혁 입법청문회를 빙자해서 관봉권 수사를 법사위에서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명백히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요. 저희가 지난번에도 일방적으로

진행된 청문회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번에 국민의힘이 45명의 증인·참고인을 신청했으니 검찰청 해체에 관해서 올바른 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모두 채택해 달라는 것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추미애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안건조정위원장은 제가 아니고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이시고요. 그렇다면 나경원 위원께서는 안건조정위원회에 들어오셔서 토론을 하셨어야 됩니다. 논의를 충분히 하는 곳이 안건조정위원회라면……

○나경원 위원 안건조정위원이 아니었습니다. 안건조정위원이 아닌데 어떻게 토론합니까?

○곽규택 위원 불법적으로 구성한 회의에 왜 들어가요?

○박은정 위원 오셨었잖아요. 오셨는데 왜 아니래.

○위원장 추미애 안건조정위원회가 충분히 논의하는 곳이라면 안건조정위원회에 들어가셨어야 되는 것이지요.

○장경태 위원 초선도 아닌데 안건조정위원회 갈 수도 있지, 들어가시지.

○곽규택 위원 불법적인 위원회를 열어 놓고……

○나경원 위원 위원을 일방적으로 지명하셨잖아요.

○위원장 추미애 그리고 안건조정위원회 신청은 국민의힘 쪽에서 하신 것 아닙니까? 신청을 해 놓고 출석하지 않으시면 되겠습니까?

○곽규택 위원 위원을 일방적으로 불법적으로 정하니까 그렇지요.

○조배숙 위원 간사 선임을 안 했잖아요. 누구랑 해요?

○위원장 추미애 그리고 회의의 민주적 운영을 주장하셨는데 그전에 민주주의를 존중하고 내란을 일으키지 말았어야지요. 내란을 옹호하지 말았어야지요. 계엄 해제하려 진지하게 응했어야지요.

○곽규택 위원 또 할 이야기 없나 보네요. 또 할 이야기 없나 봐. 할 레퍼토리가 그렇게 없어요?

○조배숙 위원 왜 자꾸 ‘내란’, ‘내란’ 얘기하는 거예요? ‘내란’, ‘내란’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면 지금 재판을 왜 해요?

○나경원 위원 아니, 왜 또 내란입니까?

○송석준 위원 정청래 대표 따라가지 마세요. ‘내란’, ‘내란’ 안 하시더니 왜 오늘 또 내란을 얘기하세요? 추미애 위원님답게 ‘내란’, ‘내란’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위원장 추미애 저는 국민의힘 위원님 여러분들을 존경합니다. 내란 극복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 위원 존경하지 마세요.

○송석준 위원 예,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요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 주세요. 정청래 그런 분 따라가지 마세요.

○곽규택 위원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없으시다 그러세요. 뭘 또 내란 이야기를 하셔.

○신동욱 위원 존경 안 해도 되니까 진행을 똑바로 하세요, 진행을. 진짜 이게 뭐니까? 여기 언론인분들 다 계시는데 이게 뭐니까, 국회가? 부끄럽지 않습니까?

○위원장 추미애 또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전현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전현희 위원** 서울 중·성동갑 국회의원 전현희입니다.

지금의 법사위는 정말로 비상한 시대의 비상한 법사위입니다. 저는 지금 법사위의 가장 중요한 책무가 내란을 종식하고 국정농단에 대해서 확실한 단죄를 해서 대한민국에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게 법사위의 책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왜 나경원 위원께서 법사위 간사 자격이 없냐 이 설명을 드린 바 있는데요. 내란을 종식하고 국정농단을 심판해야 되는 이 비상한 시대의 비상한 법사위의 법사위원으로서의 자격도 없다 생각합니다. 내란에 대한 그동안 나경원 위원께서 보여 주신 수많은 내란 동조 행태를 일일이 거론을 안 해도 그동안 많이 거론을 했으니까 국민들께서는 똑똑히 지켜보시고 아셨을 거다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의 위원으로서 그리고 법사위 간사로서 자격이 있는 분을 국민의 힘에서 추천을 해야지 안 그러면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들은 내란 종식을 방해하고 국정농단 심판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법사위장을 활용하고 있다 이런 오해를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법사위 간사가 다시 재추천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건진법사의 관봉권 떠지 사건에 대해서 왜 지금 다시 증인을 소환하고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진법사의 관봉권 떠지 사건은 검찰에 의한 의도적인 증거인멸이고 그리고 관봉권 떠지를 분실한 그 배후에는 혹여나 윤석열 정권의 특활비라든지 이런 불법적인 자금을 사실상 건진법사가 수수한 것을 은폐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 배후에는 윤석열 정권 차원의 불법적인 자금의 원천이 드러날까 봐 검찰에서 이것을 은폐한 게 아닌가 이것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개혁을 논하는 지금 이 검찰개혁 청문회에서는 반드시 최근에 발생한 이 사안에 대해서 정치검찰에 의한 고의적인 증거인멸의 가능성에 대해서 그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사례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건진법사의 관봉권 떠지 사건에 대해서 법사위에서 청문회를 통해서 진상을 밝히려는 것이지 이것을 법사위에서 수사를 해서 검찰에게 망신을 주려거나 이런 의도가 전혀 아닙니다.

이 사안은 검찰개혁이 왜 필요한가, 그리고 그동안 윤석열 정권하에서 정치검찰의 정치공작 그리고 증거인멸 또 전술 세미나 등 각종 증거 조작 행위가 지금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개혁은 검찰이 자초한 것이다 이것이 국민들이 보는 시각이고요. 그것의 가장 최근의 대표적인 사례가 관봉권 떠지 사안이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이 사안의 진상을 규명하겠다 그리고 관련되어 있는 증인들을 저희들이 소환을 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겠다는 것인데 도대체 검찰개혁의……

오늘도 국민의힘 대표께서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국민의힘도 검찰개혁에 대해서 찬성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협조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당연히 검찰에 의한 고의적인 증거인멸로 의심되는 그리고 정권의 특활비, 뭔가 그것을 은폐하려는 의도로 의심이 되는 이 사안에 대해서 함께 힘을 모아서 진상을 규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법사위의 당연한 권한과 당연한 의무에 대해서 왜 딴지를 걸고 하지 말자고 하

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도 검찰개혁에 찬성하신다면 그동안 검찰의 이런 잘못된 과오에 대해서는 감싸기만 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서 다시는 검찰의 이런 정치공작이나 증거인멸이나 범죄행위가 없도록 협조하시는 것이 마땅히 하셔야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나경원 위원** 신상발언 좀 주십시오. 두 번이나 제 이름을 거론하면서 지금 제가 마치 내란 공범인 것처럼, 무슨 범죄자인 것처럼 국민들에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한테 신상 발언 주십시오.

○**송석준 위원** 신상발언 주시지요. 이것은 인격모독성 문제가 있어서……

○**박균택 위원** 토론 종결을 요청드립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신동욱 위원** 신상발언 달라고 하는데 무슨 토론 종결을 해요, 박균택 위원님? 이렇게 까지 인신공격을 당했는데 신상발언을 안 주시면 우리가 동료 위원으로서…… 인신공격을 너무 심하게 당하시는 거잖아요. 입장을 바꿔서……

○**송석준 위원** 관봉권 떠지는 내부 감찰이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꼭 여기서 논의해야 되는 거야?

○**김용민 위원** 토론 종결해 주시고 하시지요.

○**곽규택 위원** 신상발언은 주시고 종결하셔야지요.

○**위원장 추미애** 박균택 위원님 외 세 분으로부터 토론을 종결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해당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신상발언 주세요」 하는 위원 있음)

○**곽규택 위원** 추미애 위원장님, 신상발언은 주고 진행하셔야지요. 회의를 이렇게 진행하시면 어떡해요?

○**송석준 위원** 동료 위원에 대한 모독성 발언에 대해서 당사자에게 신상발언 주세요.

○**위원장 추미애** 김용민 위원님 등 찬성하는 위원님들이 계시므로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토론 종결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고 이에 대하여 국회법 제108조에 따라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하겠습니다.

○**조배숙 위원** 뭐에 대한 토론이에요?

○**곽규택 위원** 추미애 위원장님, 신상발언 기회를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나경원 위원** 신상발언 주십시오.

○**장경태 위원** 여기가 개인 위원회가 아니니까 소통관 다녀오세요.

○**위원장 추미애** 표결에 앞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석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며 표결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곽규택 위원** 위원장님, 신상발언 기회 주셔야지요.

○**위원장 추미애**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주진우 위원** 이것도 열띤 토론 한 겁니까?

○**조배숙 위원** 열띤 토론 했나요?

○**위원장 추미애**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송석준 위원** 반대하면서 신상발언을 좀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신상발언 좀 주세요.

○**곽규택 위원** 이게 말이 되는 회의 진행이에요? 신상발언의 기회는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조배숙 위원** 열띤 토론 하게 해 주세요.

○**장경태 위원** 열띤 안건조정위에 안 들어오셨으니까 아쉽지요.

○**곽규택 위원** 뭘 열띠어? 안 했더만.

○**위원장 추미애**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7인 중 찬성 11인, 반대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동욱 위원** 위원장님, 이 순간만 끝나면 다 끝날 것 같지요? 기록에 다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법사위를 어떻게 진행했는지 다 남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평가를 받으려고 이렇게 만행을 저지르십니까?

○**위원장 추미애** 토론 종결 동의가 가결되었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곽규택 위원** 신상발언 기회는 주셔야지요.

○**송석준 위원** 이제 신상발언 주시지요, 토론 종결시키셨으니까.

○**신동욱 위원** 국회가 그렇게 우스워요? 기록에 다 남습니다. 이러고 열띤 토론 했다고요?

○**위원장 추미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이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많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표결하겠습니다.

(장내 소란)

표결에 앞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석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표결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장내 소란)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7인 중 찬성 11인, 반대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서류제출요구의 건입니다.

청문회와 관련한 서류제출 요구는 국회법 제128조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이나 재석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각 의원실로부터 접수된 서류제출 요구 대상기관과 건수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9월 17일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은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9월 15일 오후 4시까지 행정실로 제출해 주시면 위원장 명의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많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신동욱 위원** 이의 있습니다.

토론 기회 주세요. 눈 피하지 마시고 토론 기회를 주세요.

○**박지원 위원** 눈을 왜 피해.

○**신동욱 위원** 피하잖아요, 자꾸.

○**송석준 위원** 자꾸 피하잖아요.

○**박은정 위원** 아까 드렸잖아요.

○**신동욱 위원** 선배님, 지금 부끄럽지 않아요?

○**박지원 위원** 수석최고위원이 체통을 지키세요.

○**위원장 추미애** 신동욱 위원님.

○**신동욱 위원** 부끄럽지 않으세요? 지금 이 상황이 부끄럽지 않으세요, 박지원 위원님?

○**위원장 추미애** 신동욱 위원님! 신동욱 위원님, 토론 기회 드렸습니다.

○**서영교 위원** 부끄럽지 않으세요, 지금?

○**신동욱 위원** 부끄럽지 않으세요?

○**서영교 위원** 검찰개혁 하자는데 부끄럽지 않아요, 지금?

○**김용민 위원** 또 토론 기회 드리잖아요. 토론하세요.

○**신동욱 위원** 아니, 토론을 못 하게 하는 이 국회가 부끄럽지 않으세요?

○**서영교 위원** 가만있으니까 계속 말이 많네.

○**위원장 추미애** 신동욱 위원님, 두 번째 토론 기회 드리고 있습니다.

○**신동욱 위원** 제가 지금 몇십 년을 아시는 분들.....

○**김용민 위원** 토론하세요.

○**위원장 추미애** 신동욱 위원님, 세 번째 토론 기회 드리고 있습니다.

○**신동욱 위원** 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주지 마세요, 저렇게 하면.

○**곽규택 위원** 서영교 위원님 방해했어요.

○**송석준 위원** 경고, 경고.

○**신동욱 위원** 서영교 위원님, 발언권 받아서 말씀하세요.

○**곽규택 위원** 퇴장시키세요.

○신동욱 위원 제가 추미애 위원장님 오시고 나서……

○서영교 위원 내 눈을 똑바로 보고 얘기해요, 내 눈을 피하지 말고.

○신동욱 위원 추미애 위원장 오시고 나서 처음으로 제가 발언권을 얻는데, 무슨 안건이고 뭐고 정말 부끄럽지 않으세요? 이거요 국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하시는 거 저희가 법적으로 대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 이전에 상식이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국회를 이렇게 하십니까?

저요 추미애 위원장님 오신다 그래서 정말 기대 많이 했습니다. 추미애 위원장님 고집은 세시지만 그래도 과거에 민주당 환노위원장 하시면서 기개 있게 다른 당 의원들, 자당 의원들 못 들어오게까지 하면서 소신 관철시킨 점, 드루킹 사건 수사하자라고 소신 있게 말씀하셨던 드루킹 사건 수사하게 만든 점,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에 소신 있게 찬성하신 점, 저는 추미애 위원장님 정계에 입문하는 순간부터 다 지켜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잘잘못을 떠나서 국회는 토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할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입틀막 해서 국회가 무슨 발전이 있습니까?

조금 전에 열띤 토론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하나하나 짚어 보겠습니다.

추미애 위원장님 오셔서 뭐부터 잘못 꼬였습니까? 1소위 느닷없이 3명 늘리겠다고 했는데 이유를 설명 안 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저희 당에서 추천한 1소위 위원, 주진우 위원 추천했는데 끝까지 안 해 주셨지요? 주진우 위원이 왜 그렇게 무섭습니까? 안 해 주신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두 번째, 나경원 간사가 왔어요. 좋습니다. 내심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 것까지 저희가 관여할 필요는 없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국회가…… 동료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최대한 예우를 해 주는 것이 국회입니다. 나경원 위원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만 이렇게 떼 지어서……

○이성윤 위원 떼 지어서라니? 뭐를 떼 지어?

○신동욱 위원 떼 지은 거지요. 여러 명이 동시에 똑같은 발언을 하면 떼 지은 거지요. 무슨 내란이다 내란이다 하면서 남의 당 간사 선임에까지 왜 그렇게 내란이라는 말이 필요합니까?

그리고 무작정 간사를 선임해 주지 않고 ‘협의하게 돼 있는데 왜 협의하지 않습니까?’, ‘간사가 없어서 못 합니다’……

간사는 왜 안 해 줍니까, 그러면? 도대체 이런 행패가 어디 있습니까, 국회에서?

○박지원 위원 자격 없으니까 안 해 주는 거지!

○신동욱 위원 도대체 이런 행패가 어디 있습니까?

○곽규택 위원 조용히 하고 나가!

○신동욱 위원 저는 박지원 위원님 몇십 년 동안 정치 생활 하시면서 정말 부끄러워서 지금 이 자리 피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은정 위원 방송하러 가세요.

○신동욱 위원 어떤 경우도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 모든 법이 통과되는 마지막 관문인 국회에서 상대 당 제1야당의 간사를 선임해 주지 않는 이런 폭거가 어디 있습니까?

- 박은정 위원** 사과를 하시라고요.
- 신동욱 위원** 이게 이러고도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나홀로 독재당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홀로 독재당!
- 박은정 위원** 사과를 하시라고요, 사과를!
- 신동욱 위원** 혼자서 다 해 드세요.
- 송석준 위원** 방해하지 마세요.
- 박은정 위원** 사과를 하시라고!
- 신동욱 위원** 박은정 위원님, 조국혁신당 성추행 문제나 똑바로 하고 여기 오세요. 법사위 와 있을 자격 있습니까?
- 박은정 위원** 내란당이나 쟁기세요!
- 신동욱 위원** 그러니까 성추행당, 성추행당 위원 여기 와 있을 자신 있습니까?
- 박은정 위원** 내란당이나 쟁기세요. 내란당이나 쟁기라고!
- 위원장 추미애** 마이크 꺼 주세요.
- 신동욱 위원** 그러니까 그쪽이든 이쪽이든 남의 위원들의 자격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마시라고요. 경고해 주세요. 스톱하고 경고해 주세요.
- 박은정 위원** 그날 왜 표결에 안 왔습니까? 왜 국민의힘은 계엄 날 표결에 안 왔습니까!
- 곽규택 위원** 발언하는데 끼어들었어요. 제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 박은정 위원** 왜 내란 날 표결에 안 왔습니까! 사과하시라고요!
- 신동욱 위원** 시계 멈추고 경고해 주세요.
- 나경원 위원** 경고해 주세요.
- 위원장 추미애** 신동욱 위원님 발언 부분은 속기록을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 곽규택 위원** 저게 뭐 하는 짓이에요, 지금!
- 송석준 위원** 경고가 아니라 즉시 퇴장감이네.
- 신동욱 위원** 퇴장해 주세요.
- 박은정 위원** 사과를 하시라고요, 사과를!
- 신동욱 위원** 빨리 경고해 주세요.
- 서영교 위원** 정말 예의가 없네.
- 곽규택 위원** 조국 성추행당!
- 신동욱 위원** 아니, 조국당이 왜 제 발언시간에……
- 박은정 위원** 내란당이나 쟁기세요, 내란당이나!
- 이성윤 위원** 예의를 갖추세요. 왜 갑자기 또 남의 당 얘기를 합니까?
- 신동욱 위원** 경고해 주세요. 발언시간 중에 저렇게 하는 것을 경고해 주세요.
- 곽규택 위원** 이것 보세요. 지금 저렇게 끼어들잖아요.
- 박은정 위원** 내란당이나 쟁기시라고!
- 신동욱 위원** 추미애 위원장님, 저희 당 발언에 대해서 누가 끼어들면 경고도 잘하시고 퇴장 협박도 잘하시잖아요. 왜 저런 거는 가만둡니까?
- 박은정 위원** ‘저런 거’?
- 신동욱 위원** 위원장님, 중립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박은정 위원** ‘저런 거’라고 하셨어요, ‘저런 거’?
- 곽규택 위원** 저런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토 달지 말고, 좀! 억지 부리지 말고!
- 박은정 위원** ‘저런 거’가 뭐예요!
- 신동욱 위원** 그런 말에, 그런 것에 말꼬리 잡을 자격 없으니까 빨리 경고해 주세요.
- 박은정 위원** ‘저런 거’가 뭐냐고! 왜 반말하세요?
- 신동욱 위원** 무슨 반말을 해요?
- 곽규택 위원** 조국 억지당이야, 조국 억지당.
- 박은정 위원** 왜 반말하세요. ‘저런 거’가 뭐예요!
- 신동욱 위원** 그 말보다 아무 근거 없이 상대방 위원들에게 내란당이다, 내란이다 하는 게 더 예의가 없으신 거예요!
-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 박은정 위원** 내란 아니에요? 내란 아닙니까!
- 신동욱 위원** 성추행 아닙니까?
- 박은정 위원** 내란 아닙니까!
- 신동욱 위원** 성추행 아니냐고요! 왜 성추행 옹호하셨어요!
- 박은정 위원** 내란 아니냐고요! 내란당이나 쟁기세요!
- 곽규택 위원** 위원장님, 보세요. 지금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박은정 위원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경고하시고 제재하셔야지 왜 가만히 계세요, 지금!
- 조배숙 위원** 공정하게 진행해 주세요.
- 나경원 위원** 위원장님, 경고하세요.
- 신동욱 위원** 경고해 주세요.
- 나경원 위원** 경고하세요, 위원장님!
- 곽규택 위원** 지금 끼어든 거 아닙니까?
- 나경원 위원** 위원장님, 적어도 중립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십시오. 경고하십시오!
- 김용민 위원** 들어 보세요.
- 위원장 추미애**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국회법 제146조에 명기돼 있고 국회법 제147조에는 ‘함부로 발언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의 발언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돼 있습니다.
- 신동욱 위원** 왜 저를 보고 그 말씀을 하시냐고요. 박은정 위원을 보고 그 말씀을 하시라고요.
- 위원장 추미애** 그런데 신동욱 위원님은 본인을 보는 거울은 없으신 것 같아요.
- 주진우 위원** 위원장님 뭐 하시는 거예요, 사회 안 보고!
- 신동욱 위원** 위원장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 송석준 위원** 경고 줄 사람한테 경고 안 주시고.
- 서영교 위원**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잖아요.
- 이성윤 위원** 들으세요! 위원장이 말씀하면 들으세요!
- 신동욱 위원** 위원장님 똑바로, 법사위를 똑바로 진행하시면 이런 발언이 나오겠습니까?

- 서영교 위원** 위원장님, 퇴장시켜 주세요. 신동욱 위원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어요.
- 신동욱 위원** 이런 발언이 나오겠냐고요.
- 최혁진 위원** 퇴장시켜 주세요. 너무 시끄러워요!
- 이성윤 위원** 발언 제한해 주세요, 발언 제한!
- 신동욱 위원** 남 발언 중에 왜 끼어드세요?
- 곽규택 위원** 왜 발언 제한을 해요?
- 신동욱 위원** 제 발언시간이에요.
- 위원장 추미애** 신동욱 위원에 대해서는……
- 서영교 위원** 신동욱 위원 혼자만 합니까?
- 신동욱 위원** 지금 그러니까 끼어들지……
제 발언시간이에요.
- 이성윤 위원** 멈췄잖아요, 시간!
- 서영교 위원** 무례하기 짝이 없네.
- 위원장 추미애** 신동욱 위원에 대해서는 1차 경고합니다.
- 곽규택 위원** 왜 경고를 해요!
- 서영교 위원** 무례하기 짝이 없어.
- 조배숙 위원** 저쪽에 경고해 주세요.
- 나경원 위원** 추미애 위원장님,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 위원장 추미애** 경고 사유는 아까 김용민 위원이 발언할 때 의사진행을 방해한 바 있습니다.
- 나경원 위원** 아니, 지금 신동욱 위원님 발언시간이에요!
- 곽규택 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 주진우 위원** 이제 와서 무슨 경고예요.
- 송석준 위원** 아니, 왜 이제서 줍니까? 그때 줘어야지 지금 왜……
박은정 위원이 의사방해를 하는데 왜 엉뚱한 사람한테 줘요?
- 나경원 위원** 신동욱 위원님 발언시간이에요!
- 곽규택 위원** 앞뒤를 구분을 못 해요, 지금!
- 김용민 위원** 들어 보세요!
- 위원장 추미애** 그리고 지금 발언 기회에, 토론 기회에 토론을 하지 않으시고……
- 신동욱 위원** 예, 그 경고 받겠습니다.
그러면 박은정 위원도 경고 주세요. 그 경고 받겠습니다.
- 주진우 위원** 그러면 박은정 위원은요?
- 신동욱 위원** 박은정 위원, 최혁진 위원은요? 최혁진 위원은 무슨 토론을 했습니까?
- 나경원 위원** 신동욱 위원 발언시간에 위원장이 이렇게……
- 위원장 추미애** 위원에 대해서 다른 사유를 끌어와서 모욕하는 발언을 하거나 근거 없는 사실로 위원장을 모욕하는 발언으로 지금 토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주진우 위원** 무슨 발언을 모욕했는데요?
- 신동욱 위원**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 발언이 무슨 모욕입니까?
- 곽규택 위원** 무슨 모욕이에요, 그게!

○나경원 위원 무슨 모욕입니까!

○위원장 추미애 신동욱 위원에 대해서는 2회 경고를 하는 바입니다.

○주진우 위원 무슨 발언이 모욕입니까? 특정을 해 보세요.

○조배숙 위원 박은정 위원에 대해서 경고해 주세요.

○송석준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제대로 해 주셔야지 정상 발언을 하는 사람은 경고 주고 방해하는 사람은 경고도 안 줍니까?

○곽규택 위원 누가 누구를 모욕해요, 지금!

○나경원 위원 지금 신동욱 위원님 발언시간입니다!

○위원장 추미애 더 이상 발언권을 신동욱 위원에 대해서는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곽규택 위원 누가 누구를 모욕했단 말이에요!

○주진우 위원 이게 말이 돼요? 이제 발언할 때 끼어들어도 되겠네요, 우리도.

○송석준 위원 심판 그렇게 보시면 심판 자격 박탈됩니다. FIFA 규정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공정하게 심판을 봐 주세요.

○곽규택 위원 누가 누구 발언하는데 모욕했다는 거예요!

○이성윤 위원 조용히 해 주세요.

○송석준 위원 정상적인 의사진행발언하는 것을 갖다 경고 주는 게 어디 있어요!

(장내 소란)

○서영교 위원 이제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신동욱 위원님, 자기 차례 오면 다시 발언하세요.

○곽규택 위원 발언하세요! 발언이나 하세요, 빨리!

○서영교 위원 곽규택 위원님, 조용히 하세요. 내가 질의하게!

○곽규택 위원 발언하세요, 그러니까!

○서영교 위원 내가 발언하게 가만히 계세요!

○곽규택 위원 발언하시라고요!

○서영교 위원 곽규택, 가만히 계세요!

○곽규택 위원 발언하시라고! 발언하세요!

○서영교 위원 내가 발언할 테니까 가만히 있어요.

○곽규택 위원 발언하세요!

○서영교 위원 곽규택, 내가 발언할 테니까 가만히 있어요.

○곽규택 위원 발언하세요! 발언해 보세요, 어디!

○서영교 위원 자, 여러분 이제 일합시다.

○곽규택 위원 일하세요, 혼자!

○서영교 위원 그만 떠들어요.

○곽규택 위원 위원장님, 누가 누구를 모욕했다고 말씀하십니까? 똑바로 얘기해 보세요.

○주진우 위원 어느 한쪽만 경고를 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서영교 위원 위원장님께서 저렇게 무례하게 떠드는 사람들 꼭 발언을 중지시켜 주시고 발언도 못 하게 해 주시고 또 퇴장 조치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곽규택 위원 할 말이 없으니까 그렇게 통치지 마시고!

○주진우 위원 아까 박은정 위원부터 했었어야지요.

○서영교 위원 박은정 위원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말을 한 거예요.

○곽규택 위원 무슨 할 수 있는 말을 해요, 그게!

○서영교 위원 여러분, 우리가 이 법사위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곽규택 위원 이렇게 예의가 없이 회의를 진행해.

○주진우 위원 우리도 끼어들어서 할 말 하면 됩니까, 그러면?

○서영교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세요. 이 돈이, 이게 돈다발이에요. 검사 많이 하셨으니까 보셨을 거 아닙니까? 이 돈다발이 5000만 원이에요. 비닐이 칭칭 동여매져 있고 여기에 띠가 딱 둘러 있어요. 이 띠는 어느 은행에서 나온 띠인지 언제인지 날짜가 다 되어 있어요.

이게 건진이라고 하는 사람 은신처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건진 은신처에서 나온 이 돈다발이 검사들이 압수수색하고 이 돈다발의 스티커가 없어졌어요. 이 돈다발의 띠지가 없어졌어요. 이 돈다발이 전부 다 해체됐어요. 이 돈이 김건희한테서 나왔는지 윤석열한테서 나왔는지 국정원에서 김건희한테 왔다가 건진에게 갔는지 확인을 해야 하는데 화들짝 놀란 거예요.

잘 보세요. 오늘 여기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지만 이 돈은 2022년 5월 13일 날 발행된 돈이에요. 그리고 어제 나온 보도에 의하면 2022년 5월 10일에도, 아니 10월 달에도 또 이런 판봉 쳐진 돈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돈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대한민국의…… 저는 한 번도 만져 본 적도 없어요. 실물로 본 적도 없어요. 그러면 이런 어마어마한 돈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 이렇게 오고 가고 있는데 이게 검찰에 가서 다 해체되었어요. 그리고 없어졌어요. 이거 무슨 일입니까? 2022년 5월 13일에 나온 돈이니 윤석열과 관계되어 있나 보다, 김건희랑 관계되어 있나 보다, 화들짝 놀라서 이걸 다 해체해 가지고 분해해 버렸으니 이게 대한민국 검사입니까?

○나경원 위원 특검에서 수사하라 그러세요, 수사.

○서영교 위원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법사위는 이거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법안소위에서 했는데 이 내용이 다 밝혀졌어요. 그래서 이것을 전체회의에서 한 번 더 하자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이걸 막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날 이 관리를 했던 수사관이 나왔어요. 그날 이 관리를 했던 검사가 나왔어요. 검사는 ‘위원님,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러고 어리버리하게 대응하고요. 그리고 수사관은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네 사무규칙 4조하고 몇 조에 의하면 이거 해체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다시 갖고 와서 이야기를 할 텐데 여기에 보면, 압수물사무규칙에 의하면……

○나경원 위원 의사일정 관련된 이야기를 하세요.

○서영교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바로 그 내용 아닙니까? 돈을 다 세야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사무규칙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압수물은 압수물 원형 그대로 보관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압수물사무규칙 4조에 이 돈다발은 원형 그대로 보존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걸 해체했어요. 그러니 이 검사를 불러다가, 수사관들 불러다가 이야기해서 왜 너희들이 범죄를 안 잡고 왜 범죄자의 증거를 인멸했는지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거 묻자고 하는데 왜 나경원 위원은 하지 말자고 얘기하는 거며 왜 여러분들은 하지 말자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거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엇이 두려워서 감싸자고 하는 겁니까?

○곽규택 위원 수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나경원 위원 수사하라 그러라고요, 수사하라고. 왜 법사위에서……

○서영교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수사는 수사로 넘기고 법사위는 뭐 하는 겁니까? 나경원 위원은 그거 막아 주려고 이 법사위에 오신 겁니까?

○나경원 위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해요!

○곽규택 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 하세요, 좀!

○나경원 위원 신상발언 주세요, 신상발언.

(장내 소란)

○서영교 위원 아니잖아요. 지금 행태가 막아 주려고 오는 거 아닙니까?

○곽규택 위원 이거 보세요. 이런 이야기 하니까 제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저런 거를 제재해야지!

○나경원 위원 신상발언 주세요.

○김용민 위원 좀 들어 보세요!

○서영교 위원 여기 와서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습니까? 이 내용 관련해서 이 법사위에서 입법청문회를 해서……

○곽규택 위원 위원장님, 이런 거 제재 안 해요, 왜! 왜 제재 안 하시냐고!

○위원장 추미애 곽규택 위원님 경고합니다.

○이성윤 위원 왜 책상을 치고 난리예요!

○김기표 위원 왜 책상을 쳐요!

○김용민 위원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무례하게!

○위원장 추미애 곽규택 위원님 소란행위에 대해서 중단하지 않으면 퇴장을 명할 겁니다.

○곽규택 위원 왜 제재를 안 해요, 제재를! 제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재하세요, 빨리!

○김용민 위원 예의를 좀 지키세요!

○위원장 추미애 곽규택 위원님 소란 행위를 멈추지 않으면 퇴장을 명할 겁니다.

○곽규택 위원 퇴장시켜 보세요.

○서영교 위원 이게 드러날까 두려운가? 이 돈다발이 드러날까 두려운가?

○나경원 위원 신상발언 주세요, 신상발언.

○곽규택 위원 제재하세요! 왜 제재 안 해요!

○송석준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주세요.

○김기표 위원 토론 종결해 주십시오.

○주진우 위원 반대토론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위원장님, 이 돈다발의 증거인멸이 드러날까 두려운 국민의힘 오늘 낱낱이 그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나경원 위원 신상발언하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추미애 박은정 위원님.

○나경원 위원 신상발언하게 해 주세요.

○곽규택 위원 지금 반대토론을 인정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서영교 위원 곽규택 위원은 내보내 주세요. 무례하기 짝이 없어.

○박은정 위원 나경원 위원님께서 지난번 안건조정위가 16분밖에 하지 않았다고 그거 충분히 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데 제가 너무 기가 막힙니다. 왜냐하면 그 안건조정위를 국민의힘에서 하자고 해 놓고는, 저희는 1소위에서 충분히 논의를 했어요, 특검법에 대해서. 그런데 안건조정위를 자기들이 신청해 놓고는 와 가지고는 우르르 다 나가버렸어요. 그런데 무슨 안건조정위를 충분히 안 했다고 또 말씀을 하시는지. 기억을 못 하시면 문신이라도 새기라고, ‘메멘토’라는 영화가 있어요.

압수계에 한 30년 정도 오랫동안 근무한 검찰수사관, 최근에 퇴직한 수사관 얘기는—전직 수사관입니다—자기 30년 근무하는 동안 관봉권을 단 한 번, 딱 한 번 봤대요. 그러니까 지난번 소위에 와서 했던 그 수사관들이 이 관봉권 몰랐다,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는 것들은 뭔가 이 수사에 대한 은폐, 떠지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 검찰이 조직적으로 이 사건을 뭔가 숨기고 있다.

그러니까 왜 이게 문제가 되냐 하면, 왜 검찰개혁과 연결되는지를 국민의힘 위원들께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검찰이 건진법사, 김건희지요. 김건희하고의 연관성, 김건희의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건진법사, 건진이라는 사람이 아주 핵심적인 인물이었다는 거지요. 수사를 했습니다. 남부에서 수사를 했는데 건진에 대해서 구속도 못 했어요. 남부지검장 찐 친윤 신웅석 검사장이 있는 남부지검에서 수사를 잘한다고 맨날 언론플레이만 했어요. 이 사람은 정권이 바뀔 것 같으니까 또 언론플레이하면서 건진법사 수사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작 수사를 어떻게 했냐 하면 관봉권을 이렇게 다 풀어 해쳐 가지고 떠지 없어지고 이러면서 건진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그것이 밝혀졌어요, 그 수사가 은폐되고 있다는 것이. 아까 나경원 위원님께서 수사를 하게 해 주라, 수사로 밝히면 된다 얘기하는데 지금 검찰이 수사를 못 하는 거예요. 은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검이 지금 발족을 했고요. 특검 발족하는 과정에 이 떠지 수사와 관련해서는 특검에서 수사를 아직 진행을 안 하고 있으니까 법사위에서 이 관봉권 떠지와 관련해서 어떤 국민적 의혹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 대리인 국회의원, 법사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 됩니다, 국민을 대표해서요. 왜 이 떠지가 없어졌는지, 관봉권 수사가 왜 은폐되고 있는지를 국민의 대표니까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너무 궁금하잖아요.

아니, 이게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지 모든 질문을…… 수사가 성역입니까? 검찰이 무슨 성역이에요? 검찰이 성역이면 지금 검찰이 잘하고 있습니까? 저런 검찰에 수사권을 줘야 됩니까? 수사를 저따위, 저 모양으로 하고 있는데 어떻게 수사권

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수사를 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검찰개혁을 위해서 관봉권 떠지 수사가 왜 은폐되고 검찰이 조직적으로 이 수사를 어떻게 은폐하고 있는지 수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수사를 하기 전에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수사를 할 사안인지 아닌지. 그렇기 때문에 청문회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검찰개혁 과정에서 공소청법과 수사청법, 수사절차법, 형사소송법에 검찰의 수사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국회에서 심의, 논의를 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관봉권 떠지 사건 때문에라도요.

그런데 이 관봉권 떠지 관련해서 입법청문회, 검찰개혁 청문회를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나오셔 가지고 협조 안 하시고 논의도 제대로 안 하시면서 계속해서 빼쓰기 하고 계시는 거예요. 토론을 제대로 해 주세요.

그런데 이 와중에 지난번에는 나경원 위원님께서 오셔 가지고 ‘초선은 가만히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막말을 하시더니 오늘은 또 신동욱 위원님께서 ‘저런 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 요구합니다.

그리고 왜, 국민의힘은 조직문화입니까? 반말하고 막말하고 그리고 자기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막 함부로 말하고 이렇게 말하는 게 거기 조직문화예요? 검찰과 같이 몰락하세요, 검찰 조직문화하고 비슷하신 것 같은데.

저는 검찰개혁 국면에서 이 떠지 관봉권 수사가 어떻게 은폐되고 검찰이 심우정 검찰총장을 비롯해서 어떻게 이것을 조직적으로 은폐했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국민적 의혹을 규명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법사위에서 그것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진우 위원 반대토론하겠습니다.

○김기표 위원 토론 종결해 주십시오.

○주진우 위원 반대토론 먼저 신청했어요.

○김용민 위원 토론 종결해 주십시오.

○신동욱 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조금 전에 제 발언 1분 29초 남아 있었는데 왜 끊으신 거예요, 그거는?

○위원장 추미애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는 김기표 위원님 등으로부터 토론을 종결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나경원 위원 반대토론하게 해 주세요. 반대토론이 먼저 있었습니다. 반대토론하게 해 주세요, 주진우 위원한테.

○주진우 위원 반대토론을 먼저 신청했습니다, 토론 종결보다. 반대토론을 먼저 신청했어요.

○위원장 추미애 해당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나경원 위원 반대토론 먼저 신청했습니다. 반대토론 먼저 하게 해 주세요. 주진우 위원님 발언권을 왜 막으십니까?

○주진우 위원 이게 무슨 토론회예요? 이것도 열면 토론입니까?

○곽규택 위원 반대토론도 없이 무슨 토론 종결을 합니까?

○나경원 위원 반대토론하게 해 주십시오.

○주진우 위원 반대토론 한 명 하는 게 열띤 토론이에요?

(장내 소란)

○위원장 추미애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토론 종결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국회법에 따라 토론을 하지 않고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5인 중 찬성 10인, 반대 2인, 기권 3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 종결 동의가 가결되었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서류제출요구의 건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어요」 하는 위원 있음)

○주진우 위원 토론시켜 주세요.

○나경원 위원 토론하게 해 주세요.

○위원장 추미애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5인 중 찬성 10인, 반대 5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곽규택 위원 아니, 토론하면 찬반토론을 하고 종결을 해야지 찬성토론만 두 명 시키고 토론 종결하는 게 어디 있어요, 지금?

○위원장 추미애 제3항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서, 이 안건은 조금 전 채택된 청문회 실시계획서에 따라 9월 22일에 실시되는 청문회에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신청해 주신 증인 및 참고인의 구체적인 명단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우 위원 이것도 한 명만 토론하나요?

○위원장 추미애 이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주진우 위원 토론하겠습니다.

○나경원 위원 신상발언도 좀 주십시오, 신상발언. 아니, 지금 모든 위원들이 저를 욕하고 있는데, 모욕하고 명예훼손하는데 신상발언 주십시오.

○위원장 추미애 그러면 주진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우 위원 아니, 무슨 열띤 토론이라고 하면서 토론회 하면서 매번 한 명씩만 주는 이런 토론도 있습니까? 이건 국회를 떠나서 어떤 토론회도 이렇게 운영되는 법 없고요 어떤 위원회도 이렇게 운영되는 법이 없습니다. 아니, 정청래 위원장보다 더 심하잖아요. 이거는 너무 과도하고요.

○서영교 위원 안건 토론이나 하세요. 그런 식으로 하니까 발언권을 안 주는 거야.

○주진우 위원 아니, 안건 토론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발언권을 제한하고 다 끼어들고 한쪽만 경고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저번 소위에서 청문회라고 하면서 이렇게 부른 것 제가 봤어요. 거기 짧은 여자 수사관들을 조리돌림하는 것 제가 봤습니다. 그 짧은 여자 수사관들은 격무에 시달리면서 업무에 미숙할 수 있지요. 보통은 관봉 띠지라는 것은 정보가 한정적이에요. 날짜 정도밖에 확인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관봉 띠지가 만약에 그렇게 정보가 많다면 김정숙 여사가 관봉 띠지로…… 옷 사고 한 것 왜 무혐의 났습니까?

○서영교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를 봐요, 이거를.

○주진우 위원 어느 은행인지 어느 정보가 다 확실하다 그러면 김정숙 여사와 관련된 사건에서 다 기소가 됐겠지요.

그리고 이 짧은 여 수사관들이 실수한 것 가지고 이걸 음모론처럼 몰아가는 것에 대해서 저는 진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잘못에는 뭔가 동기가 있어야 돼요. 이 여 수사관들이 무슨 동기가 있어서 이것을 일부로 없앨까요? 없앤다면 사진까지 없애야 맞는 거지요. 사진은 그대로 남아 있는데……

○박은정 위원 위에서 했겠지요, 위에서.

○주진우 위원 사진에 그대로 남아 있어서 거기 지금 사진 훼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진까지 훼들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띠지만 없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나요?

통상 보통 사건에서 압수물이 됐을 때 현금이 얼만지 세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번 띠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했을 때 보관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그 여 수사관들이 그 업무를 맡은 지 몇 년 되지 않다 보니까 업무에, 격무에 시달리고 제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숙지를 못 해서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이게 무슨 동기가 있습니까? 진짜로 국회의원 정도하시는 분들이 이게 정말로 누군가 조직적으로 지시해서 이런 실수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상식적인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국회가 나서서 이것 수사하자는 것 넘어서서 이재명 대통령도 직접 나서서 수사를 얘기했어요. 특검 사안이라는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이것 매우 잘못된 거예요. 삼권분립이나 수사의 중립이나 독립에 있어 가지고 국회도 끼어들면 안 되지만 대통령은 더더욱 안 됩니다. 대통령이 특검의 임명권자잖아요. 대통령이 특검과 관련된 수사에 대해서 배 놔라 감 놔라 하면 그게 무슨 수사입니까? 공산당에

서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보통 대통령이 수사에 관해서 원칙적인 답변만 하지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게 원칙이지. 어떤 사건은 특검이 수사하고 배당도 그러면 대통령이 하는 겁니까?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랑 한미정상회담하면서 특검 이슈 나왔어요. 그런데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국회가 특검을 임명해 가지고 특검과 관련해서는 ‘저는 관여된 바가 없습니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양해해서 넘어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했을 뿐만 아니라 특검의 사건 배당까지 지금 언급하고 있는데 그것은, 대한민국의 국격이 있는데 한미정상회담 그 자리에서 대통령이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저는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고……

○박은정 위원 뭐가 사실과 다릅니까?

○주진우 위원 아니, 특검이 국회가 임명하는 데예요? 그리고 관여 안 한다고 했는데 왜 이 관봉권 떠지 사건을 특검 사안이라고 찍어서 얘기합니까? 저는 그게 잘못됐다는 거고요.

상식선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사진을 다 찍어 놓고, 거기 관봉권 떠지 관련된 정보 그 사진에 다 남아 있잖아요. 그 사진 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것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서영교 위원 사진은 제보된 거지. 사진이 제보된 거예요.

○주진우 위원 그런데 그 사진의 원본이…… 아니, 그 사진이 찍혀 있으면 그게 증거가 되는 거지요.

○서영교 위원 이것도 없애려 그랬는데 제보된 거지. 증거가 남았지.

○이성윤 위원 증거능력이 없어집니다. 없어지면 어떻게 사본 가지고 증거능력이 생겨요? 떠지 수사 해 봤어요?

○서영교 위원 없애 보려 그랬는데 못 없앴지.

○신동욱 위원 끼어들지 마세요. 들어 봅시다.

○주진우 위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아니, 여자 수사관들 그때 증인하는 것 봤어요. 그 짚은 여성 수사관들이…… 아니, 본인들은 자녀 없습니까? 가족 없어요? 그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분들이 잘못했으면 징계나 수사를 통해서 법적으로 밝혀져야 되는 것이지 국회의원들이 권한을 남용해서 이 많은 국회의원들이 힘자랑하면서 그 짚은 수사관들 조리돌림하는 게 그게 똑바로 된 겁니까? 그것 그렇게 해 가지고 진짜 정말 부끄러워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법사위에서 청문회를 하는 과정에 그 짚은 수사관들 실수한 것을 징계절차를 통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불러서 공개 망신 주고 이런 식으로 법사위를 운영해서는 절대 안 되고요.

이게 검찰청 해체랑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이것 하나 때문에 해체해야 되는 건가요? 이것 가지고 하는 거 저는 매우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추미애 또 김용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민 위원 떠지 사건이 지난 금요일 날 청문회를 통해서 정말 온 국민이 충격받았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고, 당시 나왔던 백해룡 경정, 경찰이지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는 압수목록을 조작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까지 하시고 ‘이렇게 수사하는 사람들이 검사냐?’라고까지 그 자리에서 옆에 앉아 있는

데 호통을 칠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로 사실 이 사건 하나만으로 검찰청 진짜 문 닫아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국민들께서 크게 분노하고 있어요. 그러니 검찰개혁에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사건이라 저희가 청문회를 추가로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젊은 여직원들, 수사관들, 위원들이 조리돌림 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그것 매우 부적절한 발언입니다. 당시에 그 여직원이 쓴 메모를 못 보셨습니까? 그 메모가 국회에서 청문회 하는데 국회의원들을 향해서 그리고 그 것은 국민을 향해서 욕설한 것 아닌가요? 그것을 지적한 게 잘못된 겁니까? 그 자리에 없어서 지적할 시간이 없었겠지요. 그래서 지금 편드는 것도 적당히 편들어야 되고 막으려고 하는 것도 적당히 막아야지.

이미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예요. 그러면 어떻게 검찰개혁을 할 것인가, 다양한 검찰권 남용의 사례들을 우리가 확인해 봐야 검찰개혁을 다시 어떻게 하고 앞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어떻게 국가가 재설계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건을 들여다보는 청문회는 검찰개혁에 있어서 매우 큰 의미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지난 금요일 청문회가 그것을 여실히 보여 줬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 이런 얘기를 하시네요. ‘특검에 대해서 대통령이 수사에 관여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통령께서는 떠지 사건 관련해서 법무부장관에게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그게 어느 특검에 넣어라 마라도 아니고.

이게 검찰 내에서 내부적으로 수사가 안 되고 지금 꼬리 자르기 하려고 하는 게 눈에 너무 보이고, 게다가 검찰은 수사권조차 없습니다. 그러니 공정하게 수사하려면 사실 특검에서 수사하는 게 맞지요. 이게 만약에 경찰에서 수사한다고 해 봐요. 검사들이 영장 또 다 기각할 것 아닙니까, 기존에 늘 하던 대로. 검사와 관련된 영장은 절대 발부할 수 없다, 이게 검찰의 제1원칙 아닌가요? 또 그게 반복될 것 같으니 이번에는 적어도 공정한 수사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결과를 국민들께서 수긍하실 수 있게 그런 절차, 과정을 잘 관리해 봄이라는 지시인 것이지요. 이것을 그렇게 또 왜곡하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하나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간사 선임을 요구하시면서 모든 절차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신데, 간사 선임 표결하면 자신 있습니까? 한번 표결해 볼까요? 표결하면 통과시킬 자신 있습니까? 게다가 부결되면 어떡할 겁니까? 부결되면 일사부재의 때문에 정기 국회 내내 간사 선임 불가능할 겁니다. 그래도 표결 한번 강행해 볼까요? 자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사과하시라고. 사과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마음을 돌려 보세요. 그런 노력을 하나도 하지 않고 ‘간사 선임하지 않고 있다. 간사 선임 상정해 달라’ 그 얘기 하시는데요. 간사 선임 상정하면 저는 부결될 거라고 봅니다. 자신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논의보다는 건설적인 논의 하시고 빨리 사과부터 하시는 게 법사위를…… 국민의힘 위원들께서도 국민의힘 위원들이 얘기하시는 정상적인 절차로 하루빨리 돌리는 게 사과부터 하는 겁니다. 저희가 불필요한 입씨름을 할 필요 없잖아요.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청문회는 반드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

까도 잠깐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증인과 참고인 관련해서 여야 간에 협의절차를 거쳤으나 협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저희 협의절차 거친 것을 참고해서 증인과 참고인에 대해서 확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석준 위원 저 토론 신청입니다.

○나경원 위원 신상발언 주십시오, 신상발언.

○위원장 추미애 신상발언은 나중에 대체토론하실 때 하시고요. 지금은 이 의제에 관해서……

○나경원 위원 아니, 신상발언을…… 지금 계속 내란, 내란 종범이라 그리고 하는데.

○위원장 추미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하시겠다고 해서 제가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송석준 위원 안건 토론 신청.

○김기표 위원 의제 자체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데 토론하는 게 의미 없습니다. 토론 종결해 주십시오.

○위원장 추미애 조배숙 위원님, 신상발언 말고 의제에 관련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발언은 나중에 다른 기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진우 위원 이게 말이 되나요?

○위원장 추미애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우 위원 이 증인·참고인 관련돼서 지금 안건 받았으니까 다시 토론해야 돼요.

○송석준 위원 저는 준비됐거든요. 토론 신청, 송석준.

○위원장 추미애 그러면 제가 조배숙 위원님한테 드렸는데 안 하시겠습니까, 지금?

○조배숙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추미애 위원장의 진행에 귀 기울이셔야 됩니다.

○조배숙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니, 지금 갑자기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해 가지고 이것은 뭐고 이것은 뭐니까? 이게 다른 게 2개가 왔는데요.

잠깐만 좀 스톱해 주세요.

노란색과 분홍색 이게 왔는데 지금 어떤 걸 얘기하시는 겁니까?

○김용민 위원 방금 나눠 드린 걸 보셔야지요.

○위원장 추미애 마지막에 나눠 드린 것.

○나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근거로 이렇게 정리를 하셨냐는 거예요.

○조배숙 위원 그런 것이 지금 상정된 거라는 겁니까?

○주진우 위원 이것은 간사 협의도 없이 왜 이렇게 다 뺏어요, 증인들을? 간사 협의 없이 어떻게 다 뺏어요? 위원장실에서 마음대로 정해요?

○나경원 위원 무슨 근거로 했다는 겁니까? 무슨 근거로 한다는 거예요.

○김용민 위원 협의는 했고, 위원장실에서 정리를 하는 거지요.

○나경원 위원 무슨 근거로 한 겁니까, 이게?

○김용민 위원 위원장실에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나경원 위원 위원장실에서 마음대로 정리하는 겁니까? 간사 간 협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김용민 위원 협의했어요.

○위원장 추미애 발언을 계속 이어 가세요, 나중에 답변을 드릴 테니까.

○조배숙 위원 잠깐만요. 제가 하겠습니다.

22일 날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인데 저희도 이렇게 신청을 했어요. 맨 처음에 노란 저기로 나왔는데, 그러면 저희가 결정하려면 이걸 놓고 논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야 되지, 지금 갑자기 우리 당 신청은 거의 다 뺀 이걸 가지고 이게 안전이라고 한다면 저희는 여기에 동의할 수가 없지요.

왜냐면 지금 우리도 신청을 했고 저쪽도 신청을 했고 처음의 노란 띠지가 있는 이 서류에서 다 같이 논의가 돼야 되는데, 저는 이런 부분이 추미애 위원장님께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일방적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상임위원장은 민주당 당적이시지만 그래도 우리 국민의 힘도 있고, 공정한 입장에서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 일언반구 말도 없이 이렇게 줄여 가지고 이걸 내놓으시면 아니신 것 같고요. 저는 논의를 한다고 하면 이 노란색 띠지에 있는 이걸 가지고 하나하나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아까 안전조정위원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발언할 기회를 안 주시니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회법 57조의2 5항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정위원은 위원장이 소속 위원 중에서 간사와 협의하여 선임하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현재 간사가 선임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간사를 선임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간사가 없기 때문에 일일이 접촉을 했다, 그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되고.

그리고 또 안전조정위원으로 저희들한테 어떤 상의 없이, 제가 알기로는 송석준 위원님과 박준태 위원을 선임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들한테 통지도 안 갔어요. 안 갔고, 지금 그런 상황에서 안전조정위원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권한쟁의심판을 신청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간사와 협의하게 돼 있고 지금 간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간사가 없기 때문에 일일이 다 협의를 했으니까 그것으로 갈음한다고 했는데 이 규정상, 문언상 이걸 이렇게 해석하면 맞지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간사 선임의 건에 대해서 자꾸 내란이니 뭐니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법사위는 좀 뭔가 다른 위원회하고 다르게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정당한, 다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그런 판단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계엄은 대통령의 비상대권입니다. 그런데 이 계엄이 합당한가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게 어긋났기 때문에 결국 탄핵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내란이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이론이 있습니다. 분명히 학자들은 이 계엄 문제가 곧바로 내란으로 연결될 수는 없다는 것이 다수설입니다.

그리고 또 법사위는……

○박균택 위원 이것을 내란이라고 안 하시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이성윤 위원 이게 내란이 아니면 뭐가 내란이에요?

○**신동욱 위원** 아니, 그건 민주당 생각이고요.

가만히 좀 계세요. 들어 보세요.

○**조배숙 위원** 잠깐만, 제가 얘기 중입니다. 발언하지 마세요. 방해하지 마세요.

○**박균택 위원** 그러면 아직도 내란이 아니다 이 말입니까?

○**조배숙 위원** 법사위는 법률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또 법적인 상식이 있어야 됩니다.

○**박균택 위원** 그건 피고인의 절차적 권리지, 이걸 어떻게 내란이 아니라고 하십니까?

○**김용민 위원** 나중에 책임지세요!

○**조배숙 위원** 여러분, 그러면 왜 재판을 합니까! 지금 대법원에 왜 재판을 합니까?

○**박균택 위원** 그것은 피고인의 절차적 권리에 불과합니다! 내란을 내란이라고 해야지. 그건 반상식입니다. 언어도단이에요!

○**조배숙 위원** 무슨, 그 결론은 어떻게 나올지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법원에서 어떤 판단이 나올지 모르니까 특별재판부 만들자는 것 아닙니까?

○**나경원 위원** 법원에서 재판하는 것 기다려 보세요.

○**박균택 위원** 그 결론을 모릅니까?

○**조배숙 위원** 그리고 또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왜 탄핵소추했을 때 내란을 뺐습니까? 왜 내란 뺄 때 국회의 동의도 안 받았습니까?

○**박균택 위원** 아니, 정말 부끄러운 말씀 그만하십시오.

○**나경원 위원** 그것 내란 유지 안 나올까 봐 당신들 내란 특별재판부 만들자는 것 아니에요.

○**김기표 위원** 그런 인식 가지고는 국민의힘은 미래가 없습니다, 미래가!

○**조배숙 위원**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은…… 이번에 대선이 있었습니다.

○**박균택 위원** 내란을 내란이라고 못 하다니, 어떻게 해? 그러고서 정치를 하십니까?

○**조배숙 위원** 대선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문수 후보가 41% 얻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49% 얻었습니다.

○**송석준 위원** 여기는 법사위원장이지 선전선동의 장이 아닙니다.

○**박은정 위원** 그러니까 내란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동욱 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요.

○**조배숙 위원** 여러분,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박균택 위원** 내란은 범죄자의 절차적 권리지 정치인이 그것을, 내란을 부정하면 어떻게 합니까!

○**신동욱 위원** 그렇게 생각하는 건 자유지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어떻게 무죄 추정을 모릅니까, 법조인들이.

○**조배숙 위원** 그러면 우리 당에서 간사를 추천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김용민 위원** 책임지세요, 거기!

○**박균택 위원** 그건 피고인이 법정에서 주장하는 권리지 위원님이 하실 말씀은 아닌

것입니다.

○김용민 위원 책임지세요, 그 말씀에. 책임져!

○최혁진 위원 그래서 정당 해산해야 돼요, 정당 해산.

○조배숙 위원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41%의 국민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측 주장하고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추미애 발언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배숙 위원 그래서 저는 나경원 위원 간사 선임에 대해서 민주당이 ‘표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무 힘자랑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것은 우리 당에서 추천하는 것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김용민 위원 사과부터 하세요, 사과부터.

○서영교 위원 그렇게 하니까 못 벗어나는 거예요, 내란당을. 정리할 건 정리하셔야지, 이제.

○조배숙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균택 위원 피고인의 변호인이 법정에서나 하는 얘기지요.

○위원장 추미애 우선 계속해서 안건조정위원회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는데요. 바로 조배숙 위원님이 인용하신 그 조항에 의하면 위원장이 소속 위원 중에 간사와 협의해 선임하도록 돼 있는 것 맞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 김용민 간사가 국민의 힘당에 간사가 없기 때문에 위원님 전체를 대상으로 위원 추천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그걸 제가 확인한 바 있고요.

○송석준 위원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린 받은 적이 없어요.

○위원장 추미애 또한 안건조정위원회의 추천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이 선정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추천을 했고요. 그래서 법사위 행정실에서는 안건조정위원회 위원 선임 사실의 공문을 보내 드린 바 있습니다. 정확하게 오후, 여기 시간까지 명기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9월 4일 19시 15분에 전자메일로 선정되신 해당 위원님들께 위원장의 명에 따라서 관련 공문을 보내 드린 바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헌법은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본질적 침해에 대해서는 관용하지 않습니다. 군을 동원하여 시민과 맞서게 하고 헌법기관인 국회를 침탈한 것 그리고 계엄해제 권한을 막으려고 군을 동원한 것, 그것도 특전사를 동원한 것 자체가 명백하게 내란이라는 것은 온 국민이 지켜보았습니다.

○신동욱 위원 지금 이 진행이 내란보다 더한 거예요. 이 진행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반하는 것, 추미애 위원장의 진행이 바로 내란이에요.

○김용민 위원 그게 말이 되냐고요.

○신동욱 위원 왜 말이 안 돼요? 국회 권한을 이렇게 침탈하는 게 내란 아닙니까? 이렇게 침탈되는 것, 이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탈하는 거예요, 위원장님.

○나경원 위원 이 진행이 내란보다 더합니다.

아니, 위원들의 권한을 이렇게 침탈할 수 있습니까? 야당의 간사는 야당의 협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당연히 선출해 줘야 됩니다.

○위원장 추미애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경원 위원 주진우 위원을 왜 제1소위에 배치를 안 합니까? 이것도 국회법 48조하고 67조에 명백히 반합니다. 위원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니, 국회법 48조 보세요, 48조.

(장내 소란)

○위원장 추미애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윤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주진우 위원 아니, 왜…… 우리 당 차례에 왜 그렇게 해요?

○신동욱 위원 아니, 순서를 왜 일방적으로, 우리 당 차례 발언을 안 주는 거예요?

○서영교 위원 지금 조배숙 위원 했잖아요.

○이성윤 위원 그만 들어 보세요. 조배숙 위원 했으니까 저도 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아니, 이 사람들이 순서도 잘 몰라. 조배숙 위원 했으니까 우리 당이 하지.

○이성윤 위원 어제 본회의에서 정청래 대표님의 연설이 있었습니다. 그때 연설 도중에 정청래 대표께서 노상원 수첩을 언급하면서 ‘노상원 수첩이 현실로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정청래 대표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그런데 의장석에서 봤을 때 왼쪽에 있는 분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았을 걸’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사람이 할 말입니까? 오늘 누가 말했는지 밝혀졌어요. 정말 반성하십시오. 정말 내란당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발언을 한 거예요.

며칠 전에 여야 대표가 만나서 대화도 하고 민생협의체도 꾸리고, 국민을 위해서 이제 좀 해 보자라고 했는데 겨우 이를 만에 본회의장에서 죽기를 바란다고요? 노상원 수첩이 현실이었으면 좋았을 걸? 이러니까 내란당이라는 말을 듣는 거예요.

나경원 위원님, 제가 말씀드렸지요, 저한테 반말 쓰신 것 사과하시라고. 그리고 초선 의원은 가만히 있으라고 말한 거, 말씀하신 거 사과하시라고 말씀드렸지요. 왜 지금까지 사과를 안 하십니까?

○나경원 위원 저 신상발언 주십시오.

○이성윤 위원 나경원 위원님, 제가 말씀했지요? 그래서 저한테 그랬지요. ‘저한테 반말 한 건 사과하겠다’. 그렇지만 ‘초선은 가만히 앉아 있어라’ 이런 말씀, 사과 지금까지 안 했어요. 저는 나경원 위원님에게 간사는커녕 법사위원 자격도 없다고 생각해요. 왜 여기 왔느냐? 나경원 위원 다음 주에 재판 있지요. 또 특검 수사 앞두고 있지요. 이걸 피하기 위해서 오신 걸로 사람들이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위원 신상발언 주십시오, 신상발언.

○이성윤 위원 신상발언은 무슨 신상발언하세요? 사과는 하시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나경원 위원 아무 말이나 하지 마세요.

○송석준 위원 발언 주의하세요.

○이성윤 위원 초선은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부족합니까!

○나경원 위원 신상발언 주십시오.

○이성윤 위원 나경원 위원님, 사과부터 하시고 발언하시고 신상발언하십시오.

○송석준 위원 위원장님, 지금 발언이 무슨 발언이에요, 이것? 의사진행발언이에요? 상

대 당 위원님 가지고 질의하시는 거예요?

○나경원 위원 신상발언 주십시오.

○이성윤 위원 당대표가 연설하는데 ‘노상원 수첩처럼 수거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발언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같은 의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의원들하고 같이 하늘을 이고 살 수 있습니까? 이걸 한자어로 불구대천의 원수라고 그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을 함부로 해 가지고……

○송석준 위원 그런 말을 언급한 당대표는 더 자격이 없어요.

○이성윤 위원 오늘 밝혀졌어요. 발언자가 밝혀졌다고요.

○송석준 위원 아니, 내란 청산이라는 말을 당대표 교섭단체대표연설에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상대방 당에 대해서 청산하겠다고 하는 게 정상적인 대표연설이에요? 그렇게 무능하고 그렇게 과격한 발언 안 되지요.

○이성윤 위원 노상원 수첩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됐다면 대통령도 안 됐을 것이고 정 청래 대표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 이렇게 말하자 국힘 쪽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렇게 됐으면 좋았을 걸’. 반성하세요. 이런 말씀 하신 분들이에요. 누군지 찾아보세요.

○나경원 위원 민주당이 너무 일방적으로 의회독재 하니까 그렇지요, 의회독재를 하니까.

○장경태 위원 아니, 그 정도면 살해 예비·음모 아니에요, 살해 예비·음모?

○송석준 위원 내란 청산하는 게 더 무서운 말 아닙니까?

○이성윤 위원 살인예비·음모죄, 살인죄 주술을 부린 팀들하고 어떻게 같이 근무를 합니까? 어떻게 같이 국정을 논하겠어요! 제발 좀 부끄러워하세요!

○장경태 위원 살인 예비·음모잖아요, 완전.

○송석준 위원 어떤 게 더 무서운 말입니까? 내란 정당이 더 무서운 겁니까, 애드리브가 더 무서운 겁니까?

○이성윤 위원 그만 좀 말씀하시고, 송석준 위원님도 가서 원내대표님께 사과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오늘 법사위 간사로 내정되신 분 취소하세요. 그리고 좋은 분 내정해 가지고 법사위에 오게 하세요.

○송석준 위원 정 대표님한테 가서 먼저 사과하라고 그러세요. 정 대표님한테 정중하게 사과 요청하세요. 그러면 우리도 한번 검토해 볼게요.

○이성윤 위원 정말 저 부끄러워요. 부끄러워하세요. 정말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송석준 위원 국민들 앞에 마이크 켜진 상태에서 노골적으로 제1당을 상대로, 우리 야당을 상대로 내란 청산하겠다, 말이 안 되잖아요.

○나경원 위원 신상발언 주십시오.

○장경태 위원 다 죽었으면 좋았겠다는 말을 야당 원내대표가 할 수 있는 말이 됩니까? 다 죽었으면 좋겠다, 국민이 죽고 국회의원들이 죽고 대통령이 죽었으면 좋았겠다라는 말을 야당 원내대표가 하는 게 말이 돼요?

○송석준 위원 그런 애드리브로 한 얘기 가지고 그건 사과하라 그러고 온 국민들 앞에서 제1야당을 향해서 청산하겠다고 하면 이게 소위 여당 대표의 자격 있는 모습입니까?

○이성윤 위원 어떻게 야당 원내대표가 연설하는 당대표에게 ‘다 죽었으면 좋았을 걸’

이런 말을 합니까?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이 할 얘기예요? 부끄러워해야지. 국민들이 다 아는 겁니다.

○최혁진 위원 사람을 죽이겠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내란이 아니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말이 되냐고요!

○송석준 위원 아직도 야당 야당 하시니까, 그 행패를 부리면 국민들이 어떻게 민주당을 신뢰하겠어요? 예의를 지키셔야지, 예의를.

○박균택 위원 위원장님, 토론 종결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나경원 위원 신상발언 주십시오.

○신동욱 위원 위원장님, 신상발언 한번 주세요.

○장경태 위원 여기가 나경원 위원의 신상발언위원회가 아닙니다. 신상발언위원회가 아니고 법제사법위원회기 때문에 빨리 의사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기자회견장에 가서 하셔도 되잖아요. 소통관 가서 하세요.

○송석준 위원 신상발언을 주셔야지. 벌써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신동욱 위원 한 번은 신상발언을 주셔야지, 이렇게 많이 언급이 됐는데. 이렇게 많이 언급이 됐는데 어떻게 신상발언을 안 줍니까?

○장경태 위원 왜 자꾸 면책특권 활용해서 신상발언합니까? 면책특권 활용하려고 지금 상임위원장에서 신상발언하시니까……

○나경원 위원 지금 면책특권 활용해서 아무 말이나 하는 아무 말 대잔치를 하잖아요.

○장경태 위원 소통관에 가서 하세요. 소통관에 가서 공소취소를 하셨는지 어쨌는지 말씀하세요.

○나경원 위원 장경태 위원하고 상대하고 싶지 않은데, 면책특권 활용해서 아무 말들이나 하지 마세요.

○송석준 위원 박범계 의원님도 생각해 보세요. 더 심했어요. 법무부장관까지 하셨어요, 법무부장관까지.

○박은정 위원 아무 말은 그쪽에서 하잖아요.

○장경태 위원 의사진행발언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서로. 서로에게 의사진행발언 안 하는 게 낫지요.

○위원장 추미애 그러면 아까 조배숙 위원님으로부터 증인 명단에 대해서 의견 제시가 있었기 때문에 김용민 위원님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민 위원 아까 설명을 드리기는 했는데요 처음 배포했던 증인·참고인 명단은 각 당에서 신청한 증인들과 참고인을 망라한 명단이었고요. 그래서 처음 배포한 명단과 관련해서 제가 국민의힘 위원들과 협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협의가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협의는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조배숙 위원 언제 협의했어요?

○김용민 위원 아까 협의했습니다. 아까 찾아가서 저희 협의했지 않습니까?

○조배숙 위원 누구랑?

○신동욱 위원 누구랑요?

○김용민 위원 관봉권 떠지 사건으로 한정해서 우리가 진행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협의를 했는데……

○나경원 위원 통보지요, 통보.

○조배숙 위원 우리 건 얘기 안 했잖아요.

○김용민 위원 협의는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신동욱 위원 협의를 언제 했냐고요? 앞으로 우리 회의실에 못 들어오게 합니다, 왔다 간 것 가지고 협의했다고 그러면.

○김용민 위원 그래서 위원장님께 협의를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번 청문회가 관봉권 떠지 사건을 중점적으로 진행하는 청문회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위원장님께서 저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참고하셔서 증인과 참고인 명단을 확정해 주시고 그걸 가지고 저희가 표결을 하면, 의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두 번째, 지금 마지막으로 나눠 주신 이 명단이 저희의 협의 결과를 참고해서 확정한 명단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고 이 명단에 대해서 저희가 의결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명단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 위원 거짓말하면 어떻게 해요? 협의를 언제 했다고? 협의를 언제 했냐고요?

○나경원 위원 언제 협의를 했습니까?

○김용민 위원 아까 제가 찾아가서 협의했지요. 이 명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욱 위원 아니요, 저희는 증인에 대해서 협의를 받은 바가 없어요.

○송석준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안건이 2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당 의견이 반영된 걸로 가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안건 만들어 놓고 이것도 버리겠다는 거예요?

○신동욱 위원 왔다 가면 협의한 거예요, 이게?

○위원장 추미애 조금 전에 박군택 위원님으로부터 토론을 종결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해당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장내 소란)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군택 위원님 등 찬성하는 위원님들이 계시므로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토론 종결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국회법에 따라 토론을 하지 않고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준 위원 손 들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너무들 심하네요, 너무들 심해.

○장경태 위원 기권도 자유의사지요.

○나경원 위원 이게 회의입니까?

○박은정 위원 회의에 좀 참여하세요, 회의에 좀.

○**송석준 위원** 아니, 여당이 되셨으면 좀 태도가 변해야지요.

○**위원장 추미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5인 중 찬성 10인, 기권 5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 종결동의가 가결되었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은 다시 배부해 드린 명단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송석준 위원** 이렇게 운영하시면 안 됩니다.

○**나경원 위원** 이의 있습니다.

○**장경태 위원** 아니, 회의를 6시간씩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저희 법사위밖에 없지.

○**송석준 위원** 이렇게 안건 만들어 놓고 이걸 왜 버리고 일방적인 안을 또 올립니까? 국민들께서 보고 계시잖아요, 이 2개를. 이러시면 안 되지요.

○**박은정 위원** 지금 계획서 진행하는 데 이렇게 시간이 걸릴 일이에요?

○**장경태 위원** 안건 3개 가지고 2시간 동안 회의하고 있어, 2시간 동안.

○**위원장 추미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5인 중 찬성 10인, 반대 5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증인 및 참고인 명단은 끝에 실음)

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33)

5. 장애인평생교육법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64)

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48)

7.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05)

8.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59)

9.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07)

1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55)

1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1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13.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1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15시38분)

○**위원장 추미애** 다음 순서는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4항까지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하는 것입니다.

교육위 소관 의사일정 제4항부터 14항까지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이은정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정**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4항까지 교육위원회 소관 11건의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법률안에 대한 수정의견은 교육부와 협의하여 제시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제5항 장애인평생교육법안은 교육부장관이 5년마다 장애인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연도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장애인평생교육 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시도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등의 설치, 장애인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장애인평생교육사 자격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3호가목에서는 이 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유형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안 제18조, 안 제19조, 안 제31조 등에서는 등록에 관한 사항 외에 인가 또는 신고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 전체 체계를 고려하여 등록에 관한 사항만 두는 것으로 법문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안 제18조제3항에서는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변경등록 또는 폐쇄신고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음에도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변경등록 또는 폐쇄신고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어떠한 경우에 변경등록 또는 폐쇄신고 의무가 발생하는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의무규정 및 그 위반에 따른 제재조치 사항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제6항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공립 대안학교에 학교회계를 설치하고 대안학교가 교육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나 학교운영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예산결산 및 회계업무 처리에 교육정보시스템을 반드시 이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미 학교보건법 제7조의3에 따라 건강검사 기록의 작성·관리 의무학교에 대안학교가 포함되어 있고 일부 건강검사 기록은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있고 개정안에 따르면 이 법에서도 대안학교의 정보시스템 이용을 규정하게 되므로 학생 관련 자료의 제삼자 제공을 제한하는 제30조의6이 대안학교에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제8항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경우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을 두고 있음에도 국가상훈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들도 국가상훈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4페이지, 제9항입니다.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미 조성된 학교 내 시설을 건축하려는 경우 건축허가에 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특례를 규정하여 사업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내용입니다.

다.

개정안은 급식시설 건축 등 개발제한구역 내 학교시설사업의 추가적인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학교환경 개선과 학교교육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만 개정안과 같이 특별조치법의 예외 조항을 개별 법률에 두는 것은 예외에 대한 예외를 또 두는 것으로 법률 체계정당성의 원리에 저촉된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참고로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행위는 원칙 금지, 예외 허용이라는 취지에 따라 개발제한구역법에서 총괄·관리되어야 하고 개별시설의 개발행위는 개별 법령에서 예외적으로 허용·의제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제11항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재해유족급여에 대하여 유족 중 자녀와 손자녀의 연령 기준을 현행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수급권자에 대하여 양육비 채권이 있는 경우 급여를 받을 권리를 암류의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40조제1항제3호와 관련하여 민사집행법은 연금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암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에는 이러한 제한이 없어 양육비 채권을 원인으로 연금인 급여채권 전액에 대해서 암류가 가능한지에 대해 해석상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연금법 규정과 같이 민사집행법에 따른 암류금액의 제한이 있음을 명시하는 것으로 교육부와 협의하는 한편,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준용하는 재해 관련 급여에 대해서는 개정안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교육부 및 인사혁신처와 협의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의 해산 시 잔여재산 처리의 특례와 목적사업 변경 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7페이지 하단입니다.

개정안에서는 거짓 또는 허위로 해산인가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거짓과 허위는 동일한 의미고 잔여재산 처분 특례의 주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잔여재산처분계획서를 해산인가신청서와 함께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처벌 대상자를 ‘해산인가신청서(잔여재산처분 계획서를 포함한다)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로 명확히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광주광역시는 개정안에서 목적사업의 변경·추가 인가 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일반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인가만을 받도록 하는 것에 비해 규제가 강화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사립유치원 폐쇄 시 학부모에게 미리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에서 학부모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정의규

정의 보호자로 대체하는 수정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7항, 제14항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의사일정 제10항은 체계·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추미애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서 최은옥 교육부장관직무대행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체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시간은 5분씩으로 하겠습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 대체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경원 위원 일단 신상발언을 주시기로 했으니까 신상발언 주십시오.

○위원장 추미애 대체토론 먼저 하시고 적당히 보셔서 나중에 발언하십시오.

○나경원 위원 아니, 왜냐하면 저를 명예훼손하거나 모욕한 발언을 했기 때문에 먼저 주십시오. 시간을 먼저 주십시오. 아니, 지금 국회방송……

○위원장 추미애 김기표 위원님 손 드셨지요?

발언하십시오.

○김기표 위원 경기도 부천시을 김기표입니다.

전문위원께서 3페이지에서 아주 적절하게 지적을 하신 내용인데요 조금 수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개정안에 따르면 대안학교가 교육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요. 동법 60조의3 제1항에 의하면 대안학교에는 동법 제30조의6 적용이 배제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30조의6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제60조의3 뒤에 보면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9조 및 제30조의4부터 제30조의7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29조, 제30조의4, 제30조의5 및 제30조의7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해서 제30조의6은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을 바꾸는 것이 옳을 것 같고요.

대행님, 그것은 동의하시나요?

○교육부장관직무대행 최은옥 동의합니다.

○김기표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묻겠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8월 14일 날 종교지도자 양성 대학법인 지정 고시 개정을 행정예고 했었지요?

○교육부장관직무대행 최은옥 예.

○김기표 위원 그게 2008년 제정 이후 처음으로 개정된 것인데 기준의 21개 학교법인 가운데 총 10개 대학법인이 제외돼서 조금 사회적으로 혼란이 있었습니까, 이거 관련해서?

○교육부장관직무대행 최은옥 예.

○김기표 위원 그런데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되겠다. 뭐냐하면 이 재명 정부가 들어서기 전 3~4월 정도에 이것이 마련이 됐고 그것이 계속해서 진행이 됐는데 정부가 바뀌면 철학도 바뀌고 내용도 바뀌어야 될 것인데 이게 정권 교체기에 차관·장관이

공석이거나 업무에 집중할 수 없을 때 일이 진행이 돼 버린 면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정권이 이월될 때 이런 미묘한 분야에 있어서 일 처리가 조금 미숙하게 되면 각각 여러 가지 오해와 사회에 불필요한 논쟁이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아직……

물론 교육부장관 곧 임명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이런 과도기에 행정에 대해서 잘 관리를 해야 될 것 같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기로 하셨나요?

○**교육부장관직무대행 최은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잘 알고 있고요. 지금 예고만 된 상황이고 대학들이 의견을 제출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당 대학들과 추가로 충분히 협의해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표 위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그거와 철학이 맞는지까지 꼼꼼히 살펴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교육부장관직무대행 최은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표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수고하셨습니다.

박균택 위원님.

○**박균택 위원** 차관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행 제도에 의하면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할 때 그 소속 어린이집도 무조건 국가나 자체로 귀속되어야 했던 건 맞습니까?

○**교육부장관직무대행 최은옥** 예, 그렇습니다.

○**박균택 위원**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어린이집의 특성이나 정책적인 환경 변화 같은 것을 고려해서 합리적인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유사목적 법인 등에 잔여재산을 넘길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이는 것 맞는 거지요?

○**교육부장관직무대행 최은옥** 예, 맞습니다.

○**박균택 위원** 어린이집의 주무 부처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된 덕분에 1년 만에 이런 해결 방안이 마련된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의견을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이게 원안대로 이대로 통과된다면 사회복지법인의 해산 또 잔여재산 처리의 특례 이게 마련될 수 있다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는 것이고, 어쨌든 그런 여론이 있는 것을 잘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보 통합 이후에 교육부가 할 일이 참 많아졌지요?

○**교육부장관직무대행 최은옥** 예, 그렇습니다.

○**박균택 위원** 업무가 많아졌는데 유치원 또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경영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많이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주무 부처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귀를 좀 더 잘 열고 필요한 사항들을 많이 뒷받침도 해 주시고 재정적인, 행정적인 지원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여론을 전달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부장관직무대행 최은옥** 현장 의견 충분히 듣고 소통해서 정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균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미애** 수고하셨습니다.

나경원 위원님.

○**나경원 위원**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교육부차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사회복지법인 해산 시에 이런 특례 규정을 두었는데 지금 개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경우에도 폐원 시에 이 부분에 대한 대책 마련이 있느냐 이런 많은 문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습니까?

○**교육부장관직무대행 최은옥** 저희가 우선은 그동안 조금 더 공익성 있게 운영을 하고, 또 사회복지법인은 농촌과 인구소멸지역에 많이 분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법인부터 저희가 해산이 가능하도록 개정을 하는 것이고요. 법안이 개정되면 이 법안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추가 지원도 할 수 있는지를 잘 살펴보고 그 이후에 개인에 대해서도 상황을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원 위원** 실질적으로 이것이 종합적으로 논의되어야 된다, 그래서 먼저 통과되는 것보다 같이 함께 통과하는 것도 맞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까지 저희가 건드리는 것은 법사위의 권한을 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 차원에서 후속 조치 또 다른 형태의 어린이집의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엑시트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조치를 마련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요.

체계·자구 심사가 저희 권한이기는 하지만 제가 보니까 이상한 국회 운영 행태가 생겼더라고요. 제가 안건조정위원회도 국회법에 안 맞는다고 하지만 그동안은 법사위 2소위로, 일단은 토론이 있는 경우에 2소위로 회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2소위에서 조금 더 밀도 있게 논의된 다음에 다시 전체회의에서 토론하고 토론 종결하고 표결이 됐는데 지금 이상한 게 22대 국회 들어와서 단 한 건도 2소위로 회부를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 아닙니까?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현재 제가 보니까 2소위로 회부한 것이 없고. 예전에는 기본적으로 2소위로 전부 회부를 하고 2소위에서 정리를 해서 그다음 다시 전체회의로 갔습니다. 제1소위 회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위원장께 드리는 말씀인데요. 2소위로 일단 타워 법안을 넘겨 주십시오. 그리고 1소위 위원장은 민주당, 2소위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타워 법률안을 충분히 논의하고 가야지 저희가 체계·자구 심사를 이렇게 전체회의에서.....

계다가 검토보고서도 48시간 전에 의원실에 와야 되는데 이 법안도, 물론 법안 상정에 있어서 간사 간 협의해야 되는 절차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가 엉망이기도 하지만 선입선출의 원칙도 잘 안 지켜지고 있어요. 의사일정을 갖다가 안건을 상정할 때는..... 선입선출 법안은 민주당 의원들도 발의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온 대로 올리자, 그래서 선입선출을 원칙으로 하고 그다음에 예외적으로 긴급한 사정이 있을 때 각 당의 의견을 조율해서 간사와 협의해서 올려 주시고.

두 번째, 검토보고서 48시간 안에 줘야 된다라는 이런 국회법 규정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전체회의에서 일방적으로 빠르게 통과하는 것은 소위 날치기 통과가 된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예전 법사위 운영처럼 2소위로 모두 회부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2소위에서 빨리 회의하고 그다음에 정리해서 토론해서 전체회의로 하는 그러한 절차를 거쳐 달라는 것도 건의합니다.

저는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제가 굳이 의회독재 이런 얘기 안 하겠습니다. 우리가 의회의 원래 모습을 찾아가고 의회를 정상화하자는 겁니다. 위원장님 6선 하셨으니까 그동안 국회 어떻게 운영됐는지 잘 아시잖아요. 법사위의 2소위 법안은 일단 2소위로 한번 보내셔서 2소위에서 토론하고 그리고 다시 전체회의로 갈 수 있도록 이것도 좀 바로잡아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위원장님 위해서도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원장께서 우리 법사위를 좀 더 민주적으로 운영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선입선출 그다음 두 번째로는 2소위 회부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추미애**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 위원** 차관님, 장애인평생교육법 관련해서, 제가 이것 공동발의한 법안인데 당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는데요.

전 국민 평생교육 참여율이 작년 기준 우리나라는 33%고 OECD는 49%라고 합니다. 그런데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2.4%에 불과하다고 하고요.

교육부 내년 전체 예산이 106조인데 그중에 장애인 평생교육 예산이 얼마인지 차관님 아시나요?

○**교육부장관직무대행 최은옥**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

○**박은정 위원** 한 52억 정도 되고 윤석열 정부 들어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들, 특히 재가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는 장애인 평생학습권 보장으로 더욱 높여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평생교육 대상 장애인구를 200만 명으로 추산하는 상황에서 사회적 비용을 낮출 수 있는 이것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적 편의도 이미 증명된 바 있고 2016년 평생교육법 개정으로 국가장애인평생교육 진흥센터가 설립되고 B/C(비용편익분석)에서 파급효과는 약 1조 원, 고용유발효과는 전국적으로 4400명에 달한다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비용편의도 1.6을 넘어서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서 이번에 장애인평생교육법이 통과되고 시행이 되면 교육부장관님이 5년마다 장애인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와 시도별 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의무화되는 법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관님, 장애인의 교육권과 사회참여권 보장을 위해서 정책 수립을 꼼꼼하게 준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감소세에 접어들었던 장애인 평생교육 예산도 원상복구시키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회에서는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을 오랜 기간 준비해 왔습니다. 장애인평생교육 기본계획 수립에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더더욱 반영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회의 의견도 청취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장애인평생교육법 관련해서 차관님의 고견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부장관직무대행 최은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나라 평생교육 참여율 자체도 선진국에 비해서는 낮지만 장애인 평생교육은 참여율이 훨씬 낮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발의를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장애인평생교육법안 제정을 계기로 저희가 정책적인 노력도 해서 장애인들께서 평생교육에 더 참여해서 여러 가지 삶의 질을 높이시는 데 기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미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석준 위원님.

○**송석준 위원** 차관님, 장애인평생교육법안은 장애인들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그래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또 사회통합을 위해서 굉장히 기여할 법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우려하는 것은 지금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장애인들 교육을 담당하고 있나요?

○**교육부장관직무대행 최은옥** 중앙 단위에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런데 이 법안에 의하면 장애인평생교육진흥원을 별도로 두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2개 기관이 뭔가 유사한 일을 하면서 업무에 중복이 오지 않는가 또는 전달체계에 혼선이 오거나 효율성이 저하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은 갖고 계십니까?

○**교육부장관직무대행 최은옥** 장애인평생교육법안이 그동안 여러 해 동안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합의가 돼서 올라온 법안은 전달체계를 기존의 평생교육 전달체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정이 되어서, 위원님들께서 다 동의를 해 주셔서 법사위까지 올라오게 됐고요. 반드시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한 전달체계를 따로 두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체계를 같이 쓸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은 좀 약해졌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약해졌다? 있기는 있다는 얘기네요?

○**교육부장관직무대행 최은옥** 그런데 이것은 시도에서 앞으로 논의하면서 정할 거기 때문에요 시도의 형편에 따라서 시도 그리고 기초 시군구의 전달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송석준 위원** 그러면 평생교육진흥원은 중앙에만 있는 건가요?

○**교육부장관직무대행 최은옥** 예, 그렇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래서 장애인평생교육진흥원은 시도 하부 전달체계, 상위에 있는 진흥원과 서로 중복되지 않으면서도 서로 역할 보완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부장관직무대행 최은옥** 예, 맞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제가 위원장님께, 나경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법사위에 1소위가 있고 2소위가 있는데 2소위가 지금 전혀 작동을 못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법안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우리가 전체회의 시간에 이렇게 직접 논의하는 데는 상당히 시간적 한계를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2소위에서 타워 법안을 좀 다룰 수 있는 2소위 활성화 방안을……

지난번 정청래 위원장 시절에는 그 당시 특검법이니 무슨 탄핵안이니 무슨 공청회니 이게 정권 흔들어 대기 해서 그런지 도대체 법사위가 정신이 없었어요. 따로 할 시간이 없었는데 이제는 우리 사회가 좀 더 정상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최다선 의원이시고 또 우리 법사위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하기 위해서 1소위, 2소위가 충실히

히 운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2소위를 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의 특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교 위원님.

○서영교 위원 국회에서 가장 큰 문제는 타 상임위에서 올라온 문제를 법사위에서 막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부분도 일부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법사위가 22대 국회가 되고 거의 원칙처럼 한 것은 아주 불가피한 상황이 오기 전까지는 타 상임위에서 온 법안을 법사위에서 논의하고 통과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항상 해 왔고요. 그래서 법사위에서 가는 길목의 법안이 하루하루가 시급한데, 해야 할 일이 많은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잘 통과되기를 기다려 왔고 저희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 부작용 없이 해 왔기 때문에 오늘 2소위로 넘겼으면 하는 위원들이 계시나 저는 그것은 월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불가피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전체회의에 상정해 놓고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말씀을 계속하고 계셔서 이 말씀을 제가 위원장님께 드리면서, 오늘도 교육위에서 위급하게, 급하게 해 온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뒤에 남아 있는 법안들이 더 있어서, 저도 뒤에 문제 제기해야 될 법안도 있는데 빠르게 통과시켜 주셔서 이 법들이 실행될 수 있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미애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욱 위원님.

○신동욱 위원 저 질의하기 전에, 조금 전에 박은정 위원님께서 ‘저런 거’라는 표현을 제가 썼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분명히 오해라는 말씀을, 제가 지적한 부분은……

○박은정 위원 사과는 하세요.

○신동욱 위원 아니, 저런 것, 즉 저런 행태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지 않고 왜 저희 당 위원에 대해서만 지적을 하냐라는 표현을 쓴 건데, 일반적으로 ‘저런 거’라는 것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저는 저런 것, 저런 행태는 왜 위원장님이 제지를 하시지 않느냐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저는 사람에 대해서 ‘저런 거’라는 표현을 써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부분은 아니라는 점을 제가 분명히 다시 한번……

○박은정 위원 누가 믿겠습니까.

○서영교 위원 ‘저런 거’라고 들리는데.

○신동욱 위원 아니요, 그것 잘못 알아들은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서영교 위원 듣는 사람이 그렇게 들리니까 쿨하게 사과를 하세요.

○신동욱 위원 아니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왜 서영교 위원이 끼어들어요, 자꾸?

○박은정 위원 제가 그렇게 들었다고요.

○서영교 위원 내가 보기에도 불편해요.

○신동욱 위원 이러니까 자꾸 말이 길어지는 거예요. 제가 해명하지 않습니까.

○서영교 위원 그렇게 말을 했으면 쿨하게 사과를 하지 뭘 그렇게 변명을 늘어놓고 그

래요?

○**신동욱 위원** 뭘 사과를 해요? 전 사람에 대해서 ‘저런 거’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됐고요.

○**송석준 위원** 상습적으로 간섭하지 마세요, 좀.

○**서영교 위원** 내가 보기에는 강압적이지, 강압적이야.

○**신동욱 위원** 자꾸 제가 이런 말씀을 좋게 드리는데도 이렇게 나오시면 이건 싸우자는 거지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당 위원이 질의할 때 말을 계속하시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면서 반대의 경우에는 저희 당을 경고라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제 질의 하겠습니다.

교육부차관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관대행을 얼마 동안 하고 계시는 거지요?

○**교육부장관직무대행 최은옥** 한 달 반 정도 됐습니다.

○**신동욱 위원** 교육부장관이 왜 이렇게 임명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부장관직무대행 최은옥** 국회에서 청문보고서를 채택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동욱 위원** 지금 이 정부가 지명한 2명의 교육부장관후보자가 국회에서 청문보고서를 채택해 줄 만한 분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교육부장관직무대행 최은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신동욱 위원** 그러면 평생 교육에 종사를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교육부장관직무대행 최은옥** 예.

○**신동욱 위원** 그러면 나름의 교육철학이 분명하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좀 여쭤보겠습니다.

성적이 떨어져서 속상해하고 있는 중학생의 뺨을 때린 전력이 있는 분, 교육부장관 자격이 있습니까?

○**교육부장관직무대행 최은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후보자께서 청문회 때 충분히 해명을……

○**신동욱 위원** 아니요, 차관님이 앞으로 그런 분이 장관이 되시면 장관으로 존중하고 또 지시를 하시면 따르고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속 내심이 ‘이분이 내가 진심으로 장관으로 모실 만한 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교육부장관직무대행 최은옥**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그 상황에 직접 있지 않은 상황에서 가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신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교육부장관이 되실 분이 언론 기사를 석사 논문에 아무 출처 표기 없이 베껴서 그대로 쓰신 분, 그리고 이전의 이진숙 장관님도 표절이 굉장히 문제가 됐잖아요. 이 분이 일반적으로 교육부장관의 자질이 있다고 보십니까?

○**박지원 위원** 장관한테 물어봐야지 차관한테 물어보고 있어.

○**신동욱 위원** 차관의 교육철학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저는 차관이 평생 교육에 종

사를 하셨으면 적어도 이런 분은 교육부장관이 되면 곤란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김기표 위원** 당사자가 답변할 수 있는 질문을 해 주십시오.

○**신동욱 위원** 답변을 못 하시는데……

세 번째, 지금 천안함이 북침되면서 정말 많은 우리 장병들, 대한민국 국민들 마음에 상처가 있고 아직도 그때 돌아가신 분들의 유가족들이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음모론이다라는 취지의 기사를 공유하고 그런 생각을 전파하신 분이 대한민국 교육 수장이 될 수 있습니까?

○**교육부장관직무대행 최은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께서 청문회 때 사과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욱 위원** 그러니까 사과를 하셨으니까 잘못된 거라는 것을 인정했다라고 차관님도 생각을 하시지요? 사과를 하셨으니까 잘못됐다라는 부분을 인정하신 거라고 차관님도 생각을하시는 거지요?

○**김기표 위원** 그것도, 다른 사람 내심의 의사를 어떻게 답변합니까, 신동욱 위원님.

○**신동욱 위원** 그래서 교육이 정말로 중요한 분야인데 이렇게 저희가 보기에는 정말 문제가 많은 분들을 지금 또 강행해서 임명하려고 하시는데 국회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이 안 됐기 때문에 교육 수장 자리가 비어 있다라는 이런 말씀보다는 교육계에서 적어도 이 정도 수장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입장을 내 주시고 이런 것은 곤란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걱정돼서, 법안도 중요하지만 인사도 중요하다는 취지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지원 위원** 저도……

○**위원장 추미애** 박지원 위원님.

○**박지원 위원** 교육부차관께서 장관이 청문회에서 답변해야 될 내용을 답변할 의무가 전연 없습니다. 그런데 노련하게 잘 넘겨서 역시 교육부차관답다, 참 훌륭하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차관이 장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하극상이에요. 정부의 체통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건 그렇고, 제가 지난 7월 달에 차관에게 전라남도 의과대학 문제에 대해서 질문했지요?

○**교육부장관직무대행 최은옥** 예, 하셨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때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교육부장관직무대행 최은옥** 그 상황을 제가 잘 알고 있고 ‘의대가 없는 지역에 의과대학이 설립돼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답변드렸습니다.

○**박지원 위원** 역시 명석하시네요. 그렇게 답변했어요. 그런데 최근 교육부에서, 물론 보건복지부와 상의된 내용이겠지만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의 설립은 2030년도에 검토된다’ 이런 말씀 하셨어요?

○**교육부장관직무대행 최은옥** 저희가 교육위원들께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 예?

○**교육부장관직무대행 최은옥** 저희가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통상의 절차로 하면 시간 스케줄이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 이것은 비록 전 정부지만 정부의 요구에 의해서 전남에서는 목포대학과 순천대학을 통합해서…… 지금도 이어지는 교육부 정책 아니에요, 지방대학 통합?

○**교육부장관직무대행 최은옥** 예, 그렇습니다.

○**박지원 위원** 통합을 해서 전남에 의과대학을 받겠다 이렇게 요구를 했고 또 그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전라남도에서는 2027년까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서 의과대학 신설을 허가해 달라 이렇게 요구한 것 잘 알고 있어요?

○**교육부장관직무대행 최은옥** 잘 알고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 알고 계시면, 이건 이제명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고 전라남도에 오셔서도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방침을 믿고 목포대학교와 순천대학이 의과대학 설립을 위해서 통합했다고 하면 정부가 약속을 지켜 주는 것이 좋다. 그래서 차관님이 꼭 2027년까지 전라남도 숙원인 의과대학 신설이 되도록 노력해 주세요.

○**교육부장관직무대행 최은옥** 예,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학을 통합해서 의대를 유치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짚어서 해야 할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학하고 긴밀하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통합하는 것은 공적으로 약속했기 때문에 목포대학이나 순천대학에서 거부할 수 없는 사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궁정적으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장관직무대행 최은옥** 예, 알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추미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10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8항까지, 11항부터 14항까지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은옥 차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15.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29)

16.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71)

17.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02)

1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67)

19.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9602)

2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96)
21.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69)
22.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4172)
23.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60)
24.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78)
25.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8364)
26.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11)
27.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16)
28.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57)
29.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9465)
30.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79)
31.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65)
3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33. 문신사법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34.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3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3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3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3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39.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4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4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16시15분)

○위원장 추미애 다음으로 복지위 소관 의사일정 제15항부터 41항까지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박혜진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혜진 의사일정 제15항부터 26항까지, 28항부터 39항까지와 41항 보건복지 위원회 소관 25건의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신판매중개자 등이 숙박업자의 의뢰로 통신판매 중개를 하는 경우 영업신고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신판매 중개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이와 관련하여 통신판매중개자는 유효한 영업신고의 실체적 확인이 아닌 영업신고증의 존부 확인을 하는 것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생용품의 수입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현행법상 수입 위생용품에 대한 검사에 수입 신고서류에 대한 검토와 정밀검사 등 실질적 검사가 함께 포함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신고수리 시점과 절차를 검사 결과에 따른 신고수리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건강보험공단 및 심사평가원의 이사에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1명을 각각 추가하고 공정거래법에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 또는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된 약제에 대해서는 요양급여비용의 상한금액을 감액하거나 요양급여의 적용을 정지하며 공단의 구상권 행사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가입자 및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보험회사 등이 제삼자의 행위로 인해 보험급여를 받거나 보험급여가 실시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이를 공단에 알리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20조 및 제65조는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소속 근로자 중 임명되는 이사를 1명씩 추가함에 따라 이사 정원이 15명을 초과하게 되는데 이는 이사회를 15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도록 하는 공공기관운영법과 상충하는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해당 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법 개정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이사회 정수 증원을 통해 도입하는 방식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문신사법안(대안)은 문신사의 자격·업무 등을 규율하기 위한 제정안으로 문신사는 의료법에도 불구하고 침습적 행위인 문신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문신업소를 개설하려는 자는 시군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며 문신업자에게 위생·안전 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문신사에게 금지되는 문신제거행위의 정의를 추가하고 위급상황 시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문신사의 면허를 취소하며 문신업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문신사의 법 위반행위도 문신업소에 대한 대물적 제재처분 부과 근거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부칙 중 임시 개설등록 특례에 관한 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수정이 검토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한편 제정안이 통과되는 경우 시행일인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종전에는 의료법 및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위법으로 규정되었던 비의료인의 문신행위에 대해 형사법적 규율 방식이 대폭 변화될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정안 부칙은 이 법 공포 후 시행일까지의 비의료인의 문신행위를 어떤 방식으로 규율할지에 관해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의료인의 문신행위를 제정안 공포 이후에도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단속할지 여부가 불확실하여 행

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이 법 집행 과정에서 혼선을 빚을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제정안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문신시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나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사안이지만 제정안의 공포일과 시행일 사이에 이루어진 비의료인의 문신행위가 법 위반행위로 처벌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고 확정판결 선고 시점에 따라 부칙에 규정된 문신사면허 결격 사유의 특례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점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4항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교육에 필요한 기증 시신이 부족한 의과대학에 보건복지부의 허가를 받은 다른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수집·보존 중인 시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시체 해부 및 제공 등에 대한 관리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이 시체 제공의 목적과 범위를 확대한 만큼 그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허가취소 및 업무정지와 과태료 부과 사유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아동권리보장원의 기관 명칭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변경하고 국가가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보호대상 아동이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인 경우에는 장애인복지시설에 입소시킬 수 있도록 하고 후견인이 없는 보호대상 아동을 가정 위탁하는 보호자가 최대 1년 범위에서 금융계좌 개설, 의료서비스 이용, 학적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임시로 후견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가정위탁 보호를 하는 자가 보호하고 있는 아동에 대해 임시로 후견인 역할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자의 동의를 받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출연 근거 신설에 대해 이미 아동권리보장원에 인건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출연금 근거를 신설할 필요성이 적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추미애 위원장, 김용민 간사와 사회교대)

의사일정 제38항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조산 인력 양성을 위해 조산사 임무와 면허시험 응시자격을 확대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해 병원, 치과병원, 종합병원과 같이 정신병원에서도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와 이를 교사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위반한 자가 그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공익신고를 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와 관련해서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개정안에서 공익신고자에 대해 필요적으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수술실 내 불법 의료행위를 보다 근본적으로 예방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공익침해행위 중 무자격·무면허 의료행위와 이를 교사한 자에 대해서만 그 형을 필요적으로 감면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자살실태조사 항목에 소득, 직업, 건강, 가족관계 등 조사 대상자의 특성에 관한 사항과 자살자의 자살 원인·동기·수단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을 수행하며 유통되는 정보가 자살유발정보임이 명백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차단,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안 제19조의5제2항과 관련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법과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불법정보에 대한 심의·시정 요구 등의 업무를 소관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장관이 자살유발정보에 대해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차단, 삭제 등을 요청할 경우 사실상 위원회의 시정 요구와 동일한 기능을 갖게 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17항, 19항, 20항, 21항, 23항, 25항, 30항, 31항, 36항, 37항, 41항 등 12건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의사일정 제18항, 22항, 24항, 28항 그리고 29항은 체계·자구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대리 김용민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서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박균택 위원님.

○박균택 위원 보건복지부장관님, 38항 의료법 개정안 87조의2 제3항을 보면 의료법 위반 사범에 대한 공익신고자 보호법상의 공익신고를 한 경우 그 규정에도 불구하고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적 감면 사유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법무부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굳이 필요적 감면으로 이 조항만 둘 필요가 있느냐, 임의적 감면으로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저희도 법무부랑 협의해서 임의적 감면으로 수정하는 걸로 해서 안을 변경하는 걸로 보고드렸습니다.

○박균택 위원 그러면 동의가 됐다 이 말씀이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동의가 됐습니다.

○박균택 위원 그러면 임의적 감면 조항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이미 규정이 돼 있으니까 이 규정은 필요가 없다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이미 있으니까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그걸로 갈음하라는 말씀이 된 거지요.

○박균택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이 부분은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통과시키는 방안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민 토론 다 끝나신 건가요?

○**박균택 위원** 예, 끝났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민** 그래도 의견을 한번…… 장관님, 혹시 방금 박균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위원님 말씀 주신 것대로 필요적 감면이 아니라 공익신고자 보호법하고 동일하게 임의적 감면으로 수정했기 때문에 그 법으로 적용을 하면 될 걸로 판단하고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민** 그러면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신다는 의견……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민**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조배숙 위원님 먼저 드셨지요?

조배숙 위원님.

○**조배숙 위원** 장관님, 오늘 15항에 보면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법안을 보니까요 법안의 개정안을 낸 취지가 뭐냐면, 이 취지하고 이 법안 법문 내용하고 너무 포괄적인 것 같아서 원안의 제안 이유를 보니까 소병훈 의원님 비롯해서 대표발의하셨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암 검진 수검자의 사후 관리와 암 검진의 장기적인 효과 평가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암 검진 수검률과 암 사망률 통계를 연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랬어요. 그래 가지고 이것을 위해서 이 법안을 냈는데 지금 보니까 그 법안의 내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개정안 조문은 원래의 연계 필요성을 떠나서 ‘검진 자료의 활용에 필요한 자료’라고 아주 포괄적으로 확대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조문에는 국가 건강검진 전체로 되어 있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런데 사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는 굉장히 개인의 건강에 관해서 상세하게 돼 있어서 아주 민감한 자료잖아요.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조배숙 위원** 그러니까 원래의 개정안 취지대로 암 검진 수검률과 암 사망률 통계 연계 필요성 이것에 한정돼서 통계를 수집한다거나 이런 것은 불가능한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저희가 암 검진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국가 검진을 하고 있고 그 국가 검진 결과로 질병이 어떻게 발견됐는지, 어떻게 사망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고 검진 정책을 수립하는 데 전체적인 내용이 필요하고요.

저희가 그 조문을 보완한 게 최소한의 범위 내로 정보를 쓰고 목적 외에는 다른 용도로 쓰지 못하게끔 하는 단서 조항을, 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서 대안을 만들어서 그걸 보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배숙 위원** 그러면 해당초에 입법취지를 그렇게 했으면 다 이해가 되는데 처음의 입법취지를 보면 그게 아니라 ‘암 검진, 암 사망률 통계 연계’ 이렇게 돼 있어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서명옥 의원님께서는 암을 가장 대표적인 질병으로 봐서 그것을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궁경부암 검진을 했는데 진짜 자궁경부암 사망이 줄었느냐, 검진받은 사람이 굉장히 조기에 발견됐고 사망률을 낮췄느냐 이런 걸 보려면 건보 데이터나 통계청 사망 데이터를 연계시켜서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암 검진을 예시를 들고 조문은 이렇게 만드셨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이 너무 괴리가 있어서 질의한 것이고요.

그리고 목적 외 사용 금지라고 하는데 얼마 전에 KT나 이런 쪽에서 해킹이 돼 가지고 정보가 다 유출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이 국민들로서는 좀 민감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부분에 유의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말씀 주신 대로 최소한과 목적 외 사용 금지랑 정보 보안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배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민** 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최혁진 위원님 먼저 드셨는데 최혁진 위원님 하시고 진행하시지요.

○**최혁진 위원** 식약처장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가 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유전자 변형 및 비의도적혼입 정의 규정 이 부분들을 법 개정하신다는 거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 위원님, 이 법률은 지금 법사위에서 빠진 안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혁진 위원** 빠졌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 예.

○**최혁진 위원** 그런데 여기 왜 자료가 올라와 있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 오늘 오전에 아마 이게 수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혁진 위원** 그러면 어차피 질문하니까 제가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일단 소비자단체에서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GMO 완전표시제에 대한 요구가 계속적으로 있었는데 식약처의 입장은 뭡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 식약처에서는 기본적으로 GMO는 식약처의 안전성 평가를 통과한 것들이 사용되는 것이지만 소비자의 알권리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혁진 위원** 안전성 논란으로 과학적으로 안전하냐 아니냐 이 논란 속에 사실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은 그건 다른 문제고 GMO가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싶다라는 게 소비자들의 요구잖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 예, 그렇습니다.

○**최혁진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동안에 계속 지속적으로 식약처가 안전성 중심으로 평가를 해 오고 판단을 해 옴으로 인해서 이게 입법화가 대단히 늦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지 간에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좀 고려하시겠다는 입장이잖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 예, 그렇습니다.

○**최혁진 위원** 여기 보게 되면 어쨌든 법사위에서는 반려가 됐다고 그러니까 제가 길게 물어볼 건 아니지만 다시 검토돼서 올라올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좀 물어보면 일반적인 식품으로 확대하지 않고 건강기능식품만 제한적으로 이것들을 하겠다라고 법안이 올라온 배경은 식약처의 입장인가요, 아니면 소관 상임위에서 이 정도로 논의를 한 건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 건강기능식품도 있고요. 위원님, 또 식품위생법에 일반식품도 다 있습니다.

○최혁진 위원 일반식품까지 GMO?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 예, 두 가지 다……

○최혁진 위원 그러면 비의도적혼입 시까지도 고려해서 시행령으로 정할 예정인가요, 국제기준에 맞게?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 예, 그렇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하게 됩니다.

○최혁진 위원 그게 식약처 입장이라는 거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 예.

○최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민 다음은 전현희 위원님, 먼저 손 드셨는데 전현희 위원님 지금 토론 가능하시지요?

○전현희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용민 토론해 주십시오.

○전현희 위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의료 실력 수준은 전 세계의 최고 수준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치료나 진료를 받기 위해서 많은 의료 관광객들이 한국을 찾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에 관해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이 있는데 최근에 민주당 의원들 몇 분이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보면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이 보고하는 전년도 사업 실적에 외국인 환자별 유치 방법과 과정을 포함해서 보고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관해서 일부 야당 위원들께서 국제의료협회와 지자체 등의 의견이 현재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신중 검토하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복지부 측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을 반영해서 기존의 의무 규정에서 임의 규정으로 대안을 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야당 위원들의 지적도 분명히 일리가 있다 생각하는데 지금 의료협회라든지 지자체 등의 의견을 반영하는 그런 이견이 해소되었는지 여쭙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의료 해외진출법 관련해서 보고가 있는데 보고 내용을 조금 확대해서 유치 방법 과정을 포함하는 걸로 했는데 행정 부담이 너무 많이 크다라는 것과 별도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단은 임의 규정, 재량 규정으로 변경해서 시행해 보고요 이후에 필요하면 그때 또 수정하는 것을 검토해서 이번에는 임의 규정으로 수정해서 통과시켰으면 합니다.

○전현희 위원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의 의무 규정에서 임의 규정으로 해서 실시를 해 보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는 이런 취지신 것 같은데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맞습니다.

○전현희 위원 이 부분에 관해서 복지부에서 문건을 새로 수정해서 제시한 걸로 보이는데 복지부에서 수정 제안한 내용으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민 또 토론하실 위원님?

아까 송석준 위원님이 먼저……

○조배숙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위원장대리 김용민 송석준 위원님 하실 건데, 조배숙 위원님은 어떤 것 때문에……

○조배숙 위원 아니, 전현희 위원이 금방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도 이 문건을 보고 그렇게 이해했는데 어떤 뜻인지 정확하지 않아서……

○위원장대리 김용민 그러면 연결된 토론을 한 1분 정도만 드릴까요?

○조배숙 위원 예, 1분 정도.

○위원장대리 김용민 예.

○조배숙 위원 장관님, 그러니까 금방 전현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결국 입장이 뭔가요? 여기 수정안을 마련해 가지고 외국인 환자 유치의 경우에 그 유치 의료 기관이 사업실적 보고하는 경우에 유치 방법이나 이런 것을 의무 규정에서 임의 규정으로 ‘포함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안을 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그걸로 집행을 하신다는 거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그 수정의견에 동의한다는 말씀입니다.

○조배숙 위원 그런데 아까 1년은 해 보고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아, 저희는 원래 이걸 의무 조항으로 하려고 의도는 했는데 행정 부담이 많다는 협회와 지자체 의견이 있어서 그걸 받아들여서 임의 조항으로 바꾸고요 운영을 해 보면서 필요성이 생기면 다시 법 개정을 검토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조배숙 위원 일단은 임의 규정으로 했다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조배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좀 불분명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민 그러면 다음은 송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석준 위원 장관님, 축하드립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감사합니다.

○송석준 위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20항 안건이요. 마약류 문제가 요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데 의사협회라든가 이견들이 좀 있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식약처 담당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 위원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는 협회의 의견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의 본질은 의원들이 폐업을 했을 때 폐기하고 남는 마약을 그동안은 신고를 할 의무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신고를 하게 해서 좀 더……

○송석준 위원 신고할 의무가 그동안 없었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 예, 마약류를 폐기한 다음에, 폐업을 한 다음에 양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양수가 잘 안 되고 남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것에 대해서 자율적이었지 법률로 의무화가 되지 않았는데……

○송석준 위원 그러면 자율적으로는 어떤 식으로 처분이 됐었나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 그동안에는 이것에 대해서 폐기 전에 신청서를 할 수 있

게 하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폐기 후에 하는 것은 약간 사각지대였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을 법적으로 좀 더 신속히 할 수 있게, 폐업을 한 후에도 폐기를 다시 할 수 있게 법률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송석준 위원** 그러면 관계기관하고도 충분히 의견을 나눠서 문제는 없도록 하겠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 예.

○**송석준 위원** 차질 없이 해 주시고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 예.

○**송석준 위원** 32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의견이 좀 있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 위원님, 건강기능식품에 관해서도 아까 최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 지금 수정안에는 없는, 오늘 안건에서는 삭제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는 32항은 국민건강보험법이라서, 지금 그 두 가지가 오늘 안건에는 올라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래요? 넘어가겠습니다.

34항 문신사법안, 이 부분은 굉장히 논란이 많았지요, 그동안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오랫동안 검토했던 법안입니다.

○**송석준 위원** 어렵게 통과가 됐는데 지금 이용자가 1300만에 이르고 또 종사하는 분들이 거의 35만 명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 사회에 문신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미용이나 또는 미를 위해서 서화문신 같은 것들이 많이 일상화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에 의료계에서 많은 반대도 있고 지적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서로 소통을 했고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어떤 대안을 마련하고 이게 합의가 된 건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의료계에서 문제로 지적했던 사항들이 위급 상황 시에 응급 의료기관으로 이송 조치하는 것들 그리고 문신 제거 행위를 못 하게 하는 부분들, 그래서 금지 조항이 들어갔고 또 부당한 광고 금지 같은 그런 의료계 의견을 좀 반영해서 수정 대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의료계의 요구를 반영한 내용으로 상임위에서는 통과가 되었습니다.

○**송석준 위원** 지금 문신사가 처음 이렇게 우리 사회에 도입된 게 언제, 몇 년이나 됐나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그거는 정확하게 알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오래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면허나 업종이 규정이 되지 않아서 좀 사각지대에 오래 있었습니다.

○**송석준 위원** 이번에 제대로 제도화가 된 거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국민들 안전을 위해서 위생이나 안전관리에 초점을 둘서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김용민 간사, 추미애 위원장과 사회교대)

○**송석준 위원** 외국의 경우에는 이렇게 제도화된 나라들이 몇 나라가 있던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대부분의 국가는 문신을 의료행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일본의 경우에는 일부 미용 목적으로 하는 반영구 문신에 대해서는 의료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러면 제도화가 제대로 된 나라가, 우리나라가 가장 선도적으로 이렇게 제도화를 하는 건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아니요, 대부분은 별도로 의료행위가 아닌 문신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걸 의료행위로 봤기 때문에 문신사의 면허나 업종이 만들어지지 않았던 것이어서 대부분의 나라들은 의료행위가 아닌 걸로 관리체계를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렵게 시행된 만큼 잘 운영해서……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시행에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이 정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수고하셨습니다.

서영교 위원님.

○**서영교 위원** 복지부장관님, 아동복지법에 기재부 의견 반영해서 아동권리보장원 출연금 지원 근거를 삭제한다 이렇게 동의가 되신 건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출연금은 삭제하지만 국고보조는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보조하거나 지원하는 것에는 큰 변화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서영교 위원** 기재부하고는 이견이 다 해소되신 거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해소가 됐습니다.

○**서영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꼭 짚어야 될 것 같아서, 아동권리보장원에 지원하는 것은 지원이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현재도 국고로 지원하고 있고요. 이거는 국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운영비는 다 국고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이렇게 귀한 활동 하는 분들을 놓치지 않고 지원해 줄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앞으로 역할이 더 커질 것 같아서 잘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자살예방법 관련해서입니다. 자살예방법 관련해서 이번에 들어간 내용은 어떤 것인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이번에 들어간 내용은 주로 인터넷상의 자살 유발정보가 굉장히 많이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한테 이런 유발정보를 차단하는 조치들을 하도록 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복지부장관이 유발정보를 차단 요청을 할 수 있게 하는 조항에 대해서 좀 더 신속하게 자살 유발정보가 차단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서영교 위원** 모니터링하는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내용이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그리고 자살정보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들어가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아주 시급한 내용이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맞습니다.

○**서영교 위원** 지난해 자살예방위원회인가 한 번도 회의를 한 적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자살예방정책위원회가 있는데 많이 활성화가 안 되어 있어서 저희도 활성화시킬 예정이고 이번 주 금요일 날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잡혀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서영교 위원** 지금 아기 출생이 어렵잖아요. 출생률은 세계 최하위입니다. 그런데 작년 6월 기준 그리고 올 6월 비교를 했을 때 작년보다 출생아 숫자가, 출생아 비율이 9.6% 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어떻든 지금 출생아 수가 늘고 있는 골든 타임이라고 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맞습니다.

○**서영교 위원** 결혼하는 신혼부부의 숫자도 9% 정도 늘었다고 합니다. 조금은 나아진 정책이 있겠지요. 그리고 코로나 때 결혼을 미뤄 뒀다가 지금 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프고 슬프기도 한 이야기지만 지금이 행복한 결혼, 행복한 출생, 행복한 육아를 만들어 내야 될 시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동의합니다.

○**서영교 위원** 그런데 이 시점에 그 아이들이 커서, 이렇게 자살을 유발시키는 정보가 제대로 차단되고 있지 않아서 이런 법안이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맞습니다.

○**서영교 위원** 제가 얼마 전 국회 대회의실에서 자살예방포럼 하는 곳을 갔습니다. 연구 발표도 다 잘 들었습니다. 발표를 참 잘하시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자살률은 세계 1위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OECD 국가에서 1위입니다, 불행하게.

○**서영교 위원** OECD 국가에서 1위인데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서영교 위원** 장관님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모니터링하고 자살을 유발시키는 정보는 바로 차단할 수 있게 지금 시작했고요.

그리고 제가 이런 법안을 하나 만들었었는데요. 제보를 받았어요. 인터넷에서 머리 박치기인가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머리를 계속 두들기면서 죽어 가는 이런 놀이가 있다는 거예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자해하는 것도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황당무계한 일들을 보고, 우선 이런 모든 것들이 나오면 바로바로 차단하고 쫓아가서 차단만이 아니라 처벌하게 해 달라고 하거든요. 우선 이거는 모니터링해서 차단하는 것만이 아니라 쫓아가서 처벌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세상을 떠나는 일이 없게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식약처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두 분에게 같이 질의기도 한데요.

대한민국에 물뽕이라고 있지요, 물뽕?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 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서영교 위원** 죄송하지만 1분만 더 주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위원장 추미애** 예, 마이크 넣어 주세요.

○**서영교 위원** 물뽕이라고 있는데 물뽕은 물에다가 마약을 넣고 나도 모르게 그걸 마셔서 정신을 잃고 추행을 당하거나 강간을 당하거나 이러면 이게 동의가 없어 가지고…… 처벌당하지 않는다는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물뽕, 약물 등등으로 인해서, 준강간에 심신미약 이런 게 있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물뽕을 했는데 왜 이게 처벌이 안 되지?’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물뽕은 몸에 들어가면, 이 사람에게 마약을 줬는지를 체크하는데 이게 검출이 안 된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제가 마지막 한마디 더 하면, 왜 이런 게 검출이 안 되는지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약물에 대한 대책을 만드는 게 두 분이 하셔야 될 일인 것 같은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답변 주시겠습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 위원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할하는 마약은 의료용 마약류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물뽕 같은 것은 불법 마약이라서 경찰청이나…… 수사의 영역이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하는 의료용 마약류는 좀 아닙니다.

○**서영교 위원** 두 분께 같은 질문인데요. 이게 몸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검출이 안 돼서, 경찰이 잡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검출이 안 되니까 이게 처벌이 어렵다는 거예요. 물에다가 약을 타서 먹였어요. 그런데 의료계에서, 식품의약처나 이런 곳에서 이런 것이 검출될 수 있게 개발하는 게 역할이 아니냐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위원님 말씀 주신 물뽕에 대한 것은 제가 지금은 답변드리기는 어려운데 지적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했고요. 현황이 어떻고 왜 그런 일이 있는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진단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 그거는 좀 확인하고 별도의 기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자살 유발하는 정보가 확인이 된 경우에는 복지부장관이 수사도 협조 요청할 수 있고 구조도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이 이번 개정안에 담겨 있어서 수사 요청하는 것까지도 이 개정안에는 들어 있다는 답변 드립니다.

○**서영교 위원** 요청해서 처벌까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마저 더 해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그러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 위원님, 아까 분석 관련해서는 불법 마약의 분석은 국과수에서 분석기법을 개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러니까 식약처장님께서 제안하고 의도하고 노력해서, 우리도 하고 여러분도 하고 그래서 대안을 만들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 (고개를 끄덕임)

○위원장 추미애 김용민 위원님.

○조배숙 위원 아니, 주진우 위원님도 신청했는데……

○위원장 추미애 다 드릴게요.

○나경원 위원 신상발언도 안 주고……

○위원장 추미애 이따 드릴게요.

○김용민 위원 장관님, 40항의 장애인복지법 관련해서 지금 신고의무자에 대해서 표준사업장의 사업주, 근로자와 지원고용이 실시되는 장애인의 직무수행지도인, 근로지원인을 추가하는 안으로 통과가 돼서 왔는데 이게 고용노동부에서 이견이 좀 있었나 봅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그렇습니다.

○김용민 위원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는 새로운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게 지금 협의가 된 겁니까? 어떻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협의가 됐고요.

○김용민 위원 그걸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고용부에서 문제 제기하신 거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장애인을 고용해서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주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거기의 기업주나 근로자를 신고 대상에 넣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이셨고요. 특히 근로자인 경우에는, 종사자인 경우에는 그분들이 직접 장애인이시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주셨고 저희도 동의해서 사업주와 근로자는 제외하고 장애인을 지원하는 지원 인력에 대해서만 추가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김용민 위원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제외하는 것으로 지금 정리를 하셨다는 거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김용민 위원 아래도 이 법의 실효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계시는 거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근로자의 한 50% 넘게 이미 장애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피해자기도 하기 때문에 그분들까지 넣어서 처벌 조항까지 넣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김용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되셨다니 지금 정리된 대로 처리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한편 32항에 보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거잖아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김용민 위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찬성하는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기재부에서 이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회 정수 증원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그 부분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이사회의 수를 15인 이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개정을 같이, 15인을 초과하는 조항이 같이 들어가야 그 법하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게 일치가 돼서 아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같이 제출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하고 연계돼서 심의가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민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15인의 이사 중에 한 분을 노동이사로 바꾸는 게 아니라 노동이사를 추가로 더 선임하려고 하시는 상황인 거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현재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의 이사 숫자가 이미 15명…… 그러니까 1명씩 늘려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15인을 둘 다 초과해 버리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초과할 수 있는 규정을, 같이 개정안을 발의하신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민 위원** 이게 기재위 법일 것 같은데 그러면 기재위에서는 논의가 되고 있나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현재 기재위에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어서요, 병행 개정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는데 그거는 법사위에서 판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미애**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시지요. 신상발언은 우선 국무위원들을 보내시고 난 후에 다음 국무위원들이 좌정할 그사이에 신상발언을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 토론 관련해서 조배숙 위원님.

아, 조배숙 위원님 아까 하셨네요?

○**조배숙 위원** 그런데 제가 조금 간단하게 하려고요.

○**위원장 추미애** 간단하게, 그러면 짧게 부탁드릴게요.

○**조배숙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넘어가려다가 여기 보니까 장관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응급과 관련해서 응급의료기관 간의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해서 전용 회선, 담당 인력 배치 의무화 이런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조배숙 위원** 여기에 대해서 지금 보건복지부 입장에서는 입법취지는 동의하지만 현재도 이미 그렇게 정보를 제공하는 체제가 있고 주기적으로 그걸 하고 있는데 이걸 의무화한다는 것은 지금 너무 업무 부담이 크다 그리고 또 민원 발생도 우려된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반대의견을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저희가 반대의견을 내지는 않았고 응급의료기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안 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보다는 응급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해서 예산 지원을 차등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다라는 일부 수정의견을 낸 건 있고요 반대의견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그래서 좀 보완이 됐습니다, 과태료 조항이 응급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걸로요. 이미 조율이 된 상황입니다.

○**조배숙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한병원협회는 반대하고 있고 대한의사협회는 신중 검토 그리고 종로구·서대문구, 일선 구청도 신중하게 검토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 서울시응급의료지원단도 신중 검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의견이 있는데 종합적으로 볼 때 장관님 입장에서는 어떠신지……

그래서 저는 보건복지부는 그런 의견으로 조정이 됐다면 문제가 없는데 다른 유관단체에서 이렇게 반대의견이 있으니 이거를 전체회의에 계류하면 어떤가 하는 의견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저희가 학회나 협회 의견을 받았고요. 조금 오해된 부분도 있어서 소통을 해서 이견에 대한 부분들은 조정을 했고요. 병원협회 같은 경우는 전용회선에 대해서 예산 지원을 해 달라는 내용이어서 이미 저희가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고 또 대한의사협회에서도 의료기관 정보를 넣으면 구급대원이 바로 수용 병원을 일방적으로 결정해 버리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는데 그건 아니라고 이미 설명을 드려서 기관에서 낸 이견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이견을 많이 좁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응급실 빽빽이’라고 표현되는…… 응급의료기관의 정보가 취합이 되고 수용 병원이 선정돼야 되기 때문에 전용회선이나 응급의료의 상황에 대한 정보를 올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이미 하고 있는 것을 좀 더 법적으로 근거를 만드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배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미애 수고하셨습니다.

주진우 위원님.

○주진우 위원 32항의 김용민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부분을 조금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아직 기재부하고 이견은 해소가 안 된 상황인 모양이에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제가 번호 가지고 법을, 어떤 법인지 말씀을……

○주진우 위원 아까 노동이사 관련된 법안인데, 이게 지금 이런 거잖아요. 건강보험공단이랑 심평원의 이사 숫자를 좀 늘려서 노동이사를 한 명 더 선임하려고 하는 건데 문제는 공공기관운영법에 이사 선임 숫자의 제한이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맞습니다.

○주진우 위원 15명으로 제한이 있으니까 이 법만 이렇게 고치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게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법안 상충이 있다는 의미인 거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그래서 병행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십니다.

○주진우 위원 그런데 이게 중요도를 따질 문제는 아니지만 노동이사 선임도 필요하고 이미 법에 있으니까 법의 취지를 살려야 되는데 기재부 설명을 지금 보니까 뭐나 하면 이미 현재 비상임이사들이 있으면 임기가 만료되면 자연스럽게 노동이사를 또다시 선임 할 수 있도록 부칙을 마련해 놨어요. 그러면 시간이 좀 지나면 노동이사가 선임되도록 되어 있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거를 즉시 임명하기 위해서 티오를 하나 늘리겠다는 건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15인 이상으로 제한해 둔 것은 입법취지가 있거든요. 이게 각 공공기관별로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거나 이사를 너무 늘려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측면이 있어서 아무리 많더라도 15명으로 제한하고, 민간 회사도 마찬가지지요. 이사회에 30명, 40명 오시면 좋지만 어쨌든 이사직을 유지하는 데 비용이 들고, 비상임이더라도 월급이나 수당이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비상임이사에 대한 시간

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15명 제한을 푸는 것은 이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 더 큰 제한을 푸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법안이 동시에 처리되지 않으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그 법 취지 때문에 의외로 16명을 안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이거는 같이 처리가 되든지 아니면 이 15명에 대한 판단이 선행적으로 먼저 나오고 그래서 기재부가 봤을 때도 15명 유지는 공공기관의 어떤 건전성이나 비용 측면에서 유지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여기 정원이 유지된 상태에서 다음 임기에 들어오는 분들이 노동이사로 선임되면 되는 문제거든요. 이게 선후 관계가 바뀌어서 이 법안은 지금 바로 통과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 계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그 부분은 법률이 충돌되거나 위법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병행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비상임이사 임기가 끝나면 새로 하면 될 수 있는데, 국민건강보험법에 보면 임원에 대한 조항이 있고 임원을 어떻게 구성해야 된다라는 숫자까지 적혀 있는 상황이다 보니 그게 초과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동조합·사용자단체·시민단체·소비자단체·농어업인단체 및 노인단체가 추가하는 각 1명, 이런 식으로 비상임이사가 다 이렇게 포션이……

○주진우 위원 그거는 보건복지부에서 거기에 있는 15명을 구성하는 데 어느 기관이 대표성을 갖느냐 이런 문제잖아요. 그 15명 내에서, 그 티오 내에서 조정할 문제고 장관께서 그것을 조정해서 부칙이나 관련 규정들을 개정할 문제지 그렇다고 해서 공공기관이 지금 수백 개가 넘는데 이 정원을 15명으로 제한해 둔 것이 16명으로 되면 다른 공공기관도 다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비상임이사 늘리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더 들고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제한해 놓은 건데, 이게 지금 균형이 안 맞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이해합니다.

○주진우 위원 그래서 그 15명 티오 관련돼서는 조정을 한번 해 보시고, 이 상태에서 통과되게 되면 일단은 비상임이사가 1명 늘어날지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공공기관 15명으로 제한이 유지되면 그것은 어떡할 거예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기재부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주진우 위원 이것은 기재부와 협의를 하셔서, 어차피 지금 이재명 정부의 재정건전성 문제와 티오 문제, 인력 관리 문제랑 직결되는 문제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기재부하고 협의 안 하고 넘어가기에는 기재부 이 규정이 굉장히 큰 규정이에요. 이게 훨씬 더 큰 규정이거든요. 더 원칙적인 규정이기 때문에 기재부와 협의될 때까지 좀 계류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기재부하고 더 협의하겠습니다.

○주진우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윤 위원님.

○이성윤 위원 식약처장님, 아까 서영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물뽕에 대해서 좀…… 이게 경찰에서 관할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모르시는지 아니면 일부러 표현하신지 모르겠

는데 혹시 물뽕을 한 번도 들어 보신 적 없습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 물뽕을 제가 언론에서 들어 본 적은 있고요. 식약처에서 하는 마약은 마약과 대마와 향정신성의약품, 세 가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성윤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범죄가 아니고요. 서영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이른바 물뽕이라는 게 GHB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 신종 마약류를 말씀하시는……

○**이성윤 위원** 이게 신종 마약류인데 국내에 들어온 것은 30년 가까이 됐어요. 이게 검찰에서 히로뽕도 아닌데, 물에 타서 마시는데 마시고 나면 기억이 없고 또 이게 데이트 강간 약물이라고 불리는 것 알고 계시지요? 이게 사회문제가 되고요. 이게 시간이 반나절만 지나면 인체에서 검출이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인체 내에서 스스로 합성이 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데이트 강간 약물로 이용당하고 있는데도 적발이 안 되는 겁니다.

서영교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물뽕, GHB가 합법적인 약물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범죄용으로 쓰면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에 의해 처벌을 하고 있지요. 그렇잖아요. 문제는 데이트 강간 약물로써 여성들이 이런 일이 많이 있는데도 사실은 수사기관에서 적발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무슨 범죄를 얘기할 때, 비동의 강간 얘기할 때 많이 나오는 얘기거든요.

제가 사실은 검찰에 있을 때 GHB 검출방법을 좀 개발해야 되겠다 또는 영국에 가면 간단하게 GHB를 테스트할 수 있는 키트가 있다고 그립니다. 이런 수입 문제라든가 용역을 주면 간단하게 24시간이 지나도 검출해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건데 이게 식약처 차원에서 연구할 수 있는 기반만 마련해 주면, 제가 알기로는 국내에도 교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영교 위원님 말씀은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GHB를, 물뽕을 먹고 나면, 여성이 마시고 나면 정상적인 사람처럼 활동을 하는데 시간이 지나도 기억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또 수사기관에서 그 약물을 검출하고 싶어도 검출이 안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식약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광범위하게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도 손을 놓고 있을 게 아니고 간단하게 검출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든가, 이게 얼마 안 들이면 용역으로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지금 여성들이 성범죄에 악용되는 걸 막아 달라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니까요. 식약처의 관할 분명합니다. 해 가지고, 돌아가셔서 연구를 하셔 가지고 진단키트라든가 또는 시간이 지나도 체내에서 검출해 낼 수 있는 방법 이런 부분을 좀 상세히 하셔 가지고 서영교 위원님하고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 저희 마약류대책협의회가 있는데요. 범부처 협의체가 있습니다. 그 마약류대책협의회를 통해서 한번 이런 안건에 대해서 논의를 해 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윤 위원** 오랫동안 수사기관의 숙원사업이에요. 그런데 돈은 얼마 안 든답니다. 외국 사례를 보시고 데이트 강간 약물로 썼을 때 수사기관에서 바로바로 꼭 찾아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렇게 해야만 지금 우리 사회에 모르지만 음성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1년에 수백 건이 무혐의 되는 이유가 물뽕, GHB에 취하면 정상적으로 보여요. 그런데 막상 본인이 신

고를 하면 증거를 찾을 수가 없다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 문제를 서영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한 것이니까 생각하셔 가지고 돌아가셔서 꼭 이 문제를 더 검토하셔서 말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 예, 위원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윤 위원 그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미애 제가 듣기에는 서영교 위원님 말씀과 이성윤 위원님의 말씀이 매우 시급하고 또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주제 같습니다, 마치 우리가 딥페이크 범죄가 생기면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수립하듯이. 그런데 아까 식약처장님께서는 그것 국과수 분석기법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딱 칸막이를 치시는데요. 지금 두 분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단순히 이 자리에서 그냥 나중에 보고드리겠다가 아니고 우리 위원회를 대신해서 법사위 전체 의견이라고 혜택을 하셔 가지고 범정부 차원의 대책에 대한 대안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 마약류대책협의회가 바로 범부처 대책 협의회기 때문에 관련해서 좀 더 논의하고 또 위원장님께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서영교 위원 시약을 가져오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 시약이요?

○이성윤 위원 검출해 낼 수 있는…… 그런 여성들을 보호해야 됩니다, GHB로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또 토론하실 위원님.

나경원 위원님께 부탁드릴게요. 신상발언은 좀 이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관계자 이석 이후에 하시기 바라고요 주제에 관련해서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나경원 위원 위원장님, 걱정하시지 말고 이따 할게요. 위원장님, 정말 회의 진행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위원장 추미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원 위원 제가 이따 신상발언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님, 15항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아까 조배숙 위원님도 지적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포괄적이다 그리고 목적 외 사용은 명시되어 있는데 실질 가장 중요한 동의 부분은 시행령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게 좀 맞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의견 수렴이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위원장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럴 때는 조금 더 합의 절차,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전체회의에 계류하면서 그사이에 보건복지부가 절차를 거칠 수 있나, 이런 부분 답변해 주시지요.

왜냐하면 개인정보위원회나 통계청, 건강보험공단 이렇게 쪽 의견을 모아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 의견 들으신 적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위원님 우려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가 통계청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하고 협의를 했고 또 검토한 결과 이견이 없다라는 걸 공문으로 회신을 받아서 부처 간에는 이 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통계청이 정보 제공하는 것

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개인정보 동의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검토를 해 주신 사항입니다.

○나경원 위원 건강보험공단하고는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공단은 법적 근거가 있고 이것도 실은 건강보험공단이 시행하고 있는 건강검진에 대한 평가나 분석이기 때문에 건보공단에서는 크게 이견은……

○나경원 위원 의견을 받으셨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이견은 제출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경원 위원 그러면 대한의협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의사협회에서는 이게 좀 광범위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주시기는 하셨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한의 범위와 목적 외 사용금지나 이런 것을 좀 명확하게 관리해서 조치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나경원 위원 사실은 검진자료의 활용에 필요한 자료라는 게 너무 포괄적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고 우리가 전체회의에서 한 번 더 논의해 보면 어떨까 하는데, 그사이에 보건복지부가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보건복지부가 좀 더 추가로 하실 일은 없으실까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이것은 검진데이터도 그렇고 건강보험공단이나 통계청 데이터가 대부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가 되고 있고 그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해서 분석하는 것에 초점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나경원 위원 저도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개인정보의 보호 쪽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사실 데이터 활용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AI나 이런 산업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도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우려가 있는 부분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한 번 더 전체회의에 계류를 하고 그사이에 좀 논의를 해서 저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것을 가져오시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고요.

지금 노동이사제가 전체적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노동이사가 도입되는데 국민연금공단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는 여기에 대한 이견은 없으신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노동이사제는 이미……

○나경원 위원 아니, 국민연금공단에 대해서만 말씀드립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국민연금공단은 이사회 숫자나 이런 게 별문제가 없어서요.

○나경원 위원 그러니까 특히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해서 그동안은 조금 신중한 입장이었는데, 그러면 입장에 변화가 있으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이사회는 공단의 운영에 관한 부분을 하는 거고요. 우려를 표시하시는 의견들은 연금정책에 대해서 뭔가 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우려인데 연금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기금운용위원회이거나 국민연금 위원회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 이사회에서 국민연금 정책을 결정하는 게 아니어서 크게 우려하지는 않습니다.

○나경원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저는 이사회 전체에서 그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괄적으로 노동이사를 전부 도입하는데 사실상 연금공단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우려가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정책 결정은 별도의 위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경원 위원** 이 부분을 보건복지부장관께서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관리하겠습니다.

○**나경원 위원** 그리고 그 밖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23항이라든지 또는 32항.....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36항 그리고 아까 기재부랑 논의하시기로 했던 이런 법안들은 한 번 더, 저희가 문제점을 지적한 부분은 한 번 정도만 전체회의에서..... 저는 2소위에 먼저 회부해서 저희가 논의를 좀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2소위 회부가 그렇게 불편하시다면 한번만 더 전체회의에 계류하시고 그동안 기재부랑 협의할 안, 주진우 위원님의 주장하신 것도 있고 하니까 이것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추미애** 잘하셨습니다.

○**신동욱 위원** 저도 짧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아까 안 하셨습니까?

○**신동욱 위원** 예, 못 했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신동욱 위원님 하십시오.

○**신동욱 위원** 장관님, 23항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 위기상황, 재난 위기경보 발령, 전국적 규모의 의료서비스 중단, 이 부분이 나오는데 이게 특히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대해서는 지금도 다른 법에 이미 이런 부분들이 다 규정이 잘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재난·안전 기본법에도 조사를 할 수 있는 조항은 있습니다.

○**신동욱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 놓으면 이쪽에서 하는 것과 그쪽에서 하는 것이 잘 맞지 않는다면 이런 상황이 너무 중첩돼서 법의 규율을 받는 상황에 대해서는 혹시 검토를 해 보셨나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재난·안전관리 기본법에도 있는데 거기에는 조금 더 포괄적인 원칙에 대한 부분이 있다 보니 공중보건 위기에 대해서는 보건의료기본법에다가 조사도 하고 대책 마련까지 할 수 있게끔 조항을 넣은 거거든요.

○**신동욱 위원** 지금도 코로나 사태나, 직접 경험을 하셨지만, 그 법의 문제 때문에 이런 것이 잘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사실은 느껴지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법을 새로 만들었을 때 오히려 혼선을 빚을 가능성 같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혼선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심각한 위기상황을 겪었으면 위기에 대한 영향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재발방지 대책을 만드는 것들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상임위에서 동의가 되어서 법안이 상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신동욱 위원** 그리고 전국적 규모의 의료서비스 중단 이런 것들이 어떤 상황인지 저도 이해는 합니다만 전국적 규모로 의료서비스가 중단되는 상황이라는 것은 거의 어마어마한 국가재난 사태나 이런 경우를 상정했을 것 같은데 이게 자칫 잘못, 말하자면 과잉 행정으로 이어지면서 복지부가 필요에 따라서 개인의 영업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

나치게 제약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우려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이것은 해야 된다는 의무 조항보다는 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약간 수정돼서 반영이 된 거고요. 그리고 아마 그게 개인의 어떤 업체나 기업이나 이런 데가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영향이나 아니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영향평가에 대한 부분에 좀 더 가깝다고 저희는 보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기 선언을 한 경우, 위기단계를 심각단계까지 올렸던 그런 경우는 할 필요는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신동욱 위원 하여튼 제가 질의는 마치겠습니다만 이 부분을 오늘 통과시키는 것보다는 2소위가 아니면, 나경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너무 포괄적이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전체회의에서 한번 토론을 좀 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미애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다양한 좋은 의견을 전전한 방식으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주 처음인 것 같네요.

서영교 위원님께서 아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2소위와 관련된 법안은 주로 타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마친 관련 법이므로 우리 법사위가 원래 체계·자구 수정 권한만 행사하고 나머지는 전문 상임위의 상임위 중심주의를 존중하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아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법안은 우리가 계속 붙잡고 있는 것보다는 신속히 통과시켜 주는 것이 여러 취지에 맞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제22항, 제24항, 제28항 및 제29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17항까지, 제19항부터 제21항까지, 제23항, 제25항, 제26항, 제30항, 제31항, 제33항, 제34항, 제36항, 제37항, 제39항 및 제41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7항, 제38항, 제40항의 법률안은 대체토론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의 법률안은 대체토론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의 법률안은 전체회의에서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은경 장관님과 오유경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추미애** 그러면 고유법 심사에 앞서 신상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원 위원님 발언하시지요.

발언시간은 3분입니다.

○**나경원 위원** 먼저 유감을 표시합니다. 신상발언은 저에 대한, 신상에 대한 공격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발언을 하는 것인데 모든 대체토론이 끝나고 나서 제가 발언을 하면 이 국회방송을 보는 분들은 저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님의 이 편향적인 회의 진행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시하고요.

제가 민주당 위원님들이나 사실상 민주당과 같은 편에 계신 비교섭단체 위원님들의 발언을 보면, 우리가 정치적 주장들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임위에서는 가급적이면 정치적 주장보다는 법안이라든지 이런 논의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간사 선임안 그리고 1소위 위원 배정안 이것이 명백히 국회법에 위반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께서는 지금 본회의에서도 교섭단체의 요청에 따라서 상임위의 위원을 배정하게 되어 있고 그것을 상임위원회에도 준용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일방적으로, 소위원회에 교섭단체인 저희 국민의힘의 요청에 의한 주진우 위원을 배정하는 대신에 일방적인 위원을 배정하지를 않나, 간사 선임에 대해서는 김용민 위원이 부결될 수 있다고 협박성 발언을 하는데 저는 우리 당이 추천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을 부결시킨 민주당의 폭거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이것은 뭐냐? ‘여야가 같이 국회를 합의에 의해서 운영하지 말고 그냥 여당 마음대로 할 테니 따라와라’로 들립니다.

여러분, 여당과 야당은 바뀌는 거고 다수당과 소수당은 바뀌는 겁니다. 국회의 오래된 관행이 이 의회민주주의를 운영해 온 겁니다. 만들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말 법에 반하는 의회 진행, 상임위 진행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간사와 협의 없이 오늘 상임위 전체회의 한 것도 불법입니다. 이 불법을 계속해서 쌓아 가는 것이 과연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그리고 위원님들, ‘내란’ ‘내란’ 하지 마십시오. 정말 민주당으로서는 ‘내란’ 붙여서 어떻게든지 우리 당 내란 정당 만들고 싶어서 저한테도 툭하면 내란 공범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특검 수사 가이드라인 주시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러나 이미 특검에서 발표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만하시고 저희 법사위에서 검찰청 해체, 과연 정말 헌법에 맞는지 이런 논의나 좀 건설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장께서는 적절하게 제지하시고 간사 선임 안건을 빨리 상정해 주십시오.

4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443)

43. 윤석열의 검찰총장 및 대통령 재직시 검찰권 오남용에 관한 진상조사 및 피해자 피해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서왕진 의원·민형배 의원·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23)
44.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88)

4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36)
4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51)
4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29)
4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46)
4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85)
5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64)
5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21)
5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44)
5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89)
5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04)
5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11)
5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35)
5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93)
5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34)
5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82)
6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24)
61.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33)
62.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92)
63.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72)
64.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21)
65.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38)
66.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78)
67.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25)
68.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02)
6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12)
7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11)
7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36)
7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24)
7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05)
7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39)

(17시25분)

○위원장 추미애 그러면 고유법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2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제74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33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노트북에 게재된 것으로 대체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먼저 정환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2항부터 제61항까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2항부터 61항까지 20건의 법률안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2항 최민희 의원 대표발의 공수처법 일부개정안은 공수처의 수사대상 범죄에 형법상 내란·외환죄를 추가하려는 내용으로 수사의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취지가 있습니다만 현재 형법상 내란·외환죄에 대한 수사권이 검찰·경찰에게도 부여되어 있어 관할권 중복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어느 기관에 부여할지, 공수처의 업무부담 가중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43항 서왕진 의원, 한창민 의원, 민형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윤석열의 검찰총장 및 대통령 재직시 검찰권 오남용에 관한 진상조사 및 피해자 피해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재직 시 검찰권 오남용의 진상을 조사하고 피해와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다만 진상조사위원회를 통한 진상조사는 형사사법제도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고려할 때 현행 사법절차를 통해 최대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형사정책적 방안 고려와 함께 논의할 사안이라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44항 이학영 의원 대표발의는 조문체계의 위치라 생략하고요.

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5항, 제49항 및 제51항 김승원 의원, 이학영 의원, 이해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형법 개정안은 내란·외환죄 등의 범죄자에 대해서는 가석방을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무기징역·금고 시에 가석방이 없을 경우에는 곧 절대적 종신형으로 전환되는 점, 법정형에 사형, 무기징역·금고 등이 규정된 다른 중대범죄와의 균형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46항 최민희 의원 대표발의 형법 개정안은 소요죄의 처벌 수준을 상향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 쪽으로 넘어가서, 다만 소요죄 관련 범죄의 법정형을 상향할 경우 소요죄의 강화라는 취지가 있지만 집회의 자유 제한이 일어날 수 있다는 부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47항 김기표 의원 대표발의 형법 개정안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등으로 방해한 자를 영장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이 개정안은 다른 공무집행방해 범죄와의 형별 균형성 등을 고려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사일정 48항은 생략하고요.

5페이지, 의사일정 제50항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형법 개정안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등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하고 고위공직자가 내란 모의를 방조·방치한 경우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행위로 간주하여 처벌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개정안의 국가와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입법취지를 고려하면서도 고위공직자의 내란 방조 행위가 정범으로 볼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52항 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형소법 일부개정안은 내란·외환 또는 반란죄의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를 거부·기피한 경우에 수사방해죄로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범죄수사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입법취지가 인정됩니다만 임의수사인 피의자 신문 출석을 강제하는 것이 헌법상 진술거부권과의 취지와 부합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3항부터 55항까지, 제58항 및 제59항 백혜련 의원, 박범계 의원, 윤건영 의원, 박수현 의원, 이광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형소법 일부개정안은 군사상·공무상 비밀 관련 압수수색 시 그 대상 범죄가 내란·외환죄 등이거나 해당 시설의 책임자가 수사대상인 경우 등에 있어서는 책임자 등의 승낙이 필요 없도록 하려는 것으로 국가 이익 침해를 이유로 영장집행을 막는 행위가 오히려 국가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역설적 상황을 고려할 때 그 입법취지가 인정됩니다.

다만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승낙요건을 배제할 경우 삼권분립 등의 측면에서 다소 신중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7쪽, 의사일정 제56항 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형소법 일부개정안은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 등이 검사 보관 서류·물건의 등에 대하여도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의 형사절차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라는 취지가 있습니다.

다만 검사 보관 서류·물건에도 피의자·피고인 외에도 참고인, 증인 등 제삼자의 개인정보까지 포함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7항 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형소법 일부개정안은 체포·구속 적부심사를 현행 관할법원 대신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청구하도록 하여 적부심사의 효율성 등을 기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현행법은 법관이 예단을 가지고 적부심사에 관여하지 않도록 영장발부 법관은 해당 체포·구속 적부심사 심문 등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한 취지 등을 고려하여 다소 신중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0항 이해민 의원 대표발의 형소법 일부개정안은 형법상의 내란죄·외환죄로 구속된 피고인에 대해서는 법원이 보석 허가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입니다만 보석을 전면적으로 막을 경우 무죄추정원칙과 신체의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될 수 있다는 측면과 전면 금지 시 개별적 특수성 고려가 아예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서 입법할 필요가 있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61항 이해민 의원 대표발의 치료감호 등에 관한 일부개정안은 형법상 내란죄·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이적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서는 치료감호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치료감호가 실질적 처벌 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국민의 우려를 반영한 입법취지로 이해됩니다.

다만 이러한 입법취지와 함께 범죄자의 정신질환 유무나 재범 위험성 등은 범죄자의 상태가 치료감호 결정에 중요한 요소라는 점 등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추미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혜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62항부터 제71항까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혜진 의사일정 제62항에서 제71항까지 10건의 법률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2항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감사원이 요구한 정보나 자료를 인멸하거나 위·변조하는 행위 등을 현행 감사방해죄와 별개로 규정하고 강화된 벌칙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유사 입법례나 그 법정형 등을 고려할 때 긍정적인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3항 이해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군형법 중 반란이나 이적의 죄로 구속된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보석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유사 취지의 관련 개정안 및 무죄추정, 불구속재판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66항 민형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군인 등이 상관으로부터 인권을 해치거나 오로지 사적 목적인 행위를 명령받은 경우 거부할 권리를 명시하고 그 사실을 상관 등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하되 보고의무 미이행 시 1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하려는 내용으로 군인의 적법한 직무수행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는 긍정적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군인 등이 위법한 명령을 받은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을 고려한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8항 최은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마약류 범죄에 이용된 계좌의 지급정지 제도를 신설해서 마약범죄로 인한 범죄수익의 몰수·추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일정 기간 내 공소가 제기되지 않으면 지급정지를 종료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다만 지급정지 요건과 이의제기 절차가 수사기관의 의견에 좌우될 여지가 크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69항 서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학대범죄의 범행 수단을 보도금지 사항에 추가하고 보도금지 위반 시 벌금액 상한을 상향하며 피해자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보도금지를 해제하는 내용으로 다른 법률의 보도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벌금형과의 균형, 아동의 건강한 성장이라는 이 법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0항 조지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의 체불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회사에 대해서는 합병이나

신규상장 등과 같은 회사법상 행위를 제한하고 위반 시 형벌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다만 회사법은 회사의 업무집행 및 대표행위, 주식·채권의 양도와 같은 단체법·거래법적 조율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이라는 점을 심사 시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추미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정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2항부터 74항까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정 제72항부터 제74항까지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 중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72항 강승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대상인 기록이 민법 제815조의 제3호에 따라 혼인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면 신고사건 본인은 그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재작성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제도에도 불구하고 정정 내용과 사항이 등록부에 남아 이해관계인에게 사회적으로 부당한 오해가 발생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등록부를 재작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권리 보호와 등록부에 대한 공적 신뢰를 회복하자 함에 그 개정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개정안에서 규정한 등록부 재작성 사유는 혼인 무효의 경우 등 제한적인 사항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 대법원 예규 등을 고려하여 관련 사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개정안에서 규정한 등록부 재작성 사유는 혼인 무효의 경우 등 제한적인 사항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 대법원 예규 등을 고려하여 관련 사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제74항 유상법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규정된 죄 중 임금 체불 등에 관한 범죄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제1호의 퇴직금 미지급죄를 배상명령 대상 범죄에 추가하려는 것으로 임금 및 퇴직금 체불 관련 범죄를 배상명령 대상 범죄로 추가하여 민사소송 절차 없이 형사재판에서 근로자에게 신속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와 그 부양가족의 생계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대다수의 임금 등 체불 사건은 근로자가 고용노동청에 진정하면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체불임금을 확정하는 과정을 거친 후 사용자가 확정된 체불임금 지급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고소와 재판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손해배상액 산정으로 인한 형사재판의 지연 문제가 크게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에 대해서는 임금 등 체불 범죄의 심각성과 근로자의 보호 필요성 및 배상명령 대상이 아닌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추미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정성호 법무부장관, 최재해 감사원장, 안규백 국방부장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여러 기관장님들께서 출석하신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기관에 대해 현안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시간은 5분씩으로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준태 위원님……

그러면 손 드신 위원님이 대체로 거의 다이십니다. 순서표대로……

○박준태 위원 일단 저 할까요, 위원장님?

○위원장 추미애 아니요. 그냥 순서표대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주진우 위원님.

○주진우 위원 법무부장관님, 오늘 형법 개정안이나 여러 가지 규정들 쪽 보셔서 아시겠지만 다분히 정치적인 법안들이 많아요. 내란이나 이적죄 같은 경우에 가석방도 안 된다, 출국금지에도 예외를 둬야 된다 이런 법안들이 제출돼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어 연쇄살인이나 아동 유괴나 굉장히 중대한 범죄가 많거든요. 그런데 사법체계라는 게 사실 일관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석방을 못 하면 못 할 범죄를, 형의 균형을 맞춰서 가릴 것은 가려야 된다라고 보는데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맞습니다. 어쨌든……

○주진우 위원 개별 법안들이 워낙 많아서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 법안들은 당시에 아마 정치적으로 집중적으로 발의된 법안 같은데 결과적으로 그냥 내란·이적만 가지고 특정해서 할 것이 아니라 다른 것까지 좀 논의될 수 있도록 법무부의 의견을 정돈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맞습니다. 국회에 광범위한 입법 재량이 있고 또 입법정책적으로 위원님들이 결단할 수 있겠지만 다른 법과의 균형 문제 또 양형체계의 문제, 전체 법체계의 정합성 문제 또 국민들의 평등권 문제, 이런 것들도 같이 논의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위원 그리고 범죄예방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요새 학부모들이 유괴 미수 사건과 관련해서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경찰에서 일단 사후 초기 조치가 늦어졌고, 무려 4명의 초등학생에 대해서 20대 남성 3명이 며칠에 걸쳐서 유인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장난이었다는 취지로 변명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3명이 혐의자인데 그중의 1명은 빼고 영장을 청구한데다가 실질적으로 영장이 기각된 이후에 어제랑 오늘 또 유괴 미수 사건이 됐는데 이게 성범죄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 굉장히 무서운 범죄예요. 초등학생이 엘리베이터에 탔는데 끌고 가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성범죄 전과자가 아르바이트 얘기를 하면서 초등학생을 유인해서 데려가려고 한다든지 정말 강력한, 큰일 날 범죄에 대해서 계속 연달아 일어났는데 초기에 이것을 세게 잡지 않으면 저는 이게 잘못된 시그널

을 줘서 그냥 범죄 저지르다가 실패하면 장난이었다라고 얘기하면 바로 석방되고…… 바로바로 엄정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이것 문제라고 보거든요. 더더군다나 경찰 수사 중이기는 하지만 영장 재청구도 지금 며칠째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초등생 유괴 시도와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는 법무부 차원에서 아주 종합적인 대책이 강력하게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런 사건들이 제대로 엄정하게 처벌되지 않을 때 이게 그 이후에 보복 범죄로 이어진다든가 또는 모방 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는 사안들이기 때문에 저는 늘 검찰에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봐야 된다……

그리고 영장 문제 같은 경우에 최종적으로는 법원에서 판단돼야 될 문제지만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라든가 사안의 중대성을 엄정하게 봐야 되겠는데 이게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중대한 사안이라고 하면 장차 검찰에서도 영장 청구 과정에서 그런 점들이 충분히 소명될 수 있게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진우 위원 영장 청구 기준이 들쭉날쭉한 것도 문제예요. 지금 손현보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33년째 한 교회에서 목회 활동을 하면서 매주 예배를 주관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도망할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선거법과 관련해서 사실 후보자 본인이 아닌 주변의 조력자가 관련된 혐의와 관련해서 법리적으로 다투고 있고 녹음·녹화가 다 돼 있는데 영장 청구 자체도 과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영장 청구 기준에 대해서 좀…… 그러니까 유괴범은 풀어 주고 목사님은 구속하는 선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행정처장님께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통 영장 발부와 관련해서는 개별 재판부의 판단이라고 보고 말씀 잘 안 드리는 데, 하지만 우리 국민을 위해서 기준은 명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보통은 선거 사범 같은 경우에 증거인멸 우려 때문에 영장이 발부되느냐의 여부인데 이것은 녹음·녹화가 다 되어 있고 더더군다나 목회 활동을 계속 주기적으로 하시는 목사님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건데 도망할 염려라고 하니까 어떤 객관적인 설득력하고 국민의 인식에서 차이가 있는 거고요.

(추미애 위원장, 김용민 간사와 사회교대)

반면에 유괴 같은 경우에는 장난이었다는 변명을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서 ‘그것은 그냥 수사기관이 알아서 한번 입증해 보세요’ 이렇게 해서는 곤란하거든요. 아동범죄는 납치·유인되는 순간 납치 아니면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지극히 극악한 범죄지 않습니까? 10건 중의 1건 구멍 나면 한 가족의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별 재판부의 기준과 상관없이 법원행정처 차원에서도 양형기준을 강화하고 여기에 대해서 미수범에 그치더라도 예방적 관점의 어떤 고려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한번 밝혀 주십시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아동범죄에 대해서 엄정한 양형이 필요하다라는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다른 사건 이 부분은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 있기는 하지만 말씀 주신 것처럼 재판 사항이라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 사항이고.

제가 한번 통계를 뽑아 봤습니다. 2024년도에 저희들의 판결 건수만 해도 한 86만 건이고 결정이나 명령 등을 합치면 685만 건 정도 됩니다. 그렇게 수많은 재판 한 건, 한

건이 다 개별 국민들, 더 나아가서는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저희들 잘 알고 그래서 그 개별 한 건, 한 건의 판결이나 결정이 올바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선명한 기준이 제시돼야 된다는 이런 지적에도 공감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민 다음은 나경원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나경원 위원 국방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방첩사 해체 법안이 올라왔어요. 그렇지요? 사실상 방첩사의 수사권을 폐지하겠다는 데……

대한민국에 간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지금 방첩사는……

○나경원 위원 아니, 대한민국에 간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위원님,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요. 방첩사 폐지 법안이 아직 상정된 게 아니고 국방부에 TF팀이 꾸려져 가지고 그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경원 위원 아니요, 오늘 수사권 폐지 관련해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올라왔거든요, 상정.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질의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간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항상 간첩은 조금씩 있어 왔습니다.

○나경원 위원 지금 우리 사회에 간첩이 없다는 국민들의 의견은 32%, 있다는 의견은 절반이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간첩은 누가 잡습니까? 국정원의 간첩 수사권 폐지, 방첩사의 간첩 수사권 폐지. 그러면 간첩은 누가 잡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러니까 방첩사에서 수사권이 폐지된다 하더라도 그게 국방부의 다른 기능으로 옮겨 가는 것이지 아예 그 수사 기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나경원 위원 아니, 누가 수사 기능을 합니까? 정보 수집한 데서 수사도 하게 해야지, 이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민주당이 하는, 이렇게 간첩 수사권을 국정원에서도 뺏고 사실상 방첩사에서도 뺏고, 결국은 지금 간첩 검거라든지 간첩 수사율이 뚝 떨어진 게 보여요. 지금 실질적으로는 경찰만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렇게 불안해하는, 간첩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간첩을 잡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2024년 11월에 법사위 1소위에서 통과된 간첩 관련된 법, 그러니까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어요. 간첩의 범위를 적에서 외국으로 바꿔서, 중국이라든지 기타 다른 나라에 의한 정보 침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개정했는데 아직도 통과를 안 시켜 줘요. 이 것도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성호 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저는 빨리 통과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위원 그러면 빨리 법사위원회께 이것도 좀 올려 달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법무부장관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검찰개혁법이라고 부르지만 저희는 검찰청 해체법이라고 부르는데, 제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보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개정하겠다는 민주당의 발표를 보면서 ‘일단 검

찰의 수사권을 다 폐지하자. 하고 보자’, 도대체…… 일단은 검찰총장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검찰청은 넓은 의미의 헌법상 기구라고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사실상 공소청법률에 의해서 헌법을 개정하는 꼴이 되는데 이것 위헌 아닙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경원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실질적으로 걱정되는 것이 결국 피해자나 또는 피의자의 인권이나 피해자의 일종의 고소·고발 권한입니다. 이의절차가 없어요. 경찰에서 한 것을 검찰에서 다시 하고 또 검찰에서 한 것을 항고할 수 있고 법원에 재정신청 할 수 있고 이런 절차들을 하나도 마련 안 하고 해체만 한다? 이것 큰 문제인 것을 법무부장관께서도 아시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해체라기보다도 지금 검찰청이 갖고 있는 기능을, 중대범죄에 관련된 수사 기능은 중수청으로 넘기고 그다음에 기소와 관련된 기능은 공소청, 이렇게 분리하는 겁니다.

○나경원 위원 그런데 그것도, 지금 사실은 도대체 어떻게 가르마를 탈지 이런 것도 결정 안 되지 않았습니까? 디테일을 정하고 그다음에 하든지 하지 국민의 인권, 피해자의 권리 이런 부분이 뚱뚱 침탈되는…… 이런 수사와 관련된 것을 생체실험 하듯이 하지 말아 주실 것을, 법무부장관께서 목소리 좀 키우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내란재판부 이것 한마디로 위헌 아닙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지난번에 저희들 입장, 즉 위헌적인 측면이 여러 군데 있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나경원 위원 내란특별재판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내란, 내란, 내란 해 가지고 내란 몫이를 하려는데 혹시 법원에서 내란 유죄 안 나올까 봐 이것 특별재판부하자 이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헌법 제101조에 보면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고 했는데 이 특별재판부를, 정치권에서 판사를 임명한다는 것 분명히 위헌이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헌법 27조에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사건 담당을, 법관을 지정하는 그런 시스템이어서는 안 되고 사전에 일반적, 추상적으로 헌법과 법률에서 사건을 담당하는 시스템을 정하고 그에 따라서 법관을 정하는 것이 헌법의 취지에 맞는 사무 분담이라고 보통 해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경원 위원 보통이 아니라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법원에서 명확한 의사를 표시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민 장관님, 방금 답변을 하시다가 안 하셨던 것 같은데 검찰이 헌법 기관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헌법기관은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민 그리고 검찰개혁법을 통하여 이의신청제도나 항고제도, 재정신청 이런 것들이 없다라고 혹은 논의가 안 됐다라고 말씀하시는는데 그런 제도들은 현재도 다 있고 그리고 앞으로 만들어질 형사소송법과 수사절차법에 다 포함되는 것이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충분히…… 그것은 당연한 거고요. 다만 공소청과 중수청의 관계에 있어서 구체적 내용들은 위원님들께서 추후에 입법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

습니다.

○**나경원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주시겠습니까? 1분만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김용민** 아니요. 답변이 불분명해서 답변할 기회를 드렸던 것이니까요 의사진행발언 드리지 않고……

박지원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신동욱 위원** 김용민 간사님, 이것 하시려고 우리는 간사 안 시키는 거예요, 혼자 위원장대리 하시려고?

○**박지원 위원** 신동욱 위원, 제 발언 순서예요. 아까 저한테 얘기했지요, 위원장 허가받고 하라고?

○**신동욱 위원** 의도가 너무 웃기잖아요.

○**위원장대리 김용민** 좀 그만하십시오.

○**신동욱 위원** 그만하는 게 아니라 그쪽이 더 그만하세요, 정말로. 이것은 너무 유치한 것 아닙니까?

○**위원장대리 김용민** 회의에 집중하시고요. 그렇게 비아냥대는 발언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좀 품격을 유지해 주십시오. 품격과 품위를 유지해 주시고……

○**박지원 위원** 법원행정처장님,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구속돼서 지금 재판 중이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렇습니다.

○**박지원 위원** 반드시 내란 청산해야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이번 내란 사건에 대한 엄정한 재판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박지원 위원** 물론 법과 절차에 따라서 내란 종식해야 되지만 해야 된다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일부에서 내란, 내란, 내란 한다…… 내란 일으킨 사람들이, 지금도 그 내란을 계속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얘기를 하는 것은 모순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무부장관, 도대체 윤석열이라는 작자는 검찰총장 출신이고 검사 아니에요? 그러면 구속된 사람이 구치소에서 핸드폰을 몰래 반입해 가지고 거기에서 애완견을 보고 있는 것은 적법한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당연히 불법입니다.

○**박지원 위원** 적법하지 않잖아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당연합니다.

○**박지원 위원** 그러면 교정행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제가 취임하기 전에 1차 구속기간 때 대통령으로서의 신분은 유지하고, 탄핵으로 파면되기 직전에 구속되어 있는 기간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박지원 위원** 거기에서 애완견만 봤겠어요? 문자하고 카톡해서 구체적으로 자기 범죄를 은폐하려고 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저희들이 엄중하게……

○**박지원 위원** 철저히 수사해서 진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알겠습니다. 지금 고소가 되어 있고요, 경찰에서 여러 다른 혐의까지 해서 종합적으로 잘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 철저히 해야 돼요. 어떻게 대통령 한 작자가 그런 못된 짓만 끌라서 하는 거예요. 추잡한 인간 아니에요. 잡범도 그런 일은 못 해요. 소위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핸드폰 몰래 반입해 가지고 거기에서 그런 짓 하는 것, 이건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당연한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하여튼 간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권력층에 있던 분들이 수감됐을 때 엄정하게 다른 수용자들과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수감된 사람들도 자기 체면을 생각해야지 그러한 짓을 하면 전직 대통령으로서, 전직 검찰총장으로서 나쁜 짓 아니에요. 철저히 조사 해서……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적절하고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사실.

○**박지원 위원** 그러십시오.

지금 조지아주 비자 문제로 오늘내일 귀국한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뉴욕 한인회장, 미주지역 총연합회장을 하면서…… 한인회장 업무의 절반이 불법 체류하는, 단속된 우리 동포들을 구해내는 일이에요.

미국이 인권 국가다라고 자랑하지만 실제로 이민국 가면 인권이 없습니다. 무자비하게 체포하고 발에 족쇄를 채우고 이런 일을 하는데 우리가 투자를 하고 그런 모욕을 당한 것은 소수민족으로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자괴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비자 문제는 법무부에서 하잖아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한국에서 출입국 관리와 관련된 이민이라든가 외국인에 관련된 비자 문제는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박지원 위원** 그리고 영사관 또는 대사관에도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사람들이 나가서 비자 발급하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저희들이 이 사건 터졌을 때……

○**박지원 위원** 아니, 그 사건을 보자는 게 아니에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어느 정부 부처보다도 먼저 법무관하고 영사담당관을 거기로 보냈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 사건을 묻는 게 아니라 제가 이번에 보니까 호주는 이민을 받아들이는 나라고 미국으로 이민을 보내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민 업무가 발전된 것 같아요. 그래서 호주는 미국에 투자를 할 때 처음부터 자기 투자한 회사의 이민 비자 문제를 협상해 가지고 원만하게 잘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우리가 그러한 문제를 당한 것은 불행한 일이지만 이것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법무부에서, 외교부에서 미국 정부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협상해서 투자를 했을 때 비자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업무로 전환해 달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꼭 그렇게 하도록 제가 건의하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용민 수고하셨습니다.

송석준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송석준 위원 공수처장님, 41항에 공수처의 수사대상에 내란죄·외환죄를 추가하는 내용이 지금 법안 발의됐지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예.

○송석준 위원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불법 비상계엄 사건에서 발생했던 문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법률안이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다시 말해서 지금 이렇게 여당 의원에 의해서 이런 법안이 발의됐다는 것은 당시 공수처가 무리하게 수사했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아무 문제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만 얼마나 이게 문제가 되고 또 경찰이 내란·외환죄는 현재도 이미 수사하고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두셔 가지고 그 당시에 많은 국민들을 속상하게 하고 그렇게 분노케 했습니까? 무리하게 공권력 행사를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그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법률안을……

○송석준 위원 할 수도 있는 것을 정확히, 제가 이번에 결산심사를 하다 보니까 제대로 예산 집행도 안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김용민 간사, 추미애 위원장과 사회교대)

오죽하면 지금 특별검사로 많이 차출되어 가셨더구먼요. 일을 제대로 못 하면서, 그러니까 다른 기관에…… 일을 못 하고 있으면 차라리 다른 데 가서라도 일해라 하고 데려가는 그 현실에 반성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위원님 말씀 취지는 알겠고 저희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하여튼 반성 많이 하시고 지난번에도 그런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정중하게 국민들께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에 보다 집중해 주세요.

그리고 법무부장관님, 이번에 특검법안이 또 올라왔지요? 43항, 특검법안이 또 올라왔어요. 검토 아직 안 하셨나요? 서왕진 의원 등이 발의한 특검법안이 또 올라와 있는데 지금 벌써 3개의 특검이 가동되고 있잖아요. 검찰조직과 기존에 모든 정상적인 수사조직이 있는데, 또 법무부장관님이 야당이 아니라 여당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특검이 3개가 진행이 되는데 그것도 부족하다고 인력을 대거 투입하고 기간도 늘렸다. 지금 민생 예산이 부족해서 난리인데 이렇게 무리하게 규모를 늘리고 또 기간을 늘려서 기존의 조직은 평평 놀고 있고 그러면 특검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나라로 가면 이재명 정부가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내일이 이재명 정부 100일 아닙니까? 기존 조직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그래도 재원이 부족해서 서민 민생 지원할 예산이 부족해서 난리인데 이렇게 자꾸 특검을 규모를 늘리고 기간을 늘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또 새로운 특검을 만든다고 그래요.

솔직히 법무부장관님으로서 지금 새로운 특검법안 올라온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왕진 의원은 특검법안이 아니고 내란범죄수사 촉구결의안 이것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송석준 위원** 법안으로 여기 나와 있는데 결의안이에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제가 좀 착각을 일으켰습니다.

특검법은 아니고요, '윤석열의 검찰총장 및 대통령 재직시 검찰권 오남용에 관한 진상조사 및 피해자 피해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이렇게 나와 있어 가지고 제가……

○**송석준 위원** 그러니까 진상조사하려면 그냥 해요? 이것 별도 조직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이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검하고 좀 다릅니다.

○**송석준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자꾸 기존 조직은 뭔가, 국내외로 우리가 처한 문제가, 현안이 산적해 있잖아요. 아까 제가 법무부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마약수사부터 중대 범죄들, 민생 사건들이 줄줄이 줄 서 있는데 이건 다 외면하고 오로지 권력 정쟁을 위한 특검수사에만 집중하자는 거예요. 이건 아니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위원님, 이건 특검은 아니고요.

○**송석준 위원** 특별조사 필요하다고 하지만 여기 뒤에 줄줄이 올라오는 법안 하나하나가 다 내란·외환을 위해서는 기존의 다른 중범죄, 사형죄에 해당하는 중범죄보다 더 엄격하게 뭘 하자라는 내용들이 줄줄이 올라와 있어요. 형사사법체계를 온통 내란 공방에 다 뒤죽박죽 만들어 보자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 사법질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법안들 이렇게 내란 프레임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장관님 제대로 사법질서 유지에 신경 좀 써 주시고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답변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송석준 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조금 이따 이것 끝나고 얘기하셔도 돼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선 조금 이따가 하시고.

국방부장관님!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위원장 추미애** 발언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준 위원** 방첩사의 수사권을 폐지하겠다고 그러는데 이런 법안이 올라와 있어요. 그것 바람직합니까?

○**위원장 추미애** 발언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폐지가 아니고요. 국방부 다른 부서로, 직할부대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그 수사권 자체가 국방부 내에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송석준 위원** 어디로 옮겨요? 대안을 마련했어요?

○위원장 추미애 송석준 위원님! 송석준 위원님!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것을 지금 고려하고 있는 겁니다.

○송석준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뭐만 문제만 있으면 다 없애겠다, 폐지하겠다 이런 것 좀 자제하시고요.

○위원장 추미애 나중에 보충 발언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준 위원님.

○송석준 위원 정성호 장관님 답변만 좀 들어 주시지요.

○위원장 추미애 송석준 위원님, 나중에 보충 발언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준 위원 아니, 제가 질의는 아니니까.

말씀 좀 해 주시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최근에 특검 수사 과정에서도 드러난 것처럼 상당한 범죄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하거나 기소되지 않은 사건도 적지 않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과거 여러 사례를 보면 검찰권을 상당히 오용했다 또는 남용했다, 또 그 결과로 기소됐지만 무죄 받은 사건들도 꽤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도 관련되어 가지고 어쨌든 서왕진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이 특별법안을 만들어 내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조사를 해서 그런 것들을 풀어 보자고 하는 취지인데 기본적으로 입법의 취지는 저는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법률적인 어떤 쟁점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좀 신중하게 논의해 가지고 처리하면 될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러니까요. 정치권의 이런 형사사법체계의 과도한 개입을 자제할 수 있도록 장관님도 여기에 대해서는 같이 적극 대응해 주세요.

○위원장 추미애 서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교 위원 서울 중랑구갑의 서영교 국회의원입니다.

얼마 전 서울구치소에 다녀왔습니다.

○송석준 위원 서영교 위원 질의할 때는 마냥 봐주더구먼.

○서영교 위원 시끄러워요!

○송석준 위원 저한테는 봐주지도 않아. 좀 봐주세요, 좀. 너무 차별이 심해.

○서영교 위원 서울구치소에 가서 윤석열 관련한 CCTV를 보고 왔습니다. 윤석열의 변호인들이 ‘교도관들이 그리고 특검 수사관들이 윤석열을 체포해서 소환하는 과정 속에서 강제행위를 했고 그리고 떨어뜨려서 허리를 다치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녀왔습니다. 가서 CCTV를 모두 보았는데 그 내용은 거짓말이었습니다.

CCTV 내용은 윤석열은 의자에 앉아 있었고 그 의자에는 바퀴가 달려 있어서 윤석열을 소환하기 위해 밖으로 데리고 나오는 과정 속에서는 바퀴를 밀고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도 안 나오기 위해서 주저앉아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이 자리에서 국민들께 다시 한번 알려 드립니다.

그래서 윤석열 변호인들은 허위사실에 거짓을 유포한 죄, 그 책임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법무부장관님, 교도행정도 맡고 계시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서영교 위원** 갔더니 윤석열, 특검이 소환하지 못하게 위에는 팔이 없는 러닝을 입고 있고 아래는 속옷만 입고 있었습니다. 이거 됩니까, 안 됩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규정에 어긋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규정에 어긋나면 이에 대한 처벌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관련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미진한 부분들이 좀 있어 가지고요. 전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러면 조폭이 거기서 위에 난닝구 입고 밑에 뺀스만 입고 안 나오겠다고 버티면 관련 규정이 미흡해서 놔두시겠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러면 이 사례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수형 생활 과정……

○**서영교 위원**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입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문제점을 저희들이 좀 제도적으로 정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저는 빠르게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례가 다른 사람에게도 남을 가능성성이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구치소에 가서 자료를 전부 다 받아 보니 면회를 밤 9시, 밤 11시 55분, 3월 7일에는 새벽 5시까지 했다,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알고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이게 됩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서영교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서울구치소 소장과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일단 위법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관련해 가지고 경찰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 처리할 것이고. 그다음에 저희들은 내부 조사한 것을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서영교 위원** 한참 됐습니다. 빠른 조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국민께 보고해 주십시오.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서영교 위원** 다음입니다.

화면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면)

제가 몇 번 여기서 틀었고요, 온 세상에 나온 녹취입니다. 녹취를 잘 들어 보십시오.

(영상자료 상영)

뭘 빨리 마무리 짓자는 거지요? 액수가 나오지요? 그리고 처벌 관련한 내용이 나오지요? 협조하면 참작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지요?

그리고 그다음 영상도 틀어 봐 주십시오. 지난번 입법청문회에서 구치소에 있었던 조경식 부회장이 나와서 한 말입니다. 틀어 주세요.

(영상자료 상영)

‘이재명’ 이름을 엮겠다, ‘이화영’ 이름을 엮겠다라고 권성동과 통화를 하고 권성동과

만났던 조경식 부회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은 지금 잠자고 있어요. 검찰이 어떻게 끼어들어서 저렇게 조작했는지 그리고 공작을 했는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 입법청문회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소위에서 했기 때문에 못 보셨을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지금 시간이 짧아서 저렇게만 트는데요. 이 내용들 그리고 여기서 돈이 오고 갔다라고 하는 증언까지 했습니다.

조경식 부회장은 구치소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구치소 안에 있는 사람이 왜 이곳까지.....

○위원장 추미애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교 위원 왜 이곳까지 나와서 저런 증언을 할까요?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쌍방울 건 김성태도 데리고 들어왔는데 배상윤을 데리고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배상윤을 데리고 공작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우리는 충분히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무부장관께서 이 상황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해서 검찰이 연루되어서 저렇게 한 나라의 대통령후보와 함께 정적을 제거하면서 그 후보를 엮어서 범죄자로 만들려고 했는지 이에 대해서 낱낱이 밝혀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답할까요?

○서영교 위원 예.

○법무부장관 정성호 지금 검찰이 이걸 수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저희들이 관련된 여러 상황들을, 주변을 좀 조사하고 있습니다. 상황들을 조사하고 있고 그런 게 좀 모아지면, 이게 특검이든지 아니면 공수처든지 어떤 형태로 수사해서 진상을 밝히는 게 옳은 건지는 저희들이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영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미애 장관님, 아까 의안번호…… 윤석열의 검찰총장 및 대통령 재직시 검찰권 오남용에 관한 진상조사 및 피해자 피해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의 대상이 바로 방금 서영교 위원이 문제로 지적한 사건도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진상조사할 의향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면 ‘그렇게 할 방법이 없다’ 그러시면 이 법에 대해서 동의하시면 되는 거예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이 법을 동의를 안 하시면서, ‘국회에서 알아서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십시오’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시면서 또 ‘그런 사건이 있으면 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위원장님, 분명히 제가 입법취지에는 공감한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 순서는 전현희 위원님 되겠습니다.

○전현희 위원 아까 국민의힘 나경원 위원께서 검찰청은 헌법기관이다, 왜냐하면 검찰총장이 헌법에 규정이 있어서 그렇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셨어요. 아마 검찰청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법안이 위헌이다 이런 주장을 하시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는 헌법과 법률체계에 대한 오해고 헌법 규정의 취지를 잘못 안 거다, 왜곡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PPT 한번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헌법 제89조제16호에 따르면 검찰총장 임명 시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리고 헌법 12조에 ‘검사’라는 그런 내용 그리고 16조, 영장 신청에 ‘검사의 신청’ 이게 나오는데 헌법에 ‘검사’는 총 두 번 등장하고 검찰총장은 국무회의 심의 규정 이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헌법 89조 16호의 목적은 헌법 78조에 따라서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 시에 신중을 기하도록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의무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즉 법률로 설치된 기관의 장인 검찰총장이나 합참의장이나 국립대 총장, 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 국영기업 관리자의 임명 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신중하게 임명해야 한다 이 규정이지 헌법상에 반드시 두도록 규정한 헌법기관은 아닙니다. 맞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동의합니다.

○전현희 위원 그 반증으로 방금 제가 적시했던 각각 기관장들이 만약에 나경원 위원 주장이 사실이라면, ‘검찰총장도 헌법기관이다’ 주장을 하려면 합동참모의장, 전국 40개 국립대학의 총장들, 대사, 국영기업 관리자 다 헌법기관 아닙니까? 그게 맞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아닙니다.

○전현희 위원 그 자리가 헌법기관이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맞습니다.

○전현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검찰총장이 헌법에 규정이 있다고 해서 헌법상 기관이라는 주장은 사실상 헌법의 취지를 왜곡하는 부당한 주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PPT 또 보시지요.

헌법기관을 규정하는 방식이 헌법에 따로 있습니다. 만약에 헌법기관일 경우에 예를 들면 감사원, 선관위 이런 헌법기관들은 필요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둔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헌법기관이 아닌, 임의적으로 설치 여부를 정할 때는 ‘국가원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경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이렇게 임의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둔다’라고 규정을 한 것은 헌법기관이고 ‘둘 수 있다’ 규정한 것은 헌법기관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맞습니다.

○전현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헌법에 검찰총장이라는 그런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검찰청은 헌법기관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검찰총장은 검찰청법에 의해서 설치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조직법과 검찰청법에 의해서 검찰청은 대검찰청에 두는 공무원 신분으로 사실상 헌법상 근거가 있는 헌법기관으로 볼 수가 없고 법률상 근거를 둔 법률기관상의 공무원인 거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맞습니다.

○전현희 위원 그래서 검찰청은 헌법에 설치 근거가 없는 법률상의 근거가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헌법기관으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청을 헌법기관이라고 계속 일각에서 주장을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추진되는 검찰개혁법에 관해서 사실상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얼토당토않는 주장으로 이것이 위헌이다 이런 주장을 하려는 것이고 이것은 잘못된 주장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알겠습니다.

○전현희 위원 그리고 헌법재판소 판결에도 보면 이 헌법상의 검사는 검찰청법상의 검사를 지칭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명시적인 판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청이 헌법상 기관이기 때문에 검찰개혁법안이 위헌이다 이 주장은 앞으로 안 하셨으면 좋겠다, 잘못된 해석이고 취지를 왜곡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데 동의하시나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전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미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태 위원님 발언 순서입니다.

○장경태 위원 서울 동대문 출신 장경태 위원입니다.

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5일, 금요일에 있었던 검찰개혁 청문회 보셨습니까? 다는 못 보셨어도 빨췌해서 보고는 받으셨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장경태 위원 청문회 내용이나 이런 것들에 많은 국민들께서 분노하시면서 검찰에 소속된 수사관들이 왜 법무부 산하가 아니라 또 중수청이 법무부 산하가 아니라 행안부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게 됐다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검찰이 정권의 하수인이었으면 수사관이 검사들의 하수인 아니냐라는 볼멘소리까지 나왔습니다. 저는 부디 수사관분들께서도 명예를 다시 회복하셨으면 좋겠고요.

관봉권 떠지 은폐 관련돼서 내부 감찰보고서 보고받으셨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받지 못했습니다.

○장경태 위원 아직 보고 못 받으셨어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장경태 위원 감찰을 담당하고 있는…… 누가 감찰한 것이지요, 2과장이?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경태 위원 대검 김성동 감찰부장은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임명했던 사람 아닙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그건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장경태 위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해당 감찰과가 어디 배정됐는지 확인하셨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저희가 감찰 지시해 놓고 구체적인 지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장경태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아무런 보고가 대검에서는 없었던 거네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장경태 위원 지금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과정에서 이 두 사람이 금요일에 있었던 청

문회를 앞두고 일요일 오후에 이미 둘이 만나서, 민간자택에서 모여서 진술 모의하고 입을 맞추고 심지어 진술자료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만약 범죄 피의혐의자들이 미리 만나서 사전에 입을 맞추고 그러면 그 말 자체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증거가 오염됐을 가능성이, 증언이 오염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것 아니겠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장경태 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 두 분이 진술 모의를 하고 그렇게 달달달 외웠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진술한 내용과 여기 국회에서 답변한 대답이 다릅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예를 들면 여기 보시면 진술문건은 제가 나중에 법무부에서도 감찰부 하시면…… 상설 특검에도 제공할 건데요. 여기에는 이 두 분이 모두 다 떠지를 뜯은 기억이 없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관봉권 본 기억도 없다라고 발언을 했거든요, 분명히.

그런데 개최 전의 진술문건을 보면 거기에 ‘이 관봉권을 왜 뜯어서 셨냐?’라는 예상 질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규정상, 책임구조상 재차 셀 수밖에 없었다’라고 스스로 적고 있어요. 자기들이 입을 맞추고 사전에 모의해서 진술을 다 입을 맞춘 자료라고 스스로 국회에서 부끄럽게 증언을 해 놓고 저희한테는 떠지를 뜯은 기억도 없고 관봉권 본 기억도 없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관봉권을 뜯어서 셨냐?’라는 질문에 ‘책임규정상 셀 수밖에 없었다’, ‘저는 평소대로 현금만 확인하고 등록했습니다’라고 적어 놨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증거 확보 과정에서도 증언에 대한 혹은 진술에 대한 증거능력도 있겠습니다만 서면으로 본인이 스스로 작성한, 그러니까 청문회장에 오기 전에 작성한 내용이 더 신빙성이 높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염 가능성은 더 낮은 것 아닙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장경태 위원 금요일 날 청문회장에 와서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한 내용보다 둘이 입을 맞춰서 생각을 정리해서 일요일 날 서면으로 작성하고, 심지어 거기의 문서 양식을 보면 정확하게 메모지까지 돼 있습니다. 메모지에 시각, 분까지도 다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메모지 양식도 검사들이 수사관들에게 지시할 때 쓰는 양식이라는 겁니다. 저는 검찰에서 일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 검찰에서 일하신 분들은 다들 딱 보시더니 다들 이것 검사들이 수사관 지시하실 때 쓰는 양식이다라는 증언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장관께서 정확하게 보고를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일단 감찰을 지시했기 때문에 장관이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계속 구체적 지시를 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 지시를 안 했는데요. 제가 수차례에 걸쳐서 검찰국장을 통해 가지고 대검에 이 사건을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수사하면 안 된다고 제가 여러 차례 강조를 했습니다. 반드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장경태 위원 강력하게 지시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최재형 검사와 이 수사팀 계장이 12월 17일 전후로 해서, 18일 전후로 해서 다 접수를 하고 나서요 1월 9일 날 떠지…… 여기 이 진술문건에 써 있습니다. 1월 9일 날 해당 검사에게 질책을 받았다는 겁니다, 최재형 검사에게. 질책을 받고 나서…… 당시 박건욱 부

장이나 이희동 차장검사한테 물어봤더니 4월 25일 돼서야 자기들은 보고받았다.

그러면 평검사가 1월 9일부터 4월 25일까지 3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부장, 차장, 검사장한테 보고도 안 하고 그 사건을 은폐합니까, 관봉 떠지가 사라졌는데? 심지어 관봉권도 비닐팩 뗀 관봉권, 거기에 관봉 떠지가 있었던 현금 다발, 관봉권이 떠지가 안 돼 있던 현금 다발 그렇게 종류들이 있었더라고요. 있다고 지금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과연 이 평검사가 부장, 차장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세 달씩이나 단독 범행으로 은폐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상설특검 추천을 요청해 주실 의향 있으십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럴 의향이 있고요.

일단 검찰이 만약 이 사건에 관련해 가지고 봐주기 수사를 해 가지고 나중에 그러한 혐의점이 드러난다고 하면 지금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담당 검사들은 반드시 제가 문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 이번에 청문회에서 나타난 그런 사항들이 수사에 반영돼 가지고 한치의 의혹이 없게 최선을 다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장경태 위원 이 수사관 두 명에 대해서도 업무배제 등의 격리조치는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이미 다른 부서로 지금 배치돼 있습니다.

○장경태 위원 그런데 다른 수사관들과 함께 있음으로써, 저도 여러 제보가 있거든요. 그 수사관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수사관이 있다라는 제보가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22일 청문회 때나 상설특검에 제가 자료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미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순서는 박준태 위원님 순서입니다.

○박준태 위원 국민의힘 박준태 위원입니다.

특검에 파견 간 검사들이 약 120명 정도 됩니다. 이게 1개 검찰청을 통째로 옮긴 규모입니다. 그런데 특검법 개정해 가지고 검사들을 추가로 더 파견하겠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법무부는 민생 사건 처리할 검사도 부족한데 부담이 되니까 이것이 ‘입법정책적 사안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게 입법정책적 사안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겠다는 우회적인 표현입니다. 민주당이 여당인데 지금 정부를 너무 괴롭히고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장관님, 이것 언론 보도 보셨어요? 어제 국민일보 기사인데요. ‘친정 없어지는 판에 수사하라니…… 특검 파견 검사들이 복귀 요청한다’ 이런 기사입니다. 특검에 파견 나가 있는 검사들이 복귀하고 싶다는 겁니다. 수사할 것도 없는데 계속 특검, 특검보들이 실적 내라고 압박하니까 그만하고 싶다 이런 뜻이겠지요. 검사들이 문제가 많으니까 검찰청

없애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특검에서 일하는 것은 괜찮은 겁니까? 검찰이 없어져야 할 이유로 꼽는 것들 강압 수사, 표적 수사, 여론 몰이식 수사 또 적법절차 위반한 그런 수사, 무분별한 압수수색 이런 것들 아닙니까? 이것 특검에서는 해도 되는 겁니까?

민주당 자식과도 같은 특검은 뭘 해도 다 괜찮고 정의 구현이고 민주당 장남이나 다름 없는 공수처, 공수처는 효자예요. 수사·기소권 다 가져도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장관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SNS나 플래카드 같은 데 특정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판사를 공개하는 그런 행위가 위법한 행위입니까? ‘이 사건은 누가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개하는 행위가 위법한 행위인지 적법한 행위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위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박준태 위원 그렇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박준태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이 자료 한번 보십시오.

이재명 대통령 당대표 시절에 관련 사건 수사하던 검사들 SNS에 사진, 실명 공개한 겁니다. 이게 박찬대 전 원내대표 SNS에 올라와 있고, 우측에 있는 사진은 민주당 소속 위원회에서 올린 검사에 대한 상세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개하는 게 법적으로 처벌받을 일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쉽게 이게 위법하다, 처벌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단언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박준태 위원 지금 무도한 정치 특검에 대해서도 특검, 특검보를 명단 공개하라는 요구가 엄청 높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도 법적인 문제는 아니다 이런 해석도 가능한 겁니다. 이미 과거에 이렇게 정치적 행위로써 이런 공개 활동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행위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래도 될까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다른 면에서 이것 내용적으로 파악을 해 가지고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든가 또는 명예훼손이라든가 이런 측면들은 별론으로 하고 이 자체만으로 위법하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준태 위원 다른 화면 좀 띠워 주세요.

지금 특검에 왜 문제가 많냐라는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치 편향성이 너무 눈에 보인다는 겁니다.

채 해병 특검 주도하는 이명현 특검의 SNS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이게 업무시간 중에 작성된 게 맞는데 ‘홍준표 충격 폭로, 신천지 윤석열과 결탁’ 이런 제목의 글을 공유하기도 했고 이재명을 사랑하는 모임에 올라온 글을 업로드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장도 보여 주세요.

심지어 자신이 직접 참여한 특검의 핵심 피의자 임성근 전 사단장을 ‘천하의 개XX’ 이렇게 표현한 글을 SNS에 공유했고 국민의힘 정당을 향해서 ‘정당 해산 사유가 있다’ 이런 글도 올리는 겁니다.

여기 사례 띄우지는 않았는데 조은석 특검에 참여한 특검보 중에 이윤재 특검보 있어요. 내란죄 성립을 기정사실화하는 그리고 구속수사해야 된다 이런 칼럼을 본인이 쓰기도 했습니다.

이런 검사들이 지금 이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특검을 하는 이유가 정치적으로 독립적이고 편향되지 않게 공정하게 수사해라 이런 것이 취지인데 어떤 유죄의 심증을 가지고 있는, 확신을 하고 있는 분들이 전부 다 이 수사의 수장이 되어 있고요. 그런 분들이 수사 지휘하니까 검사들이 당연히 반발을 하는 측면들이 있는 것이고 국민도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겁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그분들이 직무상 기밀을 누설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요. 다만 그것은 개인적인 어떤 표현의 자유의 범위 내에 들어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박준태 위원** 이게 어떻게 표현의 자유냐는 겁니다, 장관님.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순서는 이성윤 위원님이십니다.

○**이성윤 위원** 전주시을 출신 이성윤입니다.

질의를 드리기 전에 법원행정처장님, 어제 교섭단체대표연설 중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노상원 수첩이 현실로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라는 발언을 하자 의원석에 있던 국힘 한 의원이 ‘제발 그리 됐으면 좋았을 걸’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이것 살인교사, 예비·음모 아닙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적절한 발언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성윤 위원** 전현희 위원 표적감사 관련해서 2022년 8월 달에 고발됐는데 드디어 공수처가 전현희 위원 표적감사를 한 최재해 감사원장을 출석 통보했다고 그립니다.

공수처장님, 출석 통보한 것 맞습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예,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에 관한 것이니까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이성윤 위원** 감사원장, 언제 공수처에 출석할 예정입니까?

○**감사원장 최재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정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성윤 위원** 이 자리를 빌려서…… 전현희 위원에 대해서 정말 먼지털이식 표적감사로 한 사람 일생을 망가뜨릴 정도로 얼마나 힘들게 했습니까?

처장님, 수도 없이 공수처장께 전현희 위원 표적감사 수사 빨리해 달라고 했는데 3년 만에 소환을 했어요. 최재해 감사원장 구속수사할 예정입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불법 비상계엄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조금 수사가 늦어진 측면이 있고요. 그 나머지 수사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이성윤 위원** 너무 늦어졌습니다. 더군다나 최재해 감사원장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권의 개를 자처한 유병호 감사위원, 최달영 사무총장 그분들은 언제 소환합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지금 소환되어서 조사를 한 경우가 많고요. 여하튼 수사의 자세한 일정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이성윤 위원** 철저히 수사해 가지고 범죄 사실이 인정되면 구속수사하십시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예.

○**이성윤 위원** 법원행정처장님, 지귀연 판사가 9월 8일 16차 공판에서 12월 중에 심리를 마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저도 들었습니다.

○**이성윤 위원** 12월 중에 심리 마칠 수 있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쪽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지금 한 60회 정도 진행이 끝났고 50회 정도가 남았으니까 그리고 죽 진행해 오면서 이미 기록 검토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면 효율적으로 추가 진행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저희들은 이해를 했습니다.

○**이성윤 위원** 우리 국민들은 지귀연 판사의 도의적인 침대 축구 같은 재판 정말 불신하고 있습니다. 믿지 못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난 3월 달에 70년간 해 왔던 실무, 날짜로 계산하던 것을 윤석열에 대해서만 특별하게 시간으로 계산해서 풀어 준 적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얼마나 놀란지 아십니까?

그런데 최근에 윤석열이 다시 위헌심판 제청 신청을 했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이성윤 위원** 이 사건에 대해서 국민들이 또 염려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지귀연 재판부가 또 무슨 일을 할지. 만일에 위헌심판 제청을 받아들여서,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 제청을 하면 재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단되기 마련입니다만 그렇지만 본인이 12월까지 일단 전체적인 스케줄을 밝혔고 또 모든 국민들이, 지금 준비되어 있는 재판 중에 관한 법률까지 포함한다고 하면 온 국민이 지켜보는 그런 재판을 할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믿고 기다릴 생각입니다.

○**이성윤 위원** 재판 사항이라 믿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겁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이성윤 위원** 이러니까 국민들께서 정말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12월 달까지 증인이 무려 500명이 넘는다는데 언제 12월 달까지 마치고 또 국민들은 윤석열이 신청한 위헌심판 제청에 대해서 받아들여 가지고 재판을 정지할지 정말 불안해하고 있어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 요청에 대해서 저희들이 답변서를 드린 바와 같이 3개 사건에 대해서 275명 증인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 90명을 채택했고 68명을 진행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채택이 보류된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신청했다고 해서 모두 증인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라서 그런 걸 토대로 해서 아마 12월까지 공판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성윤 위원** 12월까지 끝날지 안 끝날지 모르겠지만 정말 국민들께서 ‘약은 약사에게, 내란 재판은 내란전담재판부에’ 이런 말이 나오는 얘기를 꼭 명심하십시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이성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미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욱 위원님 발언 순서입니다.

○신동욱 위원 제가 다른 질문 준비했는데 이성윤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법원행정처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박희승 민주당 의원님이 내란특별재판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라는 내부 비판이 있는데 조금 전에 위헌 요소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입니까? 내란특별재판부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이 판단하는 위헌 소지는 어떤 부분입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오늘 또 나경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는데 핵심적인 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헌법 27조에 헌법과 법률에 따른 법관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데 그것은 특정 사건을 재판하는 법관을 사람이 정하는 그런 재판이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시스템에 따라서 정해진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모든 국민들에게 보장했다라고 보통은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이 이 사건에서 제일 중요시되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신동욱 위원 대법원이 이렇게 명백하게 위헌 여부를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지금 민주당이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들을 너무 폭주하듯이 마구잡이로 내미는 부분에 대해서 정성호 장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부,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민주주의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법안에 대해서 보호를 하셔야 될 시점에 다다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대통령실 간의 이견이 있다는 얘기도 있고 또 정성호 장관님께서도 여러 가지 조금 우려 섞인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혹시 특검법을 추가로 입법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내란특별재판부법이 올라온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시거나 논의하실 생각은 전혀 없으십니까, 어떠세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지금 해당 법안들이 나름대로 입법취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내란 특검법이라든가 또는 김건희 특검법 관련해서는 너무나 지금 새로운 사실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고 또 당사자가 협조를 안 하기 때문에 수사 기간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그런 측면에서 입법의 취지가 좀 있어 보이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내란특별재판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법안 준비 과정에서 위헌적인 요소들은 많이 제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법원 밖에 두는 게 아니라 법원 안에 특별법원이 아니라 특별재판부로서 구성할 것 같습니다.

○신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할 게 많아서 마음이 급해서 그러는데. 워낙 특이한 법을 많이 내시기 때문에 한 가지만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대통령 재직 시절 검찰권 오남용’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저는 검찰이 이 상황을 자초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검찰이 이 상황을 초래한 것이, 윤석열 검찰총장 이전의 검찰은 팬찮았습니까? 굳이 이때만 법을 갈라서,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을 굳이 넣은 것은 아마 조국 수사를 염두에 둔 것 같고 ‘대통령 재직시’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익히 아는 이런 사건들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우리가 특정 사건에 대한 특별법을 만드는 것은 있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특정 시기에, 특정 조직에 어떤 사람이 수장에 있었던 시절을 이렇게 전반적으로 특별법으로 만들어 가지고 수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이게 대한민국 법체계에 맞는 얘기입니까, 이런 법들이?

○법무부장관 정성호 어쨌든 잘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들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방법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현시점에 내란으로 재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신동욱 위원 아니요, 그분이 잘못한 게 있으면, 검찰이 잘못한 게 있어서 오늘의 사태에 이르렀으면 그동안 검찰권 오남용에 대한 것 시간이 30년이 걸리든 50년이 걸리든 조사해서 검찰이 그동안 잘못한 것 다 피해 구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굳이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 이후의 시절만 검찰권 오남용 법을 만들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검찰권 오남용에 관련한 그런 부분들은 역시 조사의 대상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위원님들이 적절하게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동욱 위원 국회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민주당 입맛에 맞는 수사만 하겠다 이런 뜻이지요.

안규백 장관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안규백입니다.

○신동욱 위원 지금 특검법 내란특별재판부에 보면, 특검법을 보면 지금 군검찰도 특별검사의 지휘를 받게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신동욱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의 취지에 맞게끔 다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욱 위원 그러니까 입법의 취지에 맞는 게 무엇입니까? 입법의 취지에 맞는 것이 군검찰도 특별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하자는 게 타당하다고 보시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것은 약간의 여러 가지 논의를 더 해 봐야 될 사안 같습니다.

○신동욱 위원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거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입법취지가 약간은 좀…… 입법취지는 공감하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신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오동운 처장님, 조금 전에도 같은 질문이 있었는데 지금 내란·외환 수사 잘못 하신 거지요? 해서는 안 되는 수사 하신 거지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저희들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법원의 다섯 분의 판사님에 의해서 수사권이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정치권으로부터 논란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하는 법률안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욱 위원 그 부분을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법안을 낸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미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표 위원님 발언 순서입니다만……

그러면 다음 순서로 조배숙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조배숙 위원** 정성호 장관님, 자꾸 이게 검찰이 헌법상의 조직이다 아니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아까 헌법상의 조직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조배숙 위원** 그런데 저는 견해가 다릅니다. 많은 학자들의 견해도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검찰총장에 관한 헌법상의 규정은 89조 16호에 있지만 또 검사의 권한에 대해서 헌법 제12조 3항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16조에 보면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는 검사의 신청에 의해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검사의 영장신청권이 헌법에 명문으로 기재가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문명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규정을 보면 89조 16호의 검찰총장의 규정과 더불어서 불문율로 검찰의 조직이 헌법상 조직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학자들의 견해를 좀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법원행정처장님, 형사사법절차의 대원칙은 무죄추정의원칙 아닙니까, 그렇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렇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리고 지금 윤 전 대통령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지금 판결이 났나요? 아니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아직 나지 않았습니다.

○**조배숙 위원** 재판 중이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조배숙 위원** 그리고 법리에 있어서도 자꾸 민주당 쪽은…… 계엄에 대해서 이것이 잘됐다는 사람 없습니다. 다 그것 인정합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권한인데 사실 사법심사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해서, 미국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에요. 아니지만 우리나라는……

자, 그래서 탄핵이 됐습니다. 거기까지는 다 인정하지요. 그러나 탄핵이 됐다고 해서 바로 내란입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두 개가 직접적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고 별도로 재판을 거쳐서 내란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조배숙 위원**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판하는 것 아닙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조배숙 위원** 그리고 대부분의 헌법학자나 형법학자도 이것은 너무나 논리의 비약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계속 저쪽에서 ‘내란’ ‘내란’ 이런 프레임을 걸어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법률가적인 양심에서 본다면 이것은 잘못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정말 이것이 확실하게 그런 자신이 있다고 하면 왜 자꾸 전담재판부

를 만듭니까? 이게 혹시라도 무죄가 날까 봐 지금……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법률가로서는 다른 견해를 가질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꾸 특별재판부, 이제는 말을 바꿔서 전담재판부라고 하는데, 저는 이 부분은 내란죄에 대한 법리 구성에 대한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대법관은 현재 몇 명이지요, 13명입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저를 빼고 열세 분……

○조배숙 위원 그러니까 판결을 할 수 있는 분은……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대법원장님 빼고 열세 분 맞습니다.

○조배숙 위원 판결을 할 수 있는 분은 열세 분이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대법원장님 포함하면……

○조배숙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걸 26명으로 증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증원하는데 그 시기를 보면 1년에 4명씩 해 가지고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 재임 시절에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이 임명될 겁니다. 그렇다면 재판부도 이렇게 해 가지고 안전하게 지금 유죄로 만들려고 그려는 것 아닙니까? 이것 역시 내란죄의 법리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저는 대법원에서 또 법원에서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사법부의 독립이 달린 문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법원장회의가 금요일 날 있습니까, 9월 12일?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조배숙 위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대법원에서 분명한 입장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방부장관님, 지금 오늘 보니까 여기 이런 게 있어요. ‘부하가 상관으로부터 위법하거나 인권을 해치거나 하는 명령을 받을 때는 거부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조배숙 위원 그런데 저는 이게 조금 이상한 게, 이게 지금 국방위원회에서 논의가 됐습니까? 사실 이건 국방위원회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을 보니까, 그리고 또 아는 분한테 여쭤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명령에 대해서는 내리는 자가 법률에 맞게 명령을 내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법령에 맞느냐……

○국방부장관 안규백 부당한 명령을 냈을 때는 거기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게.

○조배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명령을 받는 사람이 그 판단을 하게 하면, 예를 들어 전시 같은 경우에 정말 위중한 시기에 만약에 그 판단 권한을 부하한테 주면 부하가 어떻게 전쟁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은 분명하게 군인체계에 관한 거니까 저는 이건

국방위에서 일단 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법사위에 고유 법안으로 올라와 가지고 제가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국방위에 이런 유의 법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파악해 보셨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한 60여 건 정도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기다려서 심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추미애** 국방부장관님, 처벌 조항이 있는 법률은 법사위 소관 사항입니다. 물론 국방부나 국방위원회에서 의견을 내실 수가 있겠지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다음 질의 순서는 최혁진 위원님 순서가 되겠습니다.

○**최혁진 위원** 최혁진입니다.

영상을 하나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좀 보여 주십시오.

(영상자료 상영)

윤석열의 이 발언을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법 가서 무죄 판결이 나더라도 검찰이 작성하고 한번 조지겠다라고 말하면, 마음 먹으면 사람 하나 인생 끝장 내는 것은 일도 아니다.

1심에서부터 대법까지 가려면 몇 년 걸리지요, 법무부장관님?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최혁진 위원** 그사이에 어쨌든지 간에 막대한 변호사 비용 들어가고 직장생활도 제대로 못 하고 가족 관계 깨지고 그러다 보면 빈민으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사실 검찰개혁 하는 가장 중대한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검찰의 조직적인 은폐·조작 사례들이 생각보다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에 많이 발생해 왔다라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유우성 씨 사건 다 아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담당 검사 이시원, 이문성 등이 이 사건이 나중에 대법 판결에서 어쨌든 검찰과 국정원의 조작이라는 것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대검 감찰에서 정직 1개월의 경징계를 받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저렇게까지 망가트려 놓고 패가망신시키고 징계가 겨우 정직 1개월이에요.

또 하나는, 그리고 보상까지 받아요. 이시원 전 검사, 2022년 5월 윤석열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임명이 됩니다. 자신의 검찰권을 남용해 가지고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친 자가 대통령실의 비서관이 돼요.

이런 사례는 또 있었지요. 문재인 정부가 끝나고 검찰이 문재인 정부의 조직적 통계 조작이라고 하는 이유로 문재인 정부에서 일했던 여러 사람들을 기소했습니다. 나중에 슬그머니 이 ‘조작’이라는 표현이 ‘수정’이라고 바꿨습니다. 통계에서 조작과 수정은 얼마나 다른 내용입니까? 조작은 그야말로 사기 친 거고요, 수정은 보정을 하는 거지요. 모든 통

계는 인구비율이라든가 지역 간의 격차, 세대·계층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나중에 보정을 합니다. 그게 수정이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최혁진 위원 수정을 갖다가 조작이라고 하고 결국 강신욱 전 통계청장, 경찰에서 무혐의 판결을 받습니다. 공식 사과나 보도자료도 하나 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관봉권 떠지 유실 이런 게 왜 나오겠는가, 결국은 우리가 검찰권의 보호 안에 있으면 뭔 짓을 해도 경징계로 끝나고 나중에 승진 등으로 보상받는다라고 하는 것들이 아예 체화돼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는 검찰개혁에서 법무부에서 꼭 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검찰 중에서 자신의 기소권을 남용해서 서민들 괴롭히고 시민들 괴롭히고 남용한 자들에 대해서 강력한 응징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 이게 단순히 그냥 경징계 이런 것 절대 없도록 직위해제, 해임, 다시는 변호사 업무도 하지 못하게 본인들 스스로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해야지, 저는 검찰 중에 모두가 이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일부의 검찰들이 이런 짓을 한 거겠지만 그 일부의 검찰들이 승승장구하는 것 때문에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강력한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릴 게, 최근에 내란·계엄과 관련돼서 고위공직자들 중에 여기 동조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해외로 도망가고 있어요. 이것 좀 잘 살펴봐 주십시오. 기획재정부 김동일 전 예산실장, 계엄 당시에 예비비 쪽지를 밑에 검토시킨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어디 가 있나? ADB에 파견 나가 있어요. 해외 가서 고액 연봉 받으면서 잘 먹고 잘살고 잘 놀고 있대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내란 당시에 경제비서관 했던 신중범, 제가 얼마 전에 제보받았습니다. 지금 조용히 싱가포르에 있는 국제기구 AMRO, 여기도 연봉이 한 30만 달러 이상 된대요. 여기 가서 놀고 먹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제보받았습니다. 이런 사람들 절대 국외에 나가지 못하도록 출국금지시켜 주시고 나가서 놀고 있는 사람들 국내 송환시켜서 철저히 조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저희들이 임의로 출국금지시킬 수는 없고요. 어쨌든 수사기관에서 출국금지 요청 온 것은 즉각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순서는 과규택 위원님 순서이나 자리에 계시지 않은 관계로 박은정 위원님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은정 위원 화면 좀 올려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면)

법무부장관님, 검찰개혁은 수사·기소 분리가 원칙입니다. 그러면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서는 검찰청법 폐지법안이 통과돼야 되는 것 같은데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불가피한 과정입니다.

○박은정 위원 맞습니다. 지금 현재 법사위의 심사 중에 있는데요.

검찰청 폐지법안이 위헌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박은정 위원 장관님께서는 월요일 날 검찰청 폐지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대검 차장이 이 검찰청 폐지에 대해서 위헌인 것처럼 본인이 윤석열도 아닌데 도어스테핑을 하면서 이런 망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청이 폐지되면 그 수장인 검찰총장도 당연히 폐지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검사의 수사권은, 아까 조배숙 위원님께서 말씀을 또 잘못하시던데 나경원 위원님 한테도 제가 지난번에 가르쳐 드렸는데 검사의 수사권, 영장신청권은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입법사항이다, 검사의 수사권이 폐지된다 하더라도 그 수사권을 누구한테 준다 하더라도 그것은 입법사항이지 그것이 위헌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여러 차례에 걸친 결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대검 차장이 저렇게 도어스테핑을 하면서 지금 정부에서 추진 중인, 법무부장관님께서 그날 검찰청 폐지에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날 아침에 위헌 논란을 본인이 스스로 자초하면서 말을 했습니다.

장관님, 저는 검사들이 얼마나 오만하고 거만한지 이것을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검찰의 오만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기관은 국민이 직접 선출하거나 다른 헌법기관이 합동하여 구성하는, 예컨대 국회·대통령·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감사원 등이 헌법기관입니다. 검찰청은, 검찰은 헌법기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자아 비대해서 본인들이 헌법기관이라고 지금 착각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저 대검 차장에 대해서 저 차장을 데리고 검찰개혁을 하실 수가 있을까요? 검사는 개혁의 대상이지, 개혁의 대상과 개혁을 얼마나 안 할지를 상의하실 수는 없습니다. 저런 대검 차장은 검찰개혁을 상의할 대상이 아닙니다. 검찰은 개혁의 대상일 뿐입니다. 상의해서 검찰개혁을 얼마나 안 할지를 하실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 대검 차장이—다음 것 보여 주세요—지금 저러고 있습니다. 본인이 정치인입니까? 왜 저런 것을 대검찰청 알림으로 알리고 있습니까? 본인이 저런 것을 해도 법무부에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니까 하고 다니는 거예요, 법무부에서. 대검 차장에 대해서 앞으로 검사들이 어떻게 나올 건지 말씀을 좀 드릴까요? 저것은 노만석 대검 차장의 검사들에 대한 집단행동을 선동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이후에 이프로스(e-pros)에 친윤 검사들이 글을 올리기 시작했고 앞으로 전국 검찰청의 검사들이 아마도 돌아가면서 성명을 할 겁니다. 성명서를 발표하고요. 그것은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집단행동입니다. 그것은 처벌의 대상입니다. 법무부에서 법무부장관님께서 이 검사들에 대한 집단행동에 대해서, 검찰개혁에 역행하는 이 검사들에 대해서는 진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장관님.

다음 것 보여 주세요.

친윤 검사, 대검 간부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도가 들어왔다. 무엇을 뺏기고 무엇은 지킬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 저 강도는 누구입니까, 저 강도는? 검찰개혁을 해야 되는데 검찰개혁을 하는 주체가 강도입니다. 저 강도는 누구입니까? 민주당입니까? 대통령입니까? 빛의 혁명 주체인 촛불시민입니까?

장관님, 이 대검 간부에 대해서 조치하셔야 됩니다. 대검 차장 그리고 검찰개혁에 역행하는 저 친윤 검사들, 검찰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진압하고 개혁을 이끌어 가시지 않으면 이 검찰개혁은 수포로 돌아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저는 대검에서 또 검찰에서 조직적으로 검찰개혁에 반발하는 흐름은 없다고 단언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검찰 같은 경우도 아마 검찰개혁 과정에서 일견 개인적으로는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검사들이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는 검찰이 고유의 임무에 충실히 해야 된다, 그리고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게 일반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형배 의원의 말도 그 말씀이 친윤 검사와 이렇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소문이 있다고 얘기한 거지 명백히 밝혀진 사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특정해 가지고 알려 준다고 하면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지 저희들이 판단해 보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은정 위원** 제가 특정해서 알려 드리면 조치하겠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박은정 위원** 판단이 아니라 조치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그것은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 누가 특정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사실을 조사해 봐야 알 수 있는 거지 단지……

○**박은정 위원** 당연히 조사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그러니까 저희들이 조사해 보고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박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미애** 수고하셨습니다.

검찰 간부가 ‘강도가 들어왔는데 무엇을 뺏기고 무엇을 지킬 것인지’라고 말한 것이 사실이라면 정말 심각합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어떤 취지로 얘기했는지 알려 준다고 하면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장관님께서는 검찰의 조직적 반발 없다고 확신한다 하셨지만 이프로스가 시끄럽다 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검찰조직이 내란 세력을 키운 조직이고 내란 세력을 탄생시켰고 또 내란을 엄호하고 내란범을 석방 지휘를 했습니다.

그들은 또 전관 특혜를 받으면서 서울구치소에 내란범 면회를, 내란범이 구속취소 결정이 있고 석방되는 그날 1박 2일 변호인들이 여러 차례 번갈아 가면서 내란 수괴와 특별면회를 한 것도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부패 카르텔, 심지어 나라를 찬탈하는 세력으로 키워진 이 카르텔에 대해서 국민들은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겨우 반발없다 그 정도 가지고 되겠습니까?

장관께서는 이 조직 전체가 법으로 반성문 쓰라고, ‘이런 법 잘 만들어 주세요’ 하실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법이 검찰이 뻔뻔하게 나오니까 개전의 정이 없기 때문에, 국회가 오죽 답답하면 제정법을 만들려고 하겠습니까?

윤석열의 검찰총장 및 대통령 재직시 검찰권 오남용에 관한 진상조사 및 피해자 피해 회복에 관한 특별법 만들기 전에 조직이 먼저 석고대죄 정도의 반성부터 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보완수사가 되었든 보완수사 요구가 되었든 주장하라고 하십시오. 지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위원장님.

○위원장 추미애 예.

○법무부장관 정성호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하고 그다음에 제가 7월 19일 날 취임한 이후에는 그런 일 없습니다. 저희들이 철저하게 단속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조치라든가 또 인사 과정을 통해 가지고 정부의 정책이라든가 국회에서 결정되는 바를 충실히 이행하려고 하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저는 장관님 취임 이후의 일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노만석 대검 차장이 검찰총장권한대행이라고 하면서 언론에 대고 검찰 자체가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 검찰청 폐지 조치가 마치 위헌인 것처럼 국민을 선동했습니다. 검찰조직 자체의 반발하라는 그런 지휘봉을 잡은 사람처럼 오만하고 거만합니다. 무엇이 그렇게 잘나서 국민을 상대로 겁박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검 차장이 그런 정도의 고압적인 자세인 것은 검찰조직 자체가 전혀 사과하거나 반성하는 자세가 아니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것이지요. 그 개인이 미워서가 아닌 겁니다. 그 조직 자체의 분위기를 그 한 장면으로 우리는 간파를 하는 겁니다.

그러하니 검찰 스스로 반성을 촉구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국민은. 그런 다음에 검찰이 왜 유지되어야 되고 설령 공소청으로 간다 하더라도, 기소권만 남는다 하더라도 그 기소권을 정의롭게 행사할 검사들인지 검사들의 모임인 것인지 국민은 보고 싶은 겁니다. 반성이 필요합니다.

장관님 보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장관님 취임 이후의 일을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면요 노만석 차장의 그 발언은 이게 위헌이다라는 그런 주장은 아니라고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다만 검사들이 현재 본인들이 맡고 있는 책무에 좀 충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얘기한 걸로 저희들이 이해하고 있고요.

○위원장 추미애 아닙니다. 보완수사는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의무다,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겠다, 보완수사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현재 검사들이 해야 될 일을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추미애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켜 왔습니까? 제가 보지를 못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지금 문제된 사건들은 대부분의 형사사건들은, 90% 이상의 형사사건들이 일반 국민들에 관계된 겁니다.

○위원장 추미애 경찰이 열심히 하더라고요, 대부분의 형사사건을.

○법무부장관 정성호 그중의 10% 정도가 지금 보완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그 10%의 권한을 가지고 5대 지청에서 위낙 사건 날조를 많이 해서 나라가 어지럽고 혼용무도했고요. 대통령이 그 힘을 믿고 내란을 일으켰던 것이지요. 그래서 조직 전체가 붕괴되는 겁니다. 사과하고 조직 자체가 전면적으로 대국민 석고대죄

가 필요하다, 그러한 때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소청으로 간다고 해서 다가 아닙니다. 다음 질의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균택 위원님 발언 순서가 되겠습니다.

○**박균택 위원** 국방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박균택 위원** 군사법원법, 군형법 개정안 내용 보셨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봤습니다.

○**박균택 위원** 반란죄, 이적죄에 대해서 보석을 허가하지 않게 한다, 가석방을 못하게 한다 또 군사안보지원부대, 아마 방첩사를 말씀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군사법 경찰관에서 제외한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입법 방향이나 입법취지 여기에 대해서 대체로 공감하십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공감합니다.

○**박균택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1소위에서 잘 한번 심사해 보겠습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박균택 위원** 현안 관련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광주 군공항을 무안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최근 무안군민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무안군민의 53%가 이전에 찬성한다, 반대한다는 견해는 38%입니다. 처음으로 찬성 의견이 과반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아마 이재명 대통령께서 무안 이전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한 것에……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렇습니다.

타운홀미팅이 끝나고 난 다음에 기준의 38%에서 약 15% 이상 무안 주민들의 여론이 많이 상승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박균택 위원** 이재명 정부 선언에 대해서 무안군민들께서 신뢰를 많이 보내고 또 전남, 광주의 공동 발전을 위해서 마음을 넓게 열어 주신 탓이 아닐까 싶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첫 여론조사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국방부는 군공항 이전의 주무 부처고 또 6자 TF의 참여 부서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렇습니다.

○**박균택 위원** 장관님께서 적극 나서서 함께 좀 해결해 주려는 의지를 보여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지금 저희 국방부 국장을 비롯해서 6개 단체의 부, 지자체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두세 번 했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6자 TF, 그러니까 정부 부처, 기재부·국토부·국방부·광주시·전남·무안 장들이 모여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논의를 해서 결실을 맺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박균택 위원** 감사합니다.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 문제에 대해서도 한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광주의 경우에 군공항을 이전하려고 했을 때 아무리 빨라도 10년 정도의 세월이 걸릴 겁니다. 그런데 군 보상 기준이 중소도시의 경우에는 80웨클 이상이면 보상을 해 줍니다

마는 수원·광주·대구의 경우에는 85웨클을 넘어야만 보상을 해 줍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렇습니다.

○박균택 위원 지역 간에 좀 차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액수도 보면 월 3만~6만 원인데 이전 시기, 전입 시기에 따라서는 절반으로 줄이기 때문에 1만 5000원에서 3만 원까지기도 합니다. 이것은 어떤 정당한 보상을 논하기에 앞서서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냉면 한 그릇이 1만 7000원인 곳도 있다고 하는데 한 달간 당하는 소음피해의 보상액이 1만 5000원이다 이건 정말 수용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아무리 군공항 이전이 빨라도 10년 이상은 걸릴 텐데 그 기간 동안은 참아라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고 대도시의 경우에도 80웨클로 그 범위를 확대해 주고 액수도 물가인상률이라든가 시민들의 자존심을 좀 생각해서 액수를 좀 증액하는 방안, 여기에 대해서 한번 장관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마는 원주·서산, 이 중소도시와 달리 대도시는 배경소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대도시와 중소도시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데, 군공항과 민간공항은 달리 비율에 따라서 민항이 많이 이착륙하는 데는 민간공항에서 지원을 더 많이 해 주고 그러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 가지 현실적 고려를 했을 때 이게 10년 이상이 다 지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책정을 해서 소음 피해되는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도움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균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미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민 위원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용민 위원 경기 남양주병 김용민입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어제 윤석열 측에서 내란특검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했고 헌법소원도 했다라는 보도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알고 계시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저도 보도를 봤습니다.

○김용민 위원 그런데 위헌 사유로 든 것이 보니까 영장주의가 배제됐다거나 아니면 언론에 브리핑을 허용했다거나 아니면 특검의 임명 과정이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이 보장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리고 검찰권을 박탈해서 권력분립에 위배됐다 이런 얘기들인데 지금 여기서 주장하는 내용들이 거의 다 기존 특검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이 있지 않았나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관련한 여러 쟁점에 대해서는 판단이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김용민 위원 그랬지요? 그때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법에서도 현재는 '국회가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방식을 통해 견제 장치를 마련한 것은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영장주의, 적법절차 원칙을 특검도 준수해야 하니 이것은 우려되지 않는다는,

위반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판결도 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김용민 위원 그리고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의 추천권이 배제됐다라는 주장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과거에 보면 최순실 국정농단이나 드루킹 특검 같은 경우에도 특정 정당이 추천권이 배제가 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알고 있습니다.

○김용민 위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얘기를 윤석열 측에서 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윤석열이 사실은 최순실 특검에서 국민적인 스타로 부상하면서 분에 넘치게 대통령까지 됐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과거에 대한 자기모순적 주장이고 발언들인데 법원에서 또 덜컥 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들여서, 헌법재판소에 보내 버릴까 봐 국민들이 노심초사하십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답변하기는 어려우시겠지만 국민의 우려, 염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위원님께서 위낙 법률전문가시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내란사건 재판은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고 또 위원님의 주도하에서 재판 중계에 관한 그런 법률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온 국민이 지켜보는 그런 재판을 맡는 법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처리를 할 것이라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김용민 위원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난번에도 구속취소를, 전 국민이 지켜봤는데 법을 왜곡 적용해서 구속취소를 해 버렸습니다. 그러니 국민들께서는 믿을 수 없다 또 걱정된다 이런 우려들이 지금 퍼지고 있어요.

그러면 윤석열이 왜 이렇게 자기부정까지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무리하게 할까. 물론 법원을, 지귀연 재판부를 믿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지만 실제 법적인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헌법재판소법에 따라서 재판이 정지가 되겠지요, 그렇지요? 지귀연 재판부가 만약에 받아들여서 헌법재판소로 보내면 재판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김용민 위원 재판이 정지되면 헌법재판소법 42조 2항에 보면 구속기간도 같이 정지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김용민 위원 그래서 사람들은 ‘구속기간도 같이 정지되니까 윤석열만 불이익 얻는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처장님,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윤석열이 구속돼서 재판받는 사건은 이 내란사건이 아니에요. 맞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직권……

○김용민 위원 직권남용으로 별도로 형사합의35부에서 재판받고 있습니다. 구속사건은 여기서 구속된 거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김용민 위원 그러니까 재판이 정지가 되더라도 구속기간이 같이 정지가 되는 게 아

니라 구속기간은 쭉 이어져서 6개월 지나면 도과돼 버립니다. 맞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저희들은 어쨌든 최종 기간은 1월 중후반 정도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민 위원 그렇지요. 다시 말해서 윤석열이 노리는 것은 재판이 정지되더라도 구속은 다른 재판부에서 지금 구속되니까 구속 정지는 같이 안 된다, 이걸 노려서 한번 해보자, 시간 끌어 보자 이렇게 들어간 것 아닐까 싶습니다. 제 우려가 타당한 우려입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다만 그 부분은 영장 관계를 다시 한번 저희들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취지, 어떤 경위로 그와 같은 신청 그리고 판단이 이루어질지는 저희들도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국민이 지켜보는 재판인 만큼 큰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민 위원 온 국민이 걱정하고 있어요. 법원이 진짜 국민에게 신뢰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하였다가, 정회 시간을 한 10분 정도로 하겠습니다. 잠시 편의를 보시도록 하고요. 30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7시 30분에 속개하여 보충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16분 회의중지)

(19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추미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질의 시간은 3분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희망하신 위원님들에 한해 질의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조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배숙 위원 주진우 위원님도 희망했는데요.

○주진우 위원 저 신청했습니다.

○조배숙 위원 아까 맨 처음에 주진우 위원님도 하도록 신청했는데요.

○위원장 추미애 우선 조배숙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주진우 위원님은 지금 신청하신 거니까……

○조배숙 위원 아니요, 아까 우리가 표를 만들어서 드렸는데요, 주진우 위원한다고.

○위원장 추미애 나중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작하십시오. 왜냐하면 다른 위원님들이 다 일정들이 있으셔서 이 순서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주진우 위원 저는 일정 없습니까? 저 신청을 했어요.

○조배숙 위원 신청을 했는데…… 그러면 제 뒤 타임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방부장관님, 오늘 보니까 파주 군부대에서 폭발 사고 났네요.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조배숙 위원 어떻게 경위랑 다 파악하셨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과악했습니다.

○조배숙 위원 아무튼 사망자가 없어서 다행인데 조치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교육용 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8명이었는데요. 10명 중에서 중상이 2명 정도 있고 경상이 8명인데 지금 수도통합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리고 지난 9월 3일 날 베이징에서 있었던 전승절 열병식 있지요. 북·중·러 3국 정상이 함께했습니다. 이것은 반미 핵 연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당시에 김정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 시진핑 각각 정상회담을 했고 푸틴은 물론이고 시진핑 또한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는 입도 뺏듯 안 했거든요. 지금 이렇게 북·중·러 간에 핵 클럽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다 핵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핵 클럽 수준의 전략적 공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는지.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제가 보니까 북한 억제를 옛날에는 한미동맹에서 빛 샐 틈 없는 동맹으로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은 ‘한국은 그냥 북한을 억제해라. 주한미군은 중국 견제를 담당하자’ 이런 식으로 동맹 구조를 변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지금 이런 움직임이 있다 이렇게 다들 감지를 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지난 3년 동안에 사실 김정은이 국제사회의 미아, 부랑아에서 어떻게 보면 플레이어로 등장하는 이런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그것이 더 공고화됐는데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지 한미 공조하에서 연합방위태세를 공고히 해서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대응태세를 갖추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런데 그게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인데 장관님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실제로는 북한 핵에 대한 이런 부분이 현재 미국에 있어서는 정책적인 1순위가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또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구금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나.....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런 여러 가지 제반, 전략적 유연성이나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한미 간의 여러 사항을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한미 간에는 더 공고하게, 북한 핵과 미사일의 고도화에 대해서 우리는 3축 체계를 더 강화하면서,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번 국방비 증액도 사상 유례없이 8.2% 올라갔고 단일 연도에 5조 이상 증액된 것은 사상 최초의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조배숙 위원 정말 우려가 큽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잘 준비하겠습니다.

.....
○위원장 추미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교 위원님 발언 순서가 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서울 중랑구갑의 서영교 위원입니다.

저는 어마어마한 권력의 부패 사건에 대해서 이 법사위 현장에서 알려 드렸습니다.
법무부장관님, 그렇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서영교 위원 영상 한번 들어 봐 주시지요.

KH그룹의 대표 배상윤의 발언입니다.

시간을 잠깐만 꺼 주시지요. 죄송합니다.

안 되나요? 그러면 그 내용을 갖고 와서 제가 이걸로 틀 수 있습니까? 지금 영상이
안 나오니까 제가……

영상만 띄워 주세요, 그냥 화면만.

(영상자료를 보면)

저 사람은 KH그룹, 쌍방울과 함께 그룹으로 있는 KH그룹의 대표 배상윤입니다. 배상
윤이 SBS에 인터뷰를 합니다. 올 6월에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그 인터뷰한 내용으로 뭐
라고 되어 있느냐면 ‘이재명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재명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영상입니다. 다시 한번 보내 드릴 테니까요.

그런데 그동안 이재명과 쌍방울이 대북송금에 연결이 되어 있는 것처럼 계속 이야기를
해 왔고 수사를 그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수원지검에서. 그런데 그게 아니다라고 캄보디
아에 있는 배상윤이 얘기를 합니다. 배상윤은 적색수배를 받았습니다. 캄보디아에 있는데
못 잡아 올까요? 잡아 옵니다. 그런데 안 잡아 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사람을 통해서
이재명을 엮으려고 했던 거지요.

그게 아까 조경식 부회장이 발언한 내용입니다. 이 법사위 와서 발언한 내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내용이 나왔더니 화들짝 놀라서, 어딘가 압력이 들어왔겠지요.
KH그룹에서 ‘조경식 부회장은 우리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띄워 봐 주세요.

화면에 보시면 KH그룹의 장철원 대표이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달해 놓았습니다.
부회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회장님’. ‘부회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화면 또 띄워 보십시오.

저기도 마찬가지로 KH그룹 호텔사업본부장이 저렇게 문자를 보냅니다. ‘부회장님 8월
10일 예약건 결제 완료 보고드립니다’. 또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문자?

(자료를 들어 보이며)

민들레, 워치독에 이 문자들이 수도 없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조경식 당시 증인이
자신의 핸드폰에 있는 녹취 그리고 문자들을 제공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KH그룹과 상관이 없다. 어떻게 해서 상관이 없는 건지, 그러면 저것은 무슨
말인 건지.

그래서 저는 이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것은 수사를 해야 됩니다. 법무
부장관께서는 ‘검사가 수사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이것은 권력의 부패입니
다. 당시 윤석열과 윤석열의 친윤들이 연결되어 있고 이 친윤들이 검사와 연결되어서 이
재명을 엮으려고 했던 이 사건, 엄청난 부패 스캔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부패 스캔들을 지금 수사하지 않으면 내란의 잔재는 정리될 수가 없습니다.

배상윤을 왜 데리고 오지 못합니까? 왜 잡아 오지 못합니까? 잡아 오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검찰은 충분히 잡아 올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는 이유는 그렇게 써먹기 위한 것이지요.

그런데 배상윤의 마음이 변했어요. 그래서 이번 6월 SBS에 인터뷰를 한 겁니다. ‘이재명은 대북송금과 아무 상관이 없고’, ‘그걸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인터뷰가 육성으로 나오니까 이것 다시 한번 보시고 수사가 어떻게 가능한지, 그러면 이 내용을 계속 조사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법무부장관 정성호 일단 배상윤의 신병 확보에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검찰에서, 물론 캄보디아와 사법공조협약이 돼 있다고 하지만 그냥 데려올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어떤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어떤 상태인지 좀 확인해 보고요.

어쨌든 검찰에서 지금 수사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데 검찰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떤 형태로 이 수사를 시작하게 됐는지는 저희들도 필요한 조치가 뭔지 좀 검토해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저희의 정부조직법은 향후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나뉘어지는 데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부패하고 나쁜 검찰이 있지만 좋은 검찰이 더 많습니다. 그 많은 검찰이 충분히 이 윤석열 권력형 정치부패 스캔들을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향후 저희 방으로 좀 전해 주십시오.

○법무부장관 정성호 위원님 지적하신 점 염두에 두고서 어떤 형식으로 특별하게 새롭게 어떻게 수사팀을 구성할 건지 좀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추미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진우 위원님 발언 순서가 되겠습니다.

○주진우 위원 법무부장관님, 저는 검찰 4법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수사권이랑 기소권을 분리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국가수사위원회가 만들어지면 국가수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은 어떻게 보장할 생각입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이게 추천, 저도 뭐 정확하게는…… 국가수사위원회법이 제출은 됐지만 지금 저희 당정협의회에서 이게 안건에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 올라오지는 않았고요.

○주진우 위원 이것 제대로 보셔야 됩니다. 국가수사위원회만 있는 게 아니고요 국가수사위원회 산하에 위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략 몇 개인지 혹시 한번 보셨습니까, 법안을?

○**법무부장관 정성호** 거기까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주진우 위원** 국가수사심의위원회가 있고요 또 수사민주화소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법치주의는 모든 사람한테 여론 눈치 보지 않고 정치권력 눈치 보지 말고 하라는 건데 수사민주화소위가 뭘 하는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역할을.

그리고 국민주권전문위원회도 있습니다. 이 역시 제목만으로도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분야별 소위원회가 또 따로 있고요. 상임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이 위원회 조직이 국가수사위원회 밑에 한 15~20개 정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위원회별로 한 100여 명의 위원이 생기는 거고 그 100여 명이 어디 법조인들만 들어가겠습니까? 당연히 시민단체분들이나 이런 여러 가지 각계각층에서 들어가게 되면 그분들이 다 국가수사위원회를 통해서 수사에 관여할 수 있는 통로가 생기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돈 없고 백 없는 국민들만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는 거예요. 내가 피해를 봐서 뭔가 고소를 해도 피고소인이 그 많은 위원회의 위원들 중에 누구 알면 또 거기 국가수사위원회는 온갖 걸 다 요구할 수 있거든요. 현장조사도 할 수 있고 자료 요구도 할 수 있고 재검토 요청도 할 수 있고 온갖 걸 다 할 수 있는데, 사법적인 통제 기능을 하고 인권을 보장해야 되는 이 기관이 책임성 없게 위원회 몇십 개가 난립해 버리면 이것은 누구도 감당을 못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논의에 대해서 장관님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접했지만 저랑 비슷한 문제의식을 좀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리 시기를 너무 못 박지 말고…… 제대로 논의를 하지 않으면 이것 진짜 큰일 나는 거거든요. 일반 국민들이 어느 기관을 어디에 고발해야 될지 모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처리 시기와 검토 방안에 대해서 한번 좀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법무부장관 정성호** 따로 복안이 있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법안이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도 어떤 사항에 관련된 점에 대해서는 법무부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할 거고요. 다만 국가수사위원회에 관련해서는 어쨌든 위원 구성에 있어서 공정성과 중립성이 확보될 수 있게 그렇게 좀 설계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위원** 위원이 100명이 넘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순서는 신동욱 위원님 차례가 되겠습니다.

○**신동욱 위원** 법무부장관님, 저는 임은정 검사님 같은 분을 보면 검찰개혁을 꼭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서 민주당의 이해관계와 관련이 있는 검사는 전부 다 나쁜 검찰이 되는 것인지 잘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관봉권 떠지 분실 사건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그 떠지라는 것이 없어진 것 이걸 가지고 특검을 해라 또는 국회에서 무슨 청문회를 하겠다, 저는 정말 블랙 코미디처럼 느껴집니다. 그 떠지라는 것이 분실된 것 그 하나를 밟혀 내지 못할 정도로 지금 대한민국 검찰이, 더구나 지금 여당의 검찰 아닙니까? 그게 이렇게 심각한 문제입니까?

아니, 사건 자체가 심각하다는 말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저도 떠지 사건을 옹호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감찰이 됐든 검찰 수사가 됐든 꼭 거기 그 떠지를

다룬 여직원이 이 청문회장에 불려 나와 가지고 좌표가 찍히고 인신공격을 당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까지 우리 검찰개혁의 명분으로 삼으려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걸 더 구나 대통령이 특별검사까지 언급한 것은 나가도 너무 나간 것이다. 대한민국 검찰, 대한민국 법무부가 그렇게 무능합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어쨌든 이게 해당 수사관의 그야말로 단순 과실인지 아니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인지는 좀 더 수사를 해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신동욱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사가 더 효율적입니까? 이 청문회장에 나와서 그 여직원이 ‘아니, 이건 정말로 제가 업무 미숙에서 온 실수입니다’라고 얘기하면 더 이상 뭘 물어볼 게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지금 어쨌든……

○**신동욱 위원** 오히려 수사를 통해서 밝혀 내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이지. 거기에 관여돼 있는 모든 검찰 직원을 여기 주르륵 앉혀 놓고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그분들을 압박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제가 그냥 몰라서 베린 거예요’ 이러면 뭘 더 물어봅니까? 그런데 왜 청문회 합니까? 저는 그걸 가지고 검찰개혁의 명분으로 삼고 지금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비판 여론을 물타기 하기 위해서 자꾸 이런다라고밖에는 생각이 안 됩니다.

두 번째, 떠지만 나오면 그 돈이 어디서 나온 건지, 누구로부터 뇌물 받은 건지 다 나옵니까? 그건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그건 거기 떠지에 일자라든가 또는 최초에 어느 곳에서 출발했는지 등등……

○**신동욱 위원** 출발했는지 그런 정도만 알 수 있는 것이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수사의 단서를 좀 만들어 주는 것 같습니다.

○**신동욱 위원** 그 떠지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 뇌물 수사의 단서가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지금 자꾸 여론전을 펼치시는데, 저는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아주 하급 직원의 실수 하나를 가지고 검찰조직 전체가 매우 부도덕한 집단이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검사로 밝혀야 된다 그런 것 하지 마시고요.

저는 대한민국 현정사상 최악의 정치검사는 임은정 검사라고 생각합니다. 동부지검 지금 일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그것 감찰 안 하십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맡은 일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신동욱 위원** 아니, 그렇게 정치적 발언을 많이 하는 것이 맡은 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건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일단 검사장으로서 본인의 직분에……

○**신동욱 위원** 아니, 수사를 열심히 해야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신동욱 위원** 그런데 무슨 검찰개혁 사적이니 오적이니 이런 얘기를 하고 대통령을

직격하고 말이지요,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적당합니까? 그런 것 하나도 감찰 안 하시면서 무슨 떠지를 특별검사를 하고 이것은 저는 정말 선후가 많이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떠지 관련해서는 대검에서 엄정하게 일단 수사는 하고 있습니다.

○신동욱 위원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

○위원장 추미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태 위원님 순서가 되겠습니다.

○박준태 위원 국민의힘 박준태 위원입니다.

아까 특검, 특검보가 유죄의 심증, 어쩌면 확신에 가까운 그런 SNS 게시물을 올리고 칼럼을 쓰고 이런 것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특검제도의 핵심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아니겠습니까? 장관님, 이런 게시물이나 기고문이 과연 적절합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법무부장관 정성호 제가 그런 것에 관련해 가지고 판단하기는, 말하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박준태 위원 이게 적절치 않은 거지요, 장관님. 거대 여당이 지켜 주고 있으니까 위법적인 증거 수집, 무분별한 압수수색, 특검이 과잉수사를 해도 감시할 기구가 없습니다. 무소불위예요.

국회가 특검 감사할 수 있습니까, 장관님? 없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없습니다.

○박준태 위원 그러면 법무부가 특검 감찰하거나 조사할 수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없습니다.

○박준태 위원 2025년 대한민국에 어떤 공적 기구가 견제자 하나 없이 운영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기관장님들 한번 보십시오. 국회가, 시민단체가, 언론이, 정부기관이 다 균형과 견제자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막강한 권력을 가진 검찰을 해체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여당이 역설적으로 아무런 견제 장치도 받지 않고 있는 그런 무소불위 특검을 만들어 낸 겁니다.

그리고 특검, 특검보하고 계신 분들 이제명 정부에서 어떤 공직도 맡지 않겠다 선언하시라 이렇게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왜 아무런 얘기를 안 합니까? 특검에서 맹활약해 가지고 야당 초토화시켜 가지고 그 공으로 무슨 한 자리씩 하시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 수사를 하는 겁니까? 그분들이 지금 정부에서 특검수사 끝난 이후에 어떤 자리를 하는 게 그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그 점에 관련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건 적절치 않아 보이고요. 저는 어쨌든 지금 특검들이 맡고 있는 사안이 너무나 중대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내란 혐의도 그렇고 김건희 씨의 국기문란 행위는 그 끝이 어디인지 모를 정도로 지금 심각하게 보이고 있고 특히 매관매직 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박준태 위원 그러니까 마음대로 특검 기간 연장하고 수사인력 더 보낸다 이렇게 법 개정해 가지고 정당성을 만들어 주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장관님, 5선 국회의원 하시는

동안에 특검법이 운영되는 동안에 특검 개정안 통과된 적 한 번이라도 보신 적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박준태 위원 제가 여기까지 여쭙겠고요.

법원행정처장님, '내란 혐의에 대한 특별재판부가 설치되면 정의로운 법관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 재판 재개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습니다. 곤란하실 테니까 제가 진위는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법원 내에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우려가 큰 건 사실이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그런 목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박준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만 더 강조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여러 가지 이 재판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저희들도 매우 중시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것이 위헌성 시비 때문에 재판의 완전성이나 혹은 현재 결정에 의해서 그게 무력화되어 버린다고 하면 국민 전체, 우리나라 전체에 큰 재앙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신중하게 헌법적인 가치, 정신을 존중하면서 재판이 이루어지기를 저희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박준태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정 위원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박은정 위원 화면 좀 올려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면)

최재해 감사원장님, 공수처 소환 통보받으셨지요? 맞습니까? 공수처 소환 통보받으셨지요?

○감사원장 최재해 예.

○박은정 위원 출석하실 건가요?

○감사원장 최재해 예, 일정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은정 위원 전현희 권익위원장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수사 의뢰하셨는데 그것 경찰에서 수사했고 대검에서 대전으로 보내서 대전에서 경찰에 다시 보내 가지고 수사를 했는데 그 사건 무혐의 났거든요.

표적감사 그렇게 하신 것 윤석열 지시받아서 하신 건가요?

○감사원장 최재해 그런 일 없습니다.

○박은정 위원 저거 보세요. 윤석열 국정원에 고발 사주했다는 것 아니에요. 얼마나 심각합니까. 세상에 전직 국정원장을 고발 사주해 가지고 서해 공무원 사건, 무고하게 지금 재판받고 있어요. 삭제 지시 안 했는데 자료가 국정원에 그대로 있는데 그것도 확인 안하고 알면서도 고발 사주해 가지고 기소하라고 한 것 같습니다.

○감사원장 최재해 저것은 국정원에서 자체적으로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정 위원 그러니까요. 감사원도 윤석열 사주받으신 것 아니냐 제가 그 말입니다.

○감사원장 최재해 그렇지 않습니다.

○박은정 위원 그러면 전현희에 대해서 표적감사 왜 하셨어요? 무혐의 났는데, 나중에.

○감사원장 최재해 표적감사 아니라고.....

○**박은정 위원** 표적감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사원장 최재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하면서……

○**박은정 위원** 헌법재판소에서 그게 기각된 이유는 수사 기록이 헌법재판소에 안 갔기 때문이에요, 검찰이 안 주니까요.

○**감사원장 최재해** 그것은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박은정 위원** 이런 사건들 때문에 윤석열의 검찰총장 및 대통령 재직시 검찰권 오남용에 관한 진상조사 및 피해자 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해서 지금 법사위에 와 있는 겁니다.

지금 의사…… 43항에 있는 법이 윤석열의 검찰총장과 대통령 재직 시의 검찰권 오남용에 관한 것이거든요. 저는 감사원의 감사 오남용에 대해서도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처벌받으세요. 그런데 저는 이것 감사원이 혼자서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서 아까 서영교 위원님 지적하셨던 KH 조경식 사건, 법무부장관님, 이게 만일에…… 제가 지난번 소위 때 조경식 증인이 나와서 얘기하는 것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권성동에게 48억 로비, 그다음에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측에 1년에 190억 수익을 올리는 골프장 운영권을 5년을 줬다는 거예요. 1000억이에요, 1000억. 이게 만일에 민주당 의원이었으면 어땠을까요? 별씨 구속이 됐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민의힘에서 윤석열과 작당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조작 수사를 한 것이 아닌지,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 또 윤석열 쪽에서 이 많은 돈들이, 부패가 어떻게 흘러갔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수사해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저희도 매우 엄중하게 보고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 위원** 엄중한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맞습니다.

○**박은정 위원** 살펴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맞습니다.

○**박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미애** 그러면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법원행정처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위원장 추미애** 아까 특별재판부에 대해서 위헌 소견을 갖고 계신다고 하시면서 그 근거로 법률이 정한 법관이어야 하는데 그것은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이 정해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위원장 추미애** 아직은 전담재판부에 대한 법안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만 만약 거기서 행정처장님 말씀처럼 사람이 정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법률이 정한 시스템이라고 한다

면 수긍을 하시겠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헌법과 법률이 정한 시스템인데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제가 아직은 법안이 오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전담재판부라고 하는 것은 위원장님이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통상 특정 유형의 많은 사건들이 법원에 접수되고 그럴 때 그것을 전문적이고 또 효율적이고 정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정해진 예규 또 사무분담 시스템에 따라서 그렇게 정해서 그에 따라서 접수되는 사건은 전담재판부에서 처리하는 걸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지금까지 논의되었던 부분은 어디까지나 역사적인 중대한 내란 재판이라고 하는, 이미 절반 이상 진행이 되고 있는 이 재판, 특정 사건을 다시 재배당해서 옮기는 이 부분으로 결국 귀결이 되어 지기 때문에 그것을……

○위원장 추미애 그러면 왜 이 사건에 대해서 전담재판부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높은지, 왜 국회가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지 배경은 다 이해를 하시는 거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잘 알고 있고 저희들도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추미애 아니,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지금 그럴 단계 아닙니다. 국민이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빨리 신속하게 재판을 해야지만 국민들은 일상으로 돌아가고 민생에 집중하지 않겠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동의합니다.

○위원장 추미애 만약 내란범이 다시 풀려나서 활개치고 정치선동을 하고 돌아다닌다면 또 한번 혼란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국민들은 우려하는 거지요. 심지어 공포를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전담재판부에 대해서 자꾸 법원에서 지귀연 재판부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계시면서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으시고 계속 그대로 가면서 법안도 올라오기 전에 위헌이다라는 걸…… 아까 그 노만석 대검 차장 보셨지 않습니까, 근거 없는 얘기하는 것? 그런 식으로 우리 법원은 똑같이 하시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왜 보지도 않으시고 무슨 의견을 내십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저는 기존의 내란특별재판부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추미애 그런 여러 부분을 우리 헌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또 내란 종식을 조속히 바라는 국민의 뜻을 담아서 국회도 고민하고 고민하고 고민해서 끊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그런 조직이기주의 같은 의견은 자제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국민들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도 내란에 가담을 사전, 사후로 했겠다.

저는 상당한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법사위원장 오기 전에. 이 자리의 엄중함 때문에 진상조사단장으로서 활동하면서 얻었던 정보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상당히 위험한 조직이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 법원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객관적으로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위원장 추미애 그런데 지난 절차와 과정이 내란 수괴를 봐 주는 쪽으로 가 있었다라

고 국민은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날을 시간으로 계산을 해서 구속취소 결정을 한다든지 그런 사법 신뢰를 상실하는 일을 먼저 선행적으로 하셨습니다. 독일 같은 나라는 시민법관제도도 있습니다. 미국 같은 나라는 대배심제가 있습니다. 기소도 시민의 눈으로 통제·감시받고 그러한데 우리는 언제까지 마치 법관과 검사가 헌법의 보호를 받는 온실 속의 화초인 것처럼, 국민과 다른 계급인 것처럼 그렇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 내란을 검찰 세력이 저질러 놓고 반성하지 않는 이 와중에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사법고시 한번 됐다고 그것이 국민과…… 특별한 대접을 받아야 될 그런 당상을 따낸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국민의 공복인 것입니다, 누구나. 그런 자세를 우리 국민께 보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위원장 추미애 그러면 의사일정 42항부터 제74항까지 33건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김용민 법안심사제1소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관장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보좌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경위, 속기사 및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07분 산회)

증인 및 참고인 명단

증인(22인)

성명	직업	사유
신웅석	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	관봉권 떠지 유실 관련
이희동	부산고등검찰청 검사	전성배 사건 수사 지휘한 당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1차장검사
박건욱	대구지방검찰청 인권보호관	관봉권 떠지 유실 당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최재현	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관봉권 떠지 유실 관련
최선영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수사관	관봉권 떠지 유실 관련
남경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수사관	관봉권 떠지 유실 관련
김정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수사관	관봉권 떠지 유실 관련
전성배	무속인	띠지가 분실된 관봉권 습득 관련 관봉권 관련
김기원	한국은행 발권국 국장	관봉권 관련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관봉권 관련
조상준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관봉권 관련

성명	직업	사유
김규현	전 국가정보원장	관봉권 관련
김영미	무직	관봉권 관련
심우정	전 검찰총장	관봉권 관련
김승환	변호사	관봉권 관련
박광수	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사건과장	관봉권 관련
안준석	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관봉권 떠지 은폐 관련 후속조치
박치활	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사무국장 현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사무국장	관봉권 관련
신의호	검사	관봉권 떠지 관련
박상용	수원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검찰 해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질의 검찰 해체의 위헌성, 국민 피해, 부작용
강백신	대구고등검찰청 검사	검찰 해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질의
엄희준	광주고등검찰청 검사	검찰 해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질의

참고인(4인)

성명	직업	사유
송지현	서울양천경찰서 수사과장	관봉권 관련
이창민	변호사	관봉권 관련
신알찬	변호사	김용 사건 관련
백해룡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	관봉권

○출석 위원(18인)

곽규택 김기표 김용민 나경원 박균택 박은정 박준태 박지원 서영교 송석준
신동욱 이성윤 장경태 전현희 조배숙 주진우 최혁진 추미애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전문위원 박병섭

전문위원 박혜진

전문위원 이은정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감사원

원장 최재해

법무부

장관 정성호

국방부

장관 안규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오동운
교육부
장관직무대행 최은옥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오유경

○법원측 참석자
법원행정처
처장 천대업